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학부모 학생

핸드북



www.achieve.lausd.net

2021-22

학교에 다시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기 바랍니다. 여름방학에 가족과 친구와 다시 연락하는 기회를 가지셨기 바랍니다.

작년 학년도는 모두에게 전례없는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는 강제로 문을 닫아서 학생, 직원,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고 생활이 방해받고 개인적 손실과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팬데믹의 트라우마에서 학생들이 회복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 긍정적인 지원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새해에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공부를 즐겁게 하고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2021-22년도에 LA통합교육구는 일주일에 다섯번을 학생들과 하루종일 대면 수업을 합니다. 저희는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읽기와 산수 수업을 더 늘렸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업을 늘리고, 테크놀로지를 업데이트하고, 소그룹 과외를 받는 기회를 더 늘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 공부와 사회적 감정적 도움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자녀가 집에서 공부해야 하는 가정은 LA 통합교육구가 하는 온라인 수업을 받는 옵션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학생의 교육에서 저희와 파트너이며, 부모님의 참여와 의견은 저희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부모님의 건의와 질문이 중요하므로, 저와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superintendent@lausd.net.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합니다.

Megan K. Reilly (메이건 라일리)
임시교육감

사무실 디렉토리

교육 위원회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전화번호 (213) 241-6389

팩스번호 (213) 241-8953



DR. GEORGE J. MCKENNA III – 제1 지역구

전화번호 (213) 241-6382 팩스번호 (213) 241-8441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현장 사무실: 5120 11th Avenue, Los Angeles, CA 90043

전화번호. (323) 298-3411 팩스번호. (323) 298-3406

이메일: george.mckenna@lausd.net



MÓNICA GARCÍA – 제2 지역구

전화번호 (213) 241-6180 팩스번호 (213) 241-8459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이메일: monica.garcia@lausd.net



SCOTT SCHMERELSON – 제3 지역구

전화번호 (213) 241-8333 팩스번호 (213) 241-8467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현장사무실: 6621 Balboa Blvd., Lake Balboa, CA 91406

전화번호 (818) 654-3785 팩스번호 (818) 654-3788

이메일: scott.schmerelson@lausd.net



NICK MELVOIN – 제4 지역구

전화번호 (213) 241-6387 팩스번호 (213) 241-8453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이메일: nick.melvoin@lausd.net



JACKIE B. GOLDBERG – 제5 지역구

전화번호 (213) 241-5555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이메일: jackie.goldberg@lausd.net



KELLY GONEZ – 제6 지역구

전화번호 (213) 241-6388 팩스번호 (213) 241-8451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현장 사무실: Pacoima MS – 9945 Laurel Cyn. Blvd., Pacoima, CA 91331

전화번호 (818) 686-4560

이메일: kelly.gonez@lausd.net



TANYA ORTIZ FRANKLIN – 제7 지역구

전화번호 (213) 241-6385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현장 사무실: LD South-1208 Magnolia Ave., Gardena, CA 90247

이메일: tanya.franklin@lausd.net

사무실 디렉토리

MEGAN K. REILLY

임시교육감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전화번호 (213) 241-7000

팩스번호 (213) 241-8442

이메일: superintendent@lausd.net

지역 교육구

북동쪽 지역 교육구

8401 Arleta Avenue
Sun Valley, CA 91352
(818) 252-5400

서쪽 지역 교육구

11380 West Graham Place
Los Angeles, CA 90064
(310) 914-2100

남쪽 지역 교육구

1208 Magnolia Avenue
Gardena, CA 90247
(310) 354-3400

북서쪽 지역 교육구

6621 Balboa Boulevard
Lake Balboa, CA 91406
(818) 654-3600

동쪽 지역 교육구

2151 North Soto Street
Los Angeles, CA 90032
(323) 224-3100

중앙 지역 교육구

Lanternman High School
2328 St. James Place
Los Angeles, CA 90007
(213) 766-7300

본 사무소

성인 직업 교육	(213) 241-3150	인사과	(213) 241-6131
벨을 넘어서 (Beyond the Bell)	(213) 241-7900	정보 공학부	(213) 241-4906
위원회 비서실	(213) 241-7002	학교 대항 운동 경기부	(213) 241-5847
예산 서비스	(213) 241-2100	KLCS Channel 58	(213) 241-4000
차터 학교부	(213) 241-0399	매그넷 프로그램	(877) 462-4798
자료와 책임	(213) 241-2460	정비, 운영	(213) 241-0352
교육구 간호 서비스	(213) 202-7580	통신 및 언론 관계소	(213) 241-6766
교육구 서비스 센터	(213) 241-1000	응급 서비스 사무실	(213) 241-3889
교육구 운영부	(213) 241-5337	환경 위생 및 안전 사무실	(213) 241-3199
교습부	(213) 241-5333	감사관 사무실	(213) 241-7700
학교문화, 분위기, 안전부	(213) 241-7921	자금 관리 이사 (CFO) 사무실	(213) 241-7888
특수 교육부	(213) 241-6701	법무 자문소	(213) 241-6601
조기 교육 사무실	(213) 241-0415	학부모와 지역 사회 서비스	(213) 481-3350
교육 형평성 준법 관리부서	(213) 241-7682	인사 위원회	(213) 241-7800
기회 균등 부서	(213) 241-7685	학교 경찰국	(213) 625-6631
시설 서비스 부서	(213) 241-4811	학생 보건 복지 서비스	(213) 241-3840
급식 서비스 부서	(213) 241-2993	교통국	(213) 580-2900

목차

출석	1
▪ 캘리포니아 의무적 정규 교육법	1
▪ 무단 결석 전환	1
▪ 결석 확인	1
▪ 타당한 사유의 결석	1
▪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결석	2
▪ 결석-무단 결석	2
▪ 무단결석 통지	2
▪ 상습 무단결석 및 학교 출석검토위원회 (SARB)	2
알코올, 담배, 약물 및 폭력 -예방 및 금지	3
과학 수업에서 사용하는 보존되고 살아있는 유기체 대체 안	3
체육 교육 요건 연례 통보	3
석면 및 납 관리	4
방과 전/후 프로그램	4
블랙보드 커넥트 (BLACKBOARD CONNECT) 알림 시스템	4
웰니스 (WELLNESS) 정책을 위한 청사진	5
괴롭힘 및 신고식 방침	5
캘리포니아 학생 성적과 성취도 평가 (CAASPP)	6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조기 평가 프로그램 (CSU-EAP)	6
휴대 전화 및 기타 모바일 장치	6
거주지/비상 연락망 정보 변경	7
학생에 대한 행동 수칙	7
대학 입학 요건 및 고등교육 정보	8
▪ CSU 신입생 자격요건	8
▪ UC 신입생 자격요건	8
▪ SAT/ACT 시험점수	8
규율 기초 방침 및 학교분위기 권리장전	9
교육구 서비스 센터와 학부모, 커뮤니티 자원 센터	9
성인 및 진로 교육 부서 (DACE)	9
복장 규정/교복	10
이민신분, 시민권, 종교적 신념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적 형평성	10
교육 대안학교	10
비상사태 대비 – LA 통합교육구	11
▪ 비상시에 학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1
비상사태 대응	11
모든 학생이 성공하는 법: 타이틀 1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알 권리	11
현장 학습	12
급식 서비스 부서 (CAFÉ LA)	12
▪ 영양, 카페엘레이 메뉴	12
외국인 학생 입학전형	13
정치적 행위, 집회, 모임, 시위 등 표현의 자유	13
성적 변경 요청 절차	14
총기 없는 안전한 학교	14

건강 정보	14
▪ 전염성 질병 예방	14
▪ 당뇨병 멜리투스	15
▪ 예방접종 요건	15
▪ 학교에서의 약물	15
▪ 구강 건강 정보	16
▪ 신체검사	16
▪ 학교 정신건강	16
▪ 학교 정신건강 클리닉 및 웰니스 센터 소개 절차	16
▪ 자살 예방, 중재, 자살 이후 중재	17
▪ LA 통합 교육구의 웰니스 센터	17
고등학교 졸업 요건	17
영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캘리포니아 영어 능력 (ELPAC) 평가	18
교육 테크 계획	19
해충 통합관리 프로그램	19
학교 안전 통합계획안	20
인터넷 접속	20
학교대항경기 운동부	20
모바일 앱	21
언론사 이용과 홍보	21
차별 금지서	21
미국 장애인법 (ADA) 에 따른 통지	22
가족의 교육적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 (FERPA) 에 따른 권리의 통지	22
▪ 학생의 권리 보호 수정법안 (PPRA)	24
보건교육과 캘리포니아 건강한 청소년 법에 의한 수업 통지서	25
간호사- 가족 파트너십	27
부모와 지역사회 서비스 사무소 – 부모와 가족의 참여	27
기회적 전학	28
학부모와 가족 참여 방침	28
콘돔의 이용 프로그램에 관한 학부모/보호자 연례 통지서	29
학부모 포털	29
학부모 권리	29
▪ 학교/사무실 자원봉사 프로그램	30
허가 및 학생 전학	30
▪ 교육구에서 교육구로 전학허가	31
▪ 교육구 내 전학허가	31
체력 시험	31
배상	32
안전한 통학로 (SRTS)	32
학교 책임 성적표	33
학교 메디칼(MEDI-CAL) 서비스	33
학교 체험 설문 조사	33
거주지 학교	33
학교 일정	34
성희롱 방침	34

특수 교육: 학교 및 가족 지원 서비스 (SFSS)	34
학생 사고 보험	35
학생 출석 방법	35
학생 건강 보험	35
학생 기록	35
학생 기록 정보 검사/검토/항의	35
▪ 불만 신고	36
학생/학교 행동 규율	36
학생 수색	36
노숙을 겪고 있는 학생	37
위탁보호 학생	37
청소년 사법에 저촉된 학생	38
학생의 개인 물건	38
장애학생 및 특수 교육	38
504항에 따른 장애 학생	39
일시적 장애를 가진 학생	39
아동학대와 방치 의혹 보고	39
정학과 퇴학	39
▪ 정학/퇴학의 합당한 근거	40
▪ 퇴학이 권고되는 상황 (교육법 제48915항)	41
▪ 장애학생을 위한 행동개입	41
▪ 장애학생 정학 및 퇴학	41
▪ 징계처분 장소	41
▪ 퇴학 이후 복귀와 복학	42
타이틀 IX 와 학생	42
교통 – 통학 버스	42
▪ 통학버스에서 품행	43
균일한 불만제기 절차 (UCP)	43
학교 방문자	45
윌리엄스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45

LA 통합 교육구는 COVID-19 보건안전지침에 따라 가족들을 도우면서 2021-22 년도에 학부모 학생 핸드북과 관련된 정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아래의 웹사이트를 통해 LA 통합 교육구의 업데이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achieve.lausd.net/resources>.

출석

학교 출석은 학생 참여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이며 학생 학업 성과의 강력한 예측 변수입니다. 좋은 출석률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학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학생은 결석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등교 기간을 정하여 등교할 것으로 요구됩니다(교육법 제48200조). 모든 학생의 목표는 96% 이상의 출석률로 1년 내내 일곱(7)번까지 결석이 허용됩니다. 96% 이상은 우수한 출석률로 여깁니다. 학교는 학년도 내내 최신 출석을 기록해야 하며, 학년도가 끝난 후에는 학생 출석 기록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지 못합니다.

추가 정보와 자료는 학생 보건 복지 서비스(SHHS), 학생 서비스 웹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pupilservices>, 또는 (213) 241-3844 로 전화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의무 정규 교육법

교육법 48200항에는 2장이나 3장(48400조로 시작)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지 않은 6세에서 18세 사이의 각 사람은 의무적인 정규교육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풀타임 의무적 교육 대상인과 제3장(48400항으로 시작)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지 않는 의무적 정규 교육 대상인은 학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풀타임 공립학교나 보습학교나 수업에 출석해야 하며 교육구 관리부가 학교수업일의 기간으로 정한 풀타임으로 출석하며, 그리고 학부모, 보호자, 학생 관리인이나 책임자는 학생이 학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풀타임 공립학교나 보습학교나 수업에 보내고 교육구 관리부가 학교수업일의 기간으로 정한 풀타임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조레안 제13.57조 – 미성년자에 대한 낮시간 제약사항

- A. 의무교육 또는 의무적 지속교육의 대상이 되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본 조항의 B관에 정의된 대로 "학교를 결석하고 공공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외는 미성년자가 13.57.020조에 규정된 유효한 한가지(1)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B. 본 장의 목적상, 언급된 미성년자의 학교 수업이 있는 당일 날 오전 8:30과 오후 1:30 사이에 미성년자가 공적인 길거리, 거리, 고속도로, 도로, 도로 경계석, 골목, 공원, 놀이터, 공공장소, 공공건물이 있는 공공장소, 오락장이나 식사 장소, 공터나 감독되지 않은 장소 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장소에서 빈둥거리거나, 방황, 산책, 놀이, 목적 없이 운전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미성년자는 "학교를 결석하고 공공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레안 96-0009 § 1 (일부), 1996].

무단 결석 전환

2012년 LA 통합교육구 학생 보건복지 서비스(SHHS), 학생 서비스, LA 학교 경찰서, LA 경제노동개발국(EWDD)은 주간 제한조례를 위반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무단결석 전환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LA 학교 경찰관들이 학교 외부에서 발견한 학생들에게 무단결석 위반티켓이 아니고 무단결석 전환추천서를 주게 됩니다. 확인된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는 LA 시의 여러 청소년 정보 센터에서 한 곳에서 LA 통합 학생서비스 및 출석(PSA) 상담원과 만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업, 출석, 사회 정서적 필요성/행동에 관한 강점과 필요 영역을 식별하기 위한 교육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PSA 상담사는 학교와 사회봉사를 알맞게 권하고 학생의 학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합니다.

결석은 면제 사유를 막론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들은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일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결석 확인

결석이 명확하지 않은/타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결석으로 기록되지 않고 무단결석 쪽으로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이 등교한 후 십(10)일 이내에 결석 사유 확인서를 학부모/보호자가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석에는 지각, 조퇴, 수업시간 누락 등이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로부터 학생의 결석사유를 알고 나면 직원은 질병이나 격리로 인한 결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법, 5장, 421항):

- 학교 또는 공중 보건 간호사;
- 출석 감독자 (예; PSA 상담자);
- 의사;
- 교장;
- 교사;
- 이러한 검증을 하는 교육구의 유자격 직원.

결석 사유를 검증할 권한이 있는 학교 직원은 진위여부에 의심스러운 사실이 있으면 결석이유를 증명할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거부합니다. (캘리포니아 법, 5장, 제306항).

타당한 이유의 결석

캘리포니아 교육법 48205항에 의해 학생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석하면 학교에서 허락합니다:

- 학생의 질병 또는 부상;
- 격리;
- 의료, 치과, 검안, 척추 교정;
-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 예: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자매, 학생의 직계 가정에 거주하는 친척 (주 안에서 일(1)일, 타주 삼(3)일);
- 배심원의 의무;
- 학생이 양육권이 있는 부모인 경우 학생의 자녀가 아프거나 치료받는 경우 (자녀의 질병에 대한 의사 편지가 없어도 됨).

정당한 개인적 이유는 학부모가 학생의 결석을 문서로 요청하고 교장이나 지명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결석은 다음을 포함하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 법정 출두;
- 장례식 참석 (연장일);
- 비영리 단체 (입법/사법)가 제공하는 교육 컨퍼런스 참석;
- 고용 컨퍼런스 참석;
- 종교 수련회 참석(한 학기에 네(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효한 근로 허가증을 소지한 예능 산업 근무 (오(5)일 연속 또는 매 학년에서 최대 다섯번(5) 결석);
- 전투지역에서 현역복무를 위해 소집되거나, 휴직, 막 복귀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직계 가족, 최대 삼(3)일);
- 의료적 제외 또는 면제;
- 선거를 위한 선거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
- 종교적이거나 문화적 명절, 의식, 세속적 역사적 추모일 기념하기;
- 종교적 교육(단축수업일에 출석합니다. 한 달에 사(4)일을 넘지 않습니다.);
- 향소 절차를 통해 취소된 집행정지;
- 비영리 단체 예술 공연 참여 (학년도에 최대 오(5)일);
- 미리 계획된 정신 건강 서비스(정신 건강의 날 치료);
- 자녀를 직장 데려오는 날;
- 학생의 귀화식 참석.

위에 열거한 이유 중 하나로 결석을 했다고 제대로 확인하면 학교 측은 결석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허락된 이유로 학교를 결석한 학생은 결석하는 동안 빠진 모든 과제와 테스트를 받고 다시 할 수 있어야하며, 만족스럽게 했으면 학점을 전부 인정받아야 합니다. 학생이 결석한 수업에 대해 교사는 결석으로 빠진 시험과 과제에 적합하고 똑같은 시험과 과제를 정해주어야 합니다.

결석-무단결석

설명이 없거나 허락받은 결석 이유 (위에 나옴) 외에 다른 이유로 결석하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LA 통합 교육구는 10일 이내 결석에 대해 학부모/보호자의 설명서(서면 메모 또는 구두 적 정당성)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결석한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무단결석 섹션 참조), 이는 학교 출석 심사위원회(SARB)와 시검찰이나 지방검찰청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 결석의 예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을 위한 심부름;
- 아기 돌보기;
- 휴가 또는 여행;
- 기상 조건;
- 교통 문제.

무단결석

의무 정규 교육 혹은 의무 연속 교육 대상 학생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학년도에 세(3)번을 결석, 지각, 30분 이상 결석한 경우, 법에 따른 무단결석자로 간주합니다.[교육법 48260(a)항].

교육구는 학생이 처음으로 무단결석한 경우 다음 사항을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교육법 48260.5항):

- 학생은 무단결석했습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부모/보호자는 위반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LA 통합 교육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의 무단결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적절한 학교 관계자와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 학생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학부모/보호자가 학생과 학교에 동반하여 하루(1) 동안 학생과 함께 수업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무단결석 통지

무단결석 통지서는 학생이 한 학년에 삼(3)회 이상 무단결석, 조퇴, 30분 이상 지각한 경우 6세에서 18세 사이의 학생, 학부모/보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결석 후 열흘(10) 수업일 이내에 적절한 이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분명한 이유로 무단결석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같은 학년도에 LA 통합 교육구에서 무단결석이나 불분명한 결석이 쌓인 결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무단결석 통지를 받은 학부모/보호자는 실수로 무단결석 통지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녀의 학교(편지를 작성한 학교)에 연락하십시오. 학교 직원은 학년도의 6월 30일까지 출석부 기록에 모든 수정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상습 무단결석 및 학교 출석검토위원회 (SARB)

학년도에 세(3)번 이상 무단결석한 것으로 보고되고 LA 통합 교육구 사무관이나 직원이 학생의 부모/보호자와 학생과 회의를 적어도 한 번 이상 하는 진실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학생은 습관적인 무단결석자가 됩니다.(교육법 제48262항)

상습 무단결석 또는 불규칙한 출석으로 인지하거나 등교 중 상습적으로 반항 또는 난동을 부리는 학생은 학교출석검토위원회(SARB)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학교 출석검토위원회 대표는 학부모/보호자에게 학교 출석검토위원회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통지서는 학생, 학부모/보호자와 학교 출석검토위원회와 면담을 해야하는 것을 알려야합니다 (교육법 제48263항).

학부모/보호자, 학생, 다른 사람이 학교 출석 검토 위원회의 지침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학교 출석 검토 위원회는 LA 통합 교육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해당 학생의 학부모/보호자가 처벌되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교육법 48263.5항).

LA 통합 교육구는 무단 결석 학생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 검사실, 로스앤젤레스 시검찰과 협력합니다.

알코올, 담배, 약물 및 폭력 – 예방 및 금지

BUL-3277.2방침에 규정된, 마약, 음주, 담배, 그외 취하게 하는 것들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생들을 위한 예방, 조기개입, 중단, 개입, 자원: LA 통합 교육구는 학생들이 학교 캠퍼스나 학교에서 후원하는 활동에서 마약, 술, 담배, 또는 관련 용품의 사용, 소유 또는 판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학교 활동과 교내에서의 마약, 술, 담배, 관련 용품의 사용이나 소유를 방지하고, 억제하며,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교 관리자는 학교 경찰과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예방 교육, 직접적인 개입, 정학, 퇴학을 사례별로 사용하여 학교에서 마약, 음주, 담배,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구 소유건물이나 임대 건물과 교육구의 차량 등 LA 통합교육구 건물에서 직원, 학생, 학교나 교육구를 방문하거나 학교에서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방문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향시 흡연과 처방 약물의 오용, 모든 담배 제품, 마리화나,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교육구 소유 건물에서 또는 교육구 활동 중 학생의 수중에 있는 베이핑(vaping) 도구가 발견될 경우, 도구는 압수되어 폐기됩니다.

LA 통합교육구는 또한 전자담배, 후카 펜(hookah pens), 시가릴로(cigarillos), 니코틴 함량이 있거나 없는 토바코(tobacco) 제품의 사용을 모방하는 연기나는 도구인 니코틴 전달 전자시스템(ENDS)의 사용을 교육구 소유건물과 차량에서 항상 금지합니다. ENDS는 종종 담배, 시가, 파이프처럼 보이게 만들어지지만, 펜, 천식 흡입기, 음료수 용기 등 일상용품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니코틴을 증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리화나,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의 증발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308조(a)(1)(H)항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이러한 도구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NDS를 사용, 보유, 제공, 알선, 판매하는 학생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11998항에 따라 K-12 학년 학생들은 약물, 담배 남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법 51260항에서 약물교육을 학생의 일반 보건과정에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이 지침이 효과적일 수 있게 공립학교는 매년 최소 6시간에서 10시간을 마약, 알코올, 담배 남용과 폭력 예방에 할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 표준에 따른 건강교육에서 알코올, 담배, 마약 사용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보건교재를 넘어 마약 예방교육에는 증거 기반 개입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습니다. 폭력 예방 교육은 사회 정서 학습에 초점을 맞춘 증거 기반의 개입을 통해 가르칩니다. BUL-3403.1, 웰니스와 통합 학교 안전계획안에 있는 채택되고 규정된 증거에 의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목록을 학교에 줍니다. 학교 시행내용은 REF-3398.1는 초등학교, REF-3404.1는 중학교, REF-3405.1에 고등학교를 위한 것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에서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의 건강 교육 프로그램 또는 지역 교육구의 사회적 감정적 학습 교사 상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과학 수업에서 사용되는 보존되고 살아있는 유기체 대안

LA 통합 교육구의 방침과 캘리포니아 교육법 32255.1항에 의해 동물을 사용하는 과학 실험실 수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학생들을 면제해 주거나 대체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사용하는 과학 실험에 참여를 반대하는 학생들은 다른 과제를 부탁하는 부모/보호자 편지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비슷한 시간에 이 과제를 하게 합니다.

체육교육 요건 연례 통보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51210(a)(7)항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학생에게 휴식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학교수업일 십(10)일마다 200분 이상 체육수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사의 체육수업 시간표를 학교 홈페이지나 교실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체육수업 시간표를 학교 본관에 게시해야 합니다. 체육시간에 대한 질문이 있는 학부모/보호자는 먼저 자녀의 교사나 교장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51222(a)항에는 중등 학생들이 매 십(10)일 수업일에 400분 이상 체육수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에 관한 불만신고. 자녀가 필요한 체육수업시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학부모/보호자는 정식으로 불만신고해도 됩니다. 이 불만 신고서는 학교나 LA 통합교육구 체육 웹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Page/7726> 에서 찾을 수 있으며 사무실에 교장선생님에게 제출하십시오. 학교의 대답을 넘어서 체육수업 시간에 대한 질문이나 걱정사항은 학부모/보호자가 지역 교육구 사무실의 책임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석면 및 납 관리

학교 부지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위치한 장소와 장소의 상태를 파악하는 석면관리 보고서(AHERA Report)가 있습니다. 학교는 석면 방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원, 학부모,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AHERA 보고서는 육(6)개월마다 업데이트되며 학교 본관에서 요청 시 검토가 가능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보수와 수리가 이루어지면 페인트가 칠해진 표면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납 페인트는 일반적으로 1980년 이전에 전국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새로운 페인트에 납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LA 통합 교육구에 페인트가 칠해진 표면에 납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LA 통합 교육구는 페인트가 칠해진 표면을 건드리는 모든 계약자와 LA 통합 교육구 직원이 교육을 받고 이 재료로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형태의 보수가 육(6)세 이하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뤄지면 학부모/보호자, 경비원, 학교직원, 교장에게 보수에 관한 정보와 환경보호청(EPA) 팜플렛인 “제대로 보수하기 위한 납 안전성 인증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팜플렛은 잠재적 위험과 건강에 대한 정보와 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팜플렛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십시오.

https://www.epa.gov/sites/production/files/2020-09/documents/rr_english_color_book.pdf.

납 수리 공사를 위한 학부모 통지서와 교장 통지서에 관한 추가 정보는 환경 보건 안전 사무실(OEHS)의 안전 경고 번호 19-03에 있으며,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inyurl.com/wu62gox>.

LA 통합 교육구는 수질을 확인하고 식수에 든 납 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LA 통합 교육구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납 검사를 받았습니다. 샘플링 결과를 포함한 식용 수 납에 대한 정보는 <https://achieve.lausd.net/Page/3450> 을 방문하십시오.

방과 전/후 프로그램

벨을 넘어서(Beyond the Bell Branch, BTB)는 LA 통합 교육구의 상급 기관으로, 방과 전/후 프로그램, 학습 기회의 연장선, 학생 보조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아래에 간단한 정보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213) 241-7900로 전화하거나 BTB 웹사이트 <https://btb.lausd.net> 에 있습니다.

- 방과 전/후 프로그램 – BTB는 LA 전역의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협력하여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에서 훈련된 직원의 감독 하에 학업 지원, 심화학습 활동, 체력/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합니다. BTB는 또한 선택된 학교의 학생들에게 멘토링, 시각과 공연 예술, 많은 체험을 하게 되며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계획들을 후원합니다.
- 확장된 학습 기회 – 학교에서 본인 학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낮수업과/또는 학교수업을 넘어서 공부를 지원합니다. BTB는 재정적으로 지원받고 사용하는 이주 교육 프로그램, 고등학교 학점 회복 여름 학교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에 처한 학생들에게 확대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학생 보조 서비스 – BTB 학생 보조 서비스는 강의실과 정규 수업일을 넘어 학습 과정을 확장하는 안전하고 감독된 활동을 제공합니다. 서비스에는 학생, 학교, 직원, 지역사회를 위한 보조 서비스뿐만 아니라 중요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은 안전망인 청소년 서비스(YS)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방과 후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되는 방과 후 학교 심화학습과 스포츠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주립 과학 표준을 지원하고 클리어 크릭과 포인트 페르민(Point Fermin) 야외 교육 센터에서 인간관계 활동을 통합하는 야외교육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Ready-Set-Go! 프로그램,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청소년 서비스 플러스, 시민 센터 허가 운영, 직원 레크리에이션 유닛이 있습니다.

블랙보드 (Blackboard) 연결 알림 시스템

LA 통합 교육구는 블랙보드 커넥트(Blackboard Connect)라고 불리는 교육구 전체에 걸친 알림 시스템을 사용하여 응급 상황, 출석, 학교 행사, 학부모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학부모와 직원들과 개인적으로 의사소통 합니다. 블랙보드 커넥트(Blackboard Connect) 서비스는 가족의 집, 직장, 휴대폰으로 개인화된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또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문자 비용은 학부모/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블랙보드 커넥트(Blackboard Connect) 기술로 몇 분 안에 교육구 모든 사람에게 연락이 갈 수 있고 학교와 교육구의 직원이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나아집니다. 학부모/보호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참여를 부탁하면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고 안전해집니다. 최근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움받으십시오. 학생 비상 연락처 양식을 작성하여 일반 통지, 출석, 긴급 통지를 받을 전화기를 정하십시오.

블랙보드 커넥트(Blackboard Connect)에 어떤 전화번호를 제출해야 하나?

학교가 학부모/보호자에게 다양한 이유로 연락합니다

- **일반적** 통지 메시지는 낮에 보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긴급하지 않으며, 예정된 행사나 알림 메시지를 알려드립니다.
- **출석** 통지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아침과 초저녁에 발송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자녀가 한번(1) 이상의 수업을 빠지거나 하루 종일 무단결석하거나 지각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송됩니다. 가장 적절한 번호는 주간 전화 번호입니다. 일하시는 학부모/보호자는 직장 전화번호나 휴대폰 전화번호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낮 시간대에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 출석을 위한 전화번호는 집 전화번호로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긴급 통보 메시지**는 긴급한 성격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냅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제출하는 전화번호는 대부분의 깨어 있는 시간 동안 부모/보호자가 받을 수 있는 번호이어야 합니다. 블랙보드 커넥트(Blackboard Connect)는 일반통지와 출석통지 전화번호 등 알림 시스템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학부모/보호자에게 확실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이 전화번호는 학생 비상 연락처 양식에 제공된 대체 연락처가 아닌 학부모/보호자용이어야 합니다. 학생 비상 연락처 양식에 대한 정보는 학교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활용될 것입니다.
- **교사** 메시지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자녀의 학업 상태, 일반적인 행동, 학업 습관, 수업의 알림문자와 통지를 알리기 위해 보냅니다. 전화, 이메일,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 낸 일반 전화번호로 보냅니다.

중요한 통화 전달 팁

- 학교(또는 LA 통합 교육구)에서 전화가 오면, 수신자의 발신자 ID에 학교(또는 LA 통합 교육구) 전화 번호가 표시됩니다.
- 메시지를 들을 때 소음으로 인해 시스템이 중지되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블랙보드 커넥트(Blackboard Connect)는 사람에게 연결되거나 응답기/음성메일에 연결되었는지 알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정하며, 소음이 있으면 메시지 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전화기의 음소거 버튼을 누르십시오.
- 메시지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끊지 말고 전화기의 * (별표) 키를 눌러 전체 메시지를 다시 들으십시오. 또는 (855) 473-7529으로 전화를 걸어 최신 메시지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통지서 제외

학부모들은 전화, 이메일, 문자를 통해 전송되는 일반적인 통지 메시지를 수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걸려 오면 메시지 끝의 지시사항을 듣고 취소하십시오. 메시지를 다시 받으려면 이전에 전화를 받았던 전화기에서 (855) 502-7867로 전화하십시오.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메시지 끝에 있는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일반 통지서만 영향이 갑니다. 가족들은 일반 통지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전화와 비상시 전화는 계속 오게 됩니다.

자녀가 학생 비상 연락처 양식을 가능한 빨리 작성하여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 학교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오직 학교만 연락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귀하의 현재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가장 엄격히 비밀보장받고 LA 통합교육구의 보안방침에 따라 유지됩니다.

웰니스(WELLNESS) 정책을 위한 청사진

LA 통합 교육구는 학생들의 보건과 복지, 학업 성취의 중요한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건강해야 하고 건강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LA 통합 교육구는 학생들이 평생 건강을 위해 건강한 선택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폭력에 노출된 경험 등 **부정적인 아동 경험(ACEs)**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발전과 우리 학교 공동체 모두의 복지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아동 결식 방지 건강법은 2006년 6월 27일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한 웰빙 정책의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웰니스 정책은 LA 통합 교육구에 있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의 웰빙을 다룹니다. 본 **웰니스 정책을 위한 청사진**은 LA 통합 교육구의 웰니스 정책 및 종합적인 건강 및 웰빙 계획 구현을 위한 지침입니다. 다음은 웰니스 정책 청사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강 영역입니다: 영양 서비스, 체육, 보건 교육, 보건 서비스, 긍정적 출석과 복원력 키우기, 안전한 환경, 직원 건강, 학부모와 지역사회 참여. 이 웰니스 정책은 학생들의 건강, 학부모의 건강, 직원의 건강, 그리고 지역 사회의 건강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LA 통합 교육구 전체적으로 보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2017년 LA 통합 교육구는 LA 통합 교육구 전체에서 보건 및 웰니스 서비스와 계획을 정리하여 **웰니스 정책을 위한 청사진**을 구현하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웰니스 프로그램(WP) 부서를 설립했습니다. LA 통합 교육구는 교육구의 웰니스 청사진과 전략적 계획에 맞추어 이끌고, 학생과 가정이 기초 건강, 정신 건강, 웰니스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부서와 협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웰니스 프로그램 부서는 100% 줄임을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격차 평가, 내/외부 조력관계를 맺고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와 자료는 웰니스 프로그램 웹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wellnessprograms> 또는 (213) 241-3850으로 전화하십시오.

괴롭힘 및 신고식 방침

LA 통합교육구는 안전하고 예의바른 학습과 수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집단 괴롭힘, 신고식, 또는 학생과 직원의 안전과 복지를 침해하거나 학습이나 교직에 지장을 주는 다른 행동에 대해 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학생, LA 통합교육구 직원 및 관련 성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동과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정책은 학교, LA 통합 교육구 관련 프로그램, 활동 및 행사, 학교를 오가는 이동 및 LA 통합 교육구 관할구역의 다른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LA 통합 교육구는 불만 제기를 하거나 불만사항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LA 통합 교육구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원은 안전하고 안심되는, 평화로운 캠퍼스에 참석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캘리포니아 주 헌법 1조 28항]. 연방 지침과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의해 괴롭힘(따돌림)과 신고식 방침을 존중과 포용을 위해 모든 학교와 직원들에게 지켜야 합니다.

괴롭힘은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결과를 타당하게 예상되는 심하거나 만연한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전자적 행위나 행동입니다

- 개인이나 물건이 망가지는 합리적인 두려움;
-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상당히 해로운 영향;
- 학업 성과에 상당한 지장;
- 학교 서비스, 활동, 특권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는 것에 실질적인 간섭;

학교나 학교 관련 활동과 행사에서 괴롭힘을 일삼는 학생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 인터넷 정보와 정보통신 기술(예: 문자, 이메일, 블로그, 게시물, 가상/온라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로 괴롭힘의 정의에 부합합니다.(위에 요약됨) 학교나 학교관련 활동과 행사에서 사이버폭력에 참여하는 학생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밖에서 발생하지만 학교의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사이버 괴롭힘은 LA 통합 교육구 관할권에 속할 수 있습니다.

섹스팅(Sexting)과 사이버 성적 괴롭힘은 부적절한 성적 본성에 의한 전자적 의사소통입니다. 사진을 게시되면, 학생은 사진의 사용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을 게시하고 공유하는 것은 포르노나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형사처벌받는 징계나/또는 회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섹스팅으로 평생 영향이 미치는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내 또는 온라인에서 괴롭힘(따돌림)이 일어났다고 의심되는 학부모와 학생은 문서로 신고하고 학교 행정부와 함께 해결하기 바랍니다. 행정부는 혐의를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지역 교육구에 연락하십시오. <https://achieve.lausd.net/ld>.

신고식(Hazing)은 교육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학생 단체나 단체에 가입하는 것과 관련된 신고식, 사전 신고식 또는 통과 의례로서, 예전, 현재, 예비 학생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 인격적 타락, 또는 불명예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다양성 및 형평성 사무실(Office of Human Relations, Diversity & Equity)에서 자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achieve.lausd.net/human-relations> 차별/괴롭힘의 혐의가 있는 경우 교육 형평성 준법 관리부서(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https://achieve.lausd.net/domain/383> 또는 (213) 241-7682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캘리포니아 학생 성적과 성취도 평가(CAASPP)

캘리포니아 학생 성적과 성취도 평가인 CAASPP는 주정부 시험입니다. CAASPP는 일년 기준으로 학생의 성취도를 감독하고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정보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CAASPP 평가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 3학년부터 8학년, 11학년까지의 영어예술(ELA)과 수학에 대한 스마트러 벨런스드 형성평가;
- 3학년부터 8학년, 11학년의 유자격 학생을 위한 ELA와 수학에 대한 캘리포니아 대체평가(CAA);
- 5학년, 8학년, 고등학교때 한번 치르는 캘리포니아 과학 시험(CAST);
- 5학년, 8학년, 고등학교때 한번 유자격 학생이 치르는 과학 캘리포니아 대체평가(CAA);
- 3-12학년 대상 캘리포니아 스페인어 평가(CSA).

캘리포니아 교육부(CDE)는 2019년 봄에 CAASPP 행정관리로 학부모를 위한 CAASPP 학생 시험성적(SSR)의 인쇄를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보호자는 더 이상 자녀의 CAASPP SSR을 우편으로 받지 않게 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부모 포털에서 학생들의 CAASPP SSR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포털 계정이 없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계정을 만드십시오. 계정을 만들고 시험접수를 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부모 포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학부모 포털에 접속하려면 <https://achieve.lausd.net/Page/10470> 으로 이동하십시오. CAASPP시험은 2019-20년에 중단되었습니다. 2020-21년에 원거리 학습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CDE에서 2020-21 주 형성평가를 교육구에서 융통성 있게 하게 했습니다. 교육구는 이런 옵션을 이용하고 3학년부터 8학년까지 학교에서 지역평가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11학년 학생은 스마트러 벨런스드 형성평가(수정되고 짧아진) 영어와 산수시험을 보고 커뮤니티 칼리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들어가는 조기평가프로그램(EAP)에 자격이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역시험을 시행하게 되어서, CAASPP SSR은 2019-20년과 2020-21년도에 3학년부터 8학년 학생들이 하지 못합니다. 2020-21년도에, 스마트러 벨런스드 형성평가를 본 11학년 학생만 CAASPP SSR을 보게 됩니다.

CAASPP SSRs는 전반적인 ELA영어점수와 수학점수를 가지고 학생의 성취도를 설명합니다. CAASPP SSR은 11학년 학생들을 위한 조기 평가 프로그램(EAP)을 포함합니다. EAP 점수는 대학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조기에 나타냅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자녀를 CAASPP 프로그램의 일부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시험에서 제외하려면, 학교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가 귀하의 자녀를 위해 다른 대안책을 준비하도록 가능한 한 빨리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조기 평가 프로그램(CSU-EAP)

EAP는 CDE,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CCC)의 공동 프로그램입니다. EAP는 학생들이 시니어(12학년)를 시작하기 전에 영어와 수학과목의 대학 진학 준비상태를 미리 알려줍니다. 또한 EAP는 학생들에게 CSU와 신입생 입학에 필요한 CCC 영어와/또는 수학 배치고사에서 면제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EAP는 현재 CAASPP 스마트러 벨런스드 11학년 ELA와 수학 평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학년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EAP에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대학 준비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CSU와 CCC에 그들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입학에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CAASPPs 프로그램 CSU/EA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녀의 상담원에게 문의하거나 학교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http://www.cde.ca.gov/ci/g/hs/eapindex.asp>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휴대 전화 및 기타 모바일 장치

정규 수업 시간 동안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이나 전자 모바일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LA 통합 교육구의 정책입니다. 학생들은 카메라, 전자 게임, 라디오, MP3 플레이어, 컴퓨터 장치, 태블릿 등과 같은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 모바일 기기가 정규 수업 시간 동안 보이지 않도록 사물함, 배낭, 지갑, 주머니 또는 기타 장소에 꺼진 상태로 보관하면 그러한 기기를 캠퍼스에서 소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방과 전후 또는 정규 수업시간 외의 학교 활동 중에 휴대폰이나 다른 전자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 통합 교육구, 주 및 전국적 평가의 경우, 학생들은 전체 시험 기간 동안 언제라도 승인되지 않은 전자 기기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전이나 방과 후에도 학교 직원에 의한 휴대 전화 및/또는 기타 전자 모바일 장치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언제든지 따라야 합니다. 학교는 학교 현장 위원회를 통해 좀 더 엄격한 휴대폰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통합버스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비상용이며 운전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00) 522-8737번 교통서비스로 전화하십시오. LA 통합교육구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휴대폰이나 전자 모바일 기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거주지/비상 연락망 정보 변경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주소, 전화 번호, 바뀐 개인정보를 학교에 알리는 것은 학부모/보호자의 책임입니다. 학교가 거주지 통보 요건에 관한 책임을 다하는 경우, 가족이 30일 이내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속적 입학 허가권을 뺏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자녀(들)에 대한 편지와(미국 우편) 구두연락(전화, 휴대폰)으로 연락받을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학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의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LA 통합교육구는 교육법 제49408항에 따라,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학교에 있는 학생 비상 연락처에 최근 비상 연락처를 적어주십시오. ([양식 34-EH-12, REV 1/14](#)). 모든 학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보호자는 입학할 때 학생별로 학생 비상 연락처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할 때 제출하거나 적어도 매년 갱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상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집 주소와 현재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포함);
- 고용주/사업체 주소와 전화번호;
- 학부모/법적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긴급 상황에서 학생을 픽업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친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학생이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하는 경우, 경로 정보, 경로 번호, 픽업 및 하교 위치 등을 적습니다. 장애학생의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응급상황 시 자녀를 돌봐주는 성인을 정해야 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사례별로 허가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학생 비상 연락망에 적은 분에게만 공개합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비상연락처를 매년 업데이트해야 하며, 처음 제공된 연락처 정보가 변경될 경우 언제든지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부모 및 친척/친구들의 긴급 전화번호는 학부모 포털 <https://parentportalapp.lausd.net/parentaccess/> 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다른 모든 정보는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행동 수칙

LA 통합교육구는 학생들과 함께 일하거나 접촉하는 모든 개인과 직원들 자신이 학생들을 대할 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이며, 전문적이고, 착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소속 직원이나 학생들과 함께 일하거나 학생들과 접촉하는 사람이 학생을 향해 부적절한 행위나 행동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과 함께 일하거나 접촉하는 직원이나 개인이 학생을 대상으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질문이나 우려가 있는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연락하기를 권장합니다.

학생에 대한 행동 수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일하거나 학생들과 접촉하는 사람과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민감하게 도와주는 것과 감정적이거나 인지된 책임있고 윤리적인 행동의 위반 사이의 미세한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모든 직원/개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LA 통합교육구는 학생, 직원, 학생들과 함께 일하거나 접촉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직원/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1. 성별에 관계없이 문을 닫고 학생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행위;
2. 마지막 행정 담당자가 학교현장을 떠난 후 학생과 함께 캠퍼스에 남는 경우 (현장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드라마/음악 리허설이나 학업적 10종 경기 코치하는 것 등 예외가 있음);
3. 학생(들)에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또는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비전문적, 비윤리적, 불법적, 비도덕적, 착취적 행동을 저지르는 것;
4. 학생의 말이나 행동으로 직접적이거나 암묵적으로 대가를 제안하고 학교와 관련이 없는 선물, 보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
5. 나이에 적절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없거나, 성적이고, 괴롭히거나, 모욕적인 진술이나 코멘트를 직접 또는 학생 앞에서 하는 행위;
6. 직원/개인의 책임과/또는 의무 범위에서 학생을 연령에 적합하지 않게 만지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7. 적절한 사전 관리자와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승인서 없이 개인차에 학생을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
8. 학교로부터 허가/승인된 학교 여행이나 현장 학습 이외의 활동을 위해 캠퍼스 밖으로 학생을 데리고 나가거나 동행하는 행위;
9. 학교로부터 허가/또는 승인된 활동을 제외하고 캠퍼스 외부에서 학생과 만나거나 함께 있는 경우;
10. 특별히 학교와 관련없는 목적으로, 전화/이메일/컴퓨터, 인터넷으로 연락하고 직접 아무 때나 학생과 연락하는 것;
11. 학교에 관련된 목적과/또는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집이나 휴대폰으로 전화하기;
12. 학교에 관련된 목적과/또는 상황을 제외하고 개인 집/휴대전화 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집 주소, 개인 연락처 정보를 학생에게 주는 것.

직원/개인의 의도는 순수하게 직업적일 수 있지만, 학생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위의 행동을 저지른 사람은 모든 가능성으로 부적절한 행동의 대상이 됩니다. 직원/개인에게 부적절한 행위나 혐의가 제기될 경우 LA 통합교육구는 해당 혐의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인정될 경우 적절한 행정조치와/또는 징계하게 됩니다.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직원/개인은 현장 행정담당자 또는 감독자에게 연락하거나 교육 형평성 준법 관리부서(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 (213) 241-7682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법 44807항에 의해 공립학교의 모든 교사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 운동장에 있을 때, 또는 쉬는 시간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학생들에 대한 체벌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 교감, 교장 또는 기타 교육구의 인증된 직원이 직무수행 중 학부모/보호자가 법적으로 학생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특권과 동일한 수준의 신체적인 규제를 한 이유로 형사 기소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질서를 유지하고, 소유물을 보호하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적절하고 알맞은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불가피한 신체적 통제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항은 49000항에 추가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LA 통합교육구 학생에 대한 행동 수칙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 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achieve.lausd.net/Page/3649>

대학입학요건 과 고등교육정보

캘리포니아 주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 교육받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중고등학교 이후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CSU), 캘리포니아 대학교(UC)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려면,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생이거나 18세면 됩니다. 학생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한 후 CSU나 UC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CSU 신입생 요건: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받은 성적이 CSU 입학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이 9학년이 지나고 받은 대학교 준비 수업인 “A-G” 과정에서 받은 성적으로 고등학교 평균성적을 계산합니다.

첫 신입생은 다음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이거나 동일해야 합니다. 대학교 준비수업인 “A-G” 포괄적 수업을 15학점으로 이수합니다. 아래 설명된 것처럼 “A-G” 자격이 되는 평균학점(GPA) 받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민이며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생은 2.50 또는 “A-G” 자격이 되는 평균학점을 받아야 입학 자격이 됩니다;
- 2.00와 2.49로 학점을 받은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캘리포니아 주민은 보충요소로 입학을 평가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니면 3.00 이상 “A-G” 평균학점을 받고 영향받은 캠퍼스와 프로그램에서 요약한 것 등 개별적 캠퍼스에서 사용하는 보충적 요인이 있어야 입학 자격이 됩니다;
- 평균학점을 2.47와 2.99로 받고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니면 보충적 요인으로 입학을 심사합니다.

입학요건의 임시변동사항은 영향받은 CSU 캠퍼스와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영향받은 캠퍼스와 프로그램은 신청인에게 “A-G” 평균학점의 한도를 더 높게 올리며 보충적 요소와 관련된 비중으로 입학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2021-2022년과 2022-2023년 학년도에서 시험성적을 사용하여서 신청인의 입학 결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대학교는 학생의 입학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A-G” GPA와 보충요인을 합쳐서 합니다.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보충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A-G” 최소요건을 넘는 수업 수;
- 수학이나 과학수업 성적;
- 가정수업;
- 과외활동과 리더십 참여;
- 고등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 참여;
- 대학교 입학 결정을 알리는 다른 정보.

UC 신입생 자격요건:

1. A-G 수업 15 개를 이수합니다 (11 개는 11 학년 말까지)
2. 대학 준비수업을 최소한 15개를 (“A-G” 수업) C 학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 겨울, 봄, 여름에 이수한 수업이면, UC에서 패스/크레딧(pass/credit)으로 허용합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시작하기 전에 수업을 최소한 11개를 이수해야 합니다.
3. 수업에서 평균학점(GPA) 3.0 이상 (비거주민은 3.4) C 학점보다 아래는 안됨.

SAT/ACT 시험점수:

UC는 입학결정이나 장학금을 주면서 SAT 또는 ACT 시험점수를 보지 않습니다. 시험점수를 신청서와 제출하고 싶으면, 입학하고 나서 최소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대안책으로 사용하거나 수업배정을 받기 위해 사용합니다.

대학 입학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ccco.edu/>: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 <https://www.assist.org/>: 인터랙티브 사이트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CSU 또는 UC로 편입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편입 정보가 있습니다.
- <https://www2.calstate.edu/apply>: 이 웹사이트는 CSU 시스템, 온라인 신청서, CSU 캠퍼스에 대한 링크를 학생과 가족들에게 제공합니다.
- <https://www.universityofcalifornia.edu/>: 이 웹사이트는 입학정보, 온라인 신청서, UC 캠퍼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 <https://achieve.lausd.net/GPS>: 이 웹사이트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이후 성공하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남기 위한 자원으로 도와줍니다. 학생, 가족, 교육자,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과 직업 준비, 대학에 가기 위한/대학 생활의 끈기, 중고등학교 이후 준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사립대학교가 많이 있고, 대규모 연구시설부터 작은 문과대학교에서 혼옥에 집중된 특수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마다 입학 요건이

각자 있습니다.

학생들은 직업기술 교육으로 직업 옵션을 찾아봅니다. 이것은 특별히 직업준비와/또는 업무 준비에 집중된 프로그램/수업입니다. 프로그램/수업은 학업 과정과 합쳐서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하여 직업기술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s://www.cde.ca.gov/ds/si/rp/>

학생들은 학교 상담사를 만나 대학 입학 요건에 부합하거나 직업기술 교육과정에 등록해도 됩니다.

규율 기초방침과 학교분위기 권리 장전

LA 통합교육구는 온전한 어린이의 사회적 감정적 건강, 온전한 교실, 온전한 학교, 온전한 커뮤니티를 마련하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환영받는, 학습과 수업 환경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트라우마 - 회복력, 다중 계층 지원 시스템(MTSS) 골자, 긍정적 행동개입 지원과 회복방법[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and Supports/Restorative Practices, (PBIS/RP)]을 활용하여 교사와 이해관계자가 증거로 개입합니다. PBIS/RP는 늘어난 학업참여도, 사회적 성공, 진실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자리를 마련하고 마음이 통하고 믿음을 키우는 절차와 일상을 마련합니다.

LA 통합교육구의 규율 기초방침으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되며, 환영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교육자는 학습을 방해하는 장애와 장애물이 없는 환경에서 가르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긍정적인 행동 지원과 훈련 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학교 규칙과 사회 정서적 기술을 가르침, 학생의 예의바른 행동을 격려하기, 교실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 건강한 관계와 긍정적인 행동을 지지하는 전략 형성, 범법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조기 중재를 사용하게 함.

2013년 5월, LA 통합교육구는 정학을 줄이고, 출석률을 높이며, 시험 점수를 높이고, 학교 직원들이 전부 찬성한 긍정적인 행동개입 지원과 회복방법 사용 (PBIS/RP)의 사용에 대한 LA 통합교육구의 약속을 준수하는 [학교 분위기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학교 분위기 권리장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정학 대체 방안 (학생은 "의도적 반항"(48900(k)) 위법행위로 정학이나 퇴학당할 수 없습니다);
- 학교의 징계처분, 교내 체포, 위반티켓 등 자료를 찾아보기 https://achieve.lausd.net/PBIS_RP;
- PBIS/RP를 실행하고 체계적 실행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하고 관련된 시스템과 도구를 검토하기 위한 LA 통합교육구 [대책 위원회](#)
- 교내 학교경찰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지침
- 학교 차원에서 긍정적 행동 개입과 지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고발하는 시스템 <https://dfpcomplaint.lausd.net>.

징계 기초적 방침 대책위원회(Task Force)는 LA 통합교육구와 커뮤니티의 이해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긍정적인 행동개입과 지원/회복방법 사용에(PBIS/RP) 대한 예방과 개입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대책 위원회의 목표는 PBIS/RP를 시행하고 관련된 시스템과 방법을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자료는 긍정적인 행동개입과 지원/회복방법 사용(PBIS/RP) 웹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PBIS_RP) 에서 보십시오.

교육구 서비스 센터와 학부모와 커뮤니티 자원 센터

LA 통합교육구는 교육구 전화번호 (213) 241-1000으로 전화한 분들과 LA교육구 본사의 방문객들에게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교육구 서비스센터에서 LA 통합교육구 사무소로 전화로 도움을 받으려는 분들을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교육구 서비스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LA 통합본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환영합니다.

LA 통합교육구는 학부모, 커뮤니티 주민, 직원에게 우수한 고객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헬프데스크는 LA 통합교육구 가정, 커뮤니티, 직원이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부모님과 주민들에게 정보와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학부모, 커뮤니티 주민을 위한 헬프데스크는 (213) 443-1300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6:00시부터 저녁 6:00시까지입니다.
- 직원 헬프데스크는 (213) 241-2700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6:00시부터 저녁 6:00시까지입니다.

성인과 진로 교육 부서 (DACE)

LA 통합교육구, 성인 및 진로교육 부서(DACE)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 진로 및 시민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DACE는 매년 10개 주요 성인 교육 센터와 140개 이상의 LA 통합교육구 지부사무실에서 45,000명 이상의 성인 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업 프로그램으로는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 시민권, 성인 기본 기술,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습니다. DACE는 또한 건축 및 건설 무역, 정보기술, 보건과학 등 15개 산업 분야에서 176개 이상의 진로를 제공합니다. DACE는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LA시 경제인력개발부, 지역 고용주 등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대학과 직업을 준비합니다.

DACE는 61개의 직업훈련과 41개의 개인프로그램 후원자가 있는 전국 최대규모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20-21년 학년도에, DACE 실습프로그램으로 92,000개 이상 등록된 실습생을 교육했습니다.

DACE는 또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대규모 지역검정고시(HSE) 시험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수천명의 학생들이 DACE의 20개 HSE 시험센터 중 한 곳에서 검정고시 자격증을 받게 도움을 줍니다. 또한 DACE는 유망한 청소년과 성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대학과 직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가속화

대학과 진로전환(ACCT) 프로그램에서는 위탁 청소년과 노숙자 청소년 등 단절된 청소년들(16~24세)이 개별화된 교육지원과 종합상담 서비스를 받으며 고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 공부합니다. 통합교육훈련(IET) 프로그램에서는 신규 이민자와 난민을 포함한 성인 영어 학습자가 영어 지도와 진로 교육을 동시에 받아서 고임금, 고기술 취업을 위해 빠르게 성장합니다.

2018-19년에 DACE는 현재 교육구 전역에 21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지원하는 가족 성공 계획을(FSI) 출범시켰습니다. 학부모의 참여를 위한 K-12학년 이전에 맞게, FSI 프로그램은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자녀의 학업 성취를 도와주도록 만든 영어 교육이며 이중언어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역의 성인 프로그램 찾는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unifiedadult.org>을 찾아보거나 (213) 241-3150으로 문의하십시오.

복장 규정/교복

LA 통합교육구는 학생의 복장과 머리 스타일이 학습환경에 적합한 지침에 따라 학생들의 자유로운 표현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 학생 복장 지침

1. 모든 학생은 개인의 안전과 학교 활동을 위해 단정한 복장에 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학 실험실, 목공 실습소, 요리 등 전문적 학교 프로그램과 수업에서 전문적 복장을 입거나 안전, 산업 표준과 관련된 제약사항이(예: 헤어망, 안전 보안경, 나폴거리는 소매와 발가락 트인 신발 금지) 있습니다. 어떤 복장도 학생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없으며, 사적인 부분을 가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적 부분”이란 수영복으로 덮인 부분을 말합니다.
2. LA 통합교육구와 **학교 위원회 방침**은 학생들의 성별을 표현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학생들은 전통적으로 다른 성별과 연관될 수 있는 복장을 입지 못하게 처벌받을 수 없으며, 착용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3. 지역 학교는 공연, 대회, 캠페인, 축하 행사 등 학교 행사에서 복장 방침을 조정할 수 있다.
4. 저속하고 성적으로 노골적이며, 차별적이고, 음란하고, 비방하는 언어나 이미지가 있거나, 무기, 마약, 술, 담배, 마약 등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조장하는 옷, 장신구, 배낭, 책가방 등의 개인 물품은 금지된다.
5. 머리, 구레나룻, 콧수염, 턱수염은 아무 길이나 스타일로 기를 수 있으며, 복장은 아무 유행, 스타일, 디자인도 됩니다.
6. 학생들은 십자가상, 야물게, 두건, 터번을 포함하나 제한되지 않는 종교적 악세사리나 복장을 착용해도 됩니다.
7.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야외에서 쓰는 모자를 포함하지만 제한되지 않는 자외선 차단 옷을 입어도 됩니다.
8. 걸/보이 스카우트, 4-H클럽, ROTC 등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청소년 단체에 참가하는 학생은 단체 회의일정표에 따라 단체복을 착용합니다.

학교는 지역학교 현장의 학생 복장 규정을 정하거나 행정, 교수진, 직원, 학부모/보호자, 학생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자발적인 교복 방침을 정합니다. 학생 복장에 대한 단기적이거나 일시적 제약이 있습니다. 정해진 학교 복장 규정은 LA 학생 복장 통합방침과 해당 법률, 규정, 법원 판결과 일치하고 부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큰 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필요하면 학생 복장에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보호자, 학생, 교직원에게 교복 방침을 적절히 통지해야 합니다. 최소한 입학 당시 입학하는 학생과 매 학년 초의 모든 학생(최소한 연 1회)에게 교복 방침의 사본을 주고, 여기에는 결과나 보복 없이 참여하지 않는 선택사항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민자 신분, 시민권, 종교적 신념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적 형평성

자녀들은 이민이나 시민권 지위나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무상공립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구금되거나 추방될 경우 미성년자 학생을 돌봐줄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을 알아내는 2차 연락처 등 비상 연락처를 학교에 주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는 보호자 승인서나 문서를 작성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을 정해서 미성년 학생을 대신하여 교육적, 의료적 결정을 하게 하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실제적이거나 인지된 국적, 민족성, 이민자 신분 등을 근거로 차별, 괴롭힘, 희롱, 협박 또는 괴롭힘(따돌림)을 당하면 증오범죄로 신고하거나 LA 통합교육구에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등 불만신고 절차에 대한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웹사이트는 이민학생들과 가족들에게 <https://oag.ca.gov/immigrant/rights> 를 통해서 "귀하의 권리를 알아보십시오" 자료가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의 “우리는 하나”(“We Are One”) 웹사이트에서 <https://achieve.lausd.net/weareone> 에서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적 대안학교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교육구가 대안 학교를 제공합니다. 대안학교는 더 작고, 더 개인화된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고 조직됩니다. 교육적 대안 학교의 목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한 자격요건을 완수하고 대학과 직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육적 대안 학교의 학생들은 온전한 아이를 키우는 수준높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업, 사회적, 직업적 능력을 개발합니다. LA 통합교육구 대안학교는 연속 학교, 지역사회 주간 학교, 입산부와 육아 미성년자를 위한 학교, 자습 등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각 지역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구청에 문의하십시오.

비상사태 대비 - LA 통합교육구

LA 통합교육구 학교들은 학생과 교직원이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합니다. 모든 학교에는 비상시에 학교 직원들을 안내하는 안전한 학교 통합계획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과 직원을 위한 비상사태 물품을 비축합니다. 이 물품은 물, 음식, 구급상자, 수색과 구조 장비, 위생제품입니다. 학교 직원이 이 물건을 자주 확인합니다.

모든 학교는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고 주정부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초월하는 정기적 비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학생이 비상훈련에 열심히 참여하고 진지하게 참가할 것을 학부모/보호자에게 부탁드립니다. 비상훈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훈련** -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한 달에 한 번, 고등학교는 한 학기에 한 번 연습합니다;
- **지진 연습** - 1년에 한 번 모든 학교가 그레이트 캘리포니아 셰이크 아웃(Great California Shake-Out)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지진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가을에 예정되어 있으며, 학교 재난계획의 모든 요소를 교육구 차원에서 연습한다;
- **드롭, 커버, 홀드온(지진) 훈련** - 학교는 매달 이 훈련을 사용하여 지진 발생 시 학생들이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 **봉쇄 훈련** - 매 학기 첫 달 동안 학교는 캠퍼스 내 또는 근처에서 폭력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연습합니다;
- **대피소 훈련** - 학교는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캠퍼스 근처나 환경 위협에 대한 대응 방법을 연습합니다;
- **대피 훈련** - 학생들은 적어도 한 학기에 동네에서 발생한 충격이나 폭발에 대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거나 연습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와 보호자가 학교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학교는 며칠 동안 학생들을 돌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구급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와 보호자들이 자녀의 72시간 분량 처방약들을 학교 보건소에 가져다 줄 것을 학교에서 부탁드립니다. 약물은 약국 라벨이 부착된 용기에 자녀의 이름, 약 이름과 복용량, 약물을 투여하는 설명서가 나와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비상시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학부모/보호자는 학교 비상사태 절차, 요구사항, 다시 만나는 대문(Reunion Gate) 위치를 알아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될 때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학교에서 보내는 긴급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보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하는 비상대책이 있으며 비상사태 동안 학교는 이러한 절차를 따를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비상사태동안 안내와 도움을 받기 위해 학부모/보호자에게 아이들이 의지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침착하게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행동하게 합니다. 회복하고 정상적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의 비상계획과 관련된 정보는 학교 행정부에 연락하십시오. 학부모/보호자와 학생들을 위한 LA 통합교육구 커뮤니티 비상계획 앱을 <http://achieve.lausd.net/emergencyapps> 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LA 통합교육구의 비상사태 대비와 대응법에 대한 정보는 <http://parentemergencyinformation.lausd.net> 에서 확인하십시오. LA 통합교육구의 비상사태 계획안에 대한 질문은 비상사태 서비스 사무소 (213) 241-5337으로 연락하십시오.

비상사태 대응

비상시 공립학교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입니다.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현장법이 규정한 바 다른 공공건물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지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는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보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입니다. 학교들은 또한 학생과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화재경보기와 살수 소화 장치 시스템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화재/생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을 가능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으로써 비상사태에 대응할 것입니다. 화재나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학생들은 교실에서 나와 건물에서 떨어진, 안전한 집결장소, 보통 학교 운동장 또는 놀이터로 이동합니다. 봉쇄 또는 자택 대기 기간 동안, 학생들은 건물을 보호물로 사용하기 위해 실내로 옮겨질 것입니다.

비상사태에 자녀들을 데리러오는 학부모/보호자에게 학교 주변에 위치한 요청출입구(the Request Gate) 가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이곳은 학교가 비상시에 학생들을 보내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학생의 비상 연락처에 이름이 나온 사람에게만 학생을 보내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의 비상 연락처가 현재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고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폭력의 위협 동안, 학생들은 그들을 해칠 수 있는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잠겨진 교실에 보호될 것입니다. 캠퍼스가 보호되어야 하는 비상사태 동안, 학교 캠퍼스가 안전하다고 경찰이 발표할 때까지 학부모/보호자들은 아이들을 픽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호되며 안전할 때만 양도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성공하는 법: 타이틀 1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알 권리

학년 초에 타이틀 1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의 교사자격증을 볼 수 있는 사실을 타이틀 1 자금을 지원받는 지역 학교에서 통지해야 하며 학부모/보호자가 요청했을 시(적절한 시기에) 학교에서 정보를 드립니다. 교사가 다음 조건에 최소한 부합하는지 나오게 됩니다:

- 교사가 가르치는 학년의 수준과 과목이 국가 자격증과 면허증 기준에 부합함;
- 국가자격증 또는 자격조건이 면제된 비상상황이나 임시로 가르치고 있는지 여부;
- 교사 자격증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지 여부.

또한, 타이틀 1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보호자는 자녀를 돌봐주는 보조교사 자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A 통합교육구에서 일하는 보조 교사(TAs)는 다음과 같은 세(3)가지 조건을 부합해야 합니다:

-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승인 기관에서 인가한 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거나 또는;

- a. 일반 교육개발 자격증 (GED); 또는
- b. 검정고시 (HiSET); 또는
- c. 중고등학교 이수 평가시험 (TASC); 또는
- d.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능력시험(CHSPE); 또는
- e. 준 학사 이상(다른 국가의 교육은 LA 통합교육구 승인 기관에 의해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
- 현지 지식 평가[지역 능숙도 시험(DPE)]를 통과하거나; 또는
 - a. 캘리포니아 기본 교육시험(California Basic Education Skills Test, (CBEST)) 또는 이와 동등한 시험; 또는
 - b. 미국 인가학교 학사 학위 이상;
- 수업을 돕기 위한 지역 기술 평가 [Instructional Assistance Test (IA)] 또는 동등한 평가 통과; 또는
 - a. 48학기 또는 72 쿼터 대학과정 이수; 또는
 - b. 준 학사 이상(다른 국가의 교육은 LA 통합교육구 승인 기관에 의해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44926항 : 근무하면서 캘리포니아 사범대학 협력기관에 재학생으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채용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타이틀 1 학교에 다니고 있고 자녀의 교사와/또는 보조교사의 전문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여 부모의 알 권리가 있다고 알려십시오. 누구의 교사자격증을 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십시오.

현장 학습

학생들은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장애, 그외 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른 이유로 인해 현장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건강 문제/질병이 있는 학생에게 현장 학습, 진료 허가, 개인병력을 서류로 제출하십시오. 학부모/보호자는 필요한 모든 의약품, 소모품, 기기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현장 학습 출발일 최소 오(5)일 전). 현장학습에서 약물(처방약과 일반의약품)을 투여하려면 학부모/보호자는 작성된 "수업시간 중 약물 복용 요청서"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그 양식은 학부모/보호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소지한 의사가 서명하고 날짜를 적은 명령서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전문 의료 서비스(프로토콜)를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 학습일(들)에 최근 작성한 학부모 동의서와 의사의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급식 서비스 부서 (Café LA)

LA 통합교육구 급식부는 미국에서 최대규모 학교 아침식사 프로그램(SBP)과 두 번째로 큰 전국학교급식프로그램(NSLP)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684개 카페테리아, 86개 조기교육센터, 네(4)군데 유아센터에서 제공되는 약 68만 5000명 (685,000) 급식입니다. 뉴먼(Newman) 영양센터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중 매일 70,000개 급식을 준비해 현장에서의 준비가 여의치 않은 167개 학교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카페LA에서 저희의 미션은 "학업 우수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영양이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농무부(USDA) 산하의 연방 급식 프로그램으로 학교 아침식사 프로그램(SBP), 전국 학교급식 프로그램(NSLP)이 있습니다. 하지만 USDA는 주정부 기관과 학교 급식부에서 급식을 계속 제공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관리하고 알맞은 안전수칙을 관리하면서 추가 지원과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2021-2022년도에 커뮤니티가 다시 열게 되어서 특히 중요합니다. 커뮤니티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교를 다시 여는 것을 균형잡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육구는 정기학년도에 매끄러운 여름 옵션프로그램 (SSO)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식사는 무료입니다. 2021-2022년도에 SSO에 따라서, 학부모/ 법적 보호자는 급식을 받아서 집에서 먹습니다. 주말 급식도 운영하는 학교에서 금요일에 받아가도 됩니다.

SSO프로그램에 더해서, 거의 모든 학교에서 방과 후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아동과 성인 급식프로그램(CACFP) 참여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따뜻한 저녁 식사와 함께 유아교육 학생들에게 아침, 점심, 간식도 제공합니다. 급식 부서는 토요일 급식과 여름 급식 프로그램(선택된 장소에서)을 제공하여 정규 학교일이나 전통적인 학교 일정 외에도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필요를 맞춥니다.

학교 현장의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답받을 최선의 장소는 자녀 학교의 급식 담당자입니다. 식사 서비스, 음식 준비, 위생, 안전, 그리고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서비스 시간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영양에 대한 자료는 <https://achieve.lausd.net/cafelat>에 있습니다.

급식 서비스 부서	(213) 241-6419 (213) 241-6409	급식 신청서질문	(213) 241-3185
-----------	----------------------------------	----------	----------------

영양, 카페 LA 메뉴

LA 통합교육구는 비만, 당뇨병,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한 음식과 생활습관을 장려하는 미국의 선두주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아동영양에 대한 모범적 관행을 위한 방침을 채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습관 개선 방침"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20분 이상 식사시간이 있고 학생들의 식사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지역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가치 있는 인력, 동물복지, 영양을 지원하는 식품 구매를 홍보하는 "좋은 식품 조달 방침".

영양사팀이 메뉴를 계속 만들고 최고의 영양기준을 따릅니다. 메뉴는 자녀의 학교나 식품부 웹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cafelat>에서 보십시오.

메뉴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 다음 원칙을 고수합니다:

- 일일 채식주의자와 채식 선택권, 신선한 샐러드, 샌드위치 선택권 등 다양한 선택하는 메뉴;
- 통곡물이 풍부한 제품만 공급합니다;

-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매일 공급합니다;
- 항생제 없는 닭고기만 제공합니다;
- 채식 메뉴인 '고기 없는 월요일'에 참여합니다;
- 식사는 지방이 총 칼로리의 30%이하, 포화 지방은 총 칼로리의 10% 이하, 트랜스 지방이 첨가되지 않습니다;
- 식사에는 인공색상, 맛, 글루탐산염(화학조미료, MSG), 질산염 또는 황산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생의 합격 등급이 높은 항목만 메뉴에 넣기로 하고, 학생 취향 테스트에서 받은 학생들의 의견으로 메뉴를 관리합니다.

자녀가 특별한 식사나 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하면, 학부모/보호자는 식품 서비스 관리자, 학교 간호사 또는 <https://achieve.lausd.net/cafela>로부터 "특별식을 요청하는 LAUSD 의료 진술서" 양식을 보십시오. "메뉴" 페이지 아래에 있는 [영양 정보와 특수 요구 사항](#) 링크에서 다음 양식과 정보를 보십시오:

- 특별 식이요법을 요청하는 LA 통합교육구 의료인 성명서;
- 우유를 두유로 대신하는 학부모/보호자 요청서;
- 영양분 분석;
- 탄수화물 양;
- 식품 알레르기 성분 목록.

학부모/보호자가 특별 식단 또는 메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의 영양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	이메일	전화번호
Homa Hashemi, R.D., 수석 영양 전문가	homa.hashemi@lausd.net	(213) 241-2969
Ivy Marx, R.D., 수석 영양 전문가	ivy.marx@lausd.net	(213) 241-1064
Kayley Drain, 영양 전문가	kayley.drain@lausd.net	(213) 241-2994
Kim Nguyen, 영양 전문가	lduyen.nguyen@lausd.net	(213) 241-2988

연방법과 미국 농무부 방침에 따라 이 기관은 다음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성 정체성(성 표현 포함), 성적 지향, 장애, 나이, 결혼 여부, 가족/부모의 상황, 공적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 정치적 신념 또는 이전 시민 평등권 활동이나 USDA에 의해 수행되거나 자금을 받은 프로그램/활동에 대한 보복(모든 근거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차별에 대한 시민 평등권 프로그램 불만사항을 신고하려면, <https://www.ascr.usda.gov/complaintfilingcust.html> 또는 USDA 사무소에서 온라인상의 USDA 프로그램 차별 신고 양식을 작성하거나 (866) 632-9992번으로 전화하여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양식에 요청된 모든 정보가 포함된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불만제기 양식 또는 편지를 우편으로,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Director, Office of Adjudication,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팩스, fax (202) 690-7442, 또는 이메일, program.intake@usda.gov 로 저희에게 보내십시오. 청각장애인, 난청인 또는 언어장애인이면 연방 릴레이 서비스(Federal Relay Service)를 통해 (800) 877-8339 또는 (800) 845-6136 (스페인어) 으로 USDA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USDA는 동등한 기회 제공자이자 고용주입니다.

외국인 학생 입학 전형

학생건강 및 인적서비스 (SHHS) 학생 서비스 외국인 학생 입학처는(FSAO) 미국무부에서 발급한 F-1 또는 J-1 학생비자로 LA통합교육구에서 공부하려는 9-12학년 유학생들에게 I-20 서류를 발급하는 것을 허가받았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입학 절차와 입학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찾아보십시오 <https://achieve.lausd.net/Page/12902>.

정치적 행동, 집회, 시위, 데모 등 표현의 자유

학생들은 언론의 자유권이 있고 학교 캠퍼스에서 정치적이거나 언론의 자유 활동에 참여해도 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포해도 됩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이 아닐 때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의논하기 위해 캠퍼스에서 모임을 해도 되고 수업시간이 아닐 때 캠퍼스에서 평화로운 시위에 참여해도 됩니다. 졸업식과 학교 모임에서 학생 연사를 포함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변론, 표현, 행위가 외설적이고, 음란하고, 명예훼손하고, 비방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들이 재산을 파괴하거나 사람이 다치게 하지 않고, 학교에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는 한 -징계받지 않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해도 됩니다.

학교수업일이나 캠퍼스에서 언론의 자유권을 행사하려는 학생들은 학교 행정관들이 합리적인 한계를 정하는 것을 캘리포니아 법으로 규정합니다. 학교 행정관들은 학생과 LA통합교육구 직원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캠퍼스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 장소, 발언이나 활동방식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시위, 집회, 농성에 관해서 학교 행정관 또는 LA통합교육구 방침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은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시위하면서 학교 캠퍼스나 교실에서 스스로 나가는 학생들은 캠퍼스나 교실로 돌아가라고 지시받습니다. 학생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기록됩니다. 학생이 캠퍼스 외부에 있으면, 학교 행정관들이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학생 시위나 워크아웃으로 일반대중이 방해받으면, 지방 경찰이 출동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이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LA 통합교육구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학생의 언론의 자유권을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LA 통합교육구 직원은 근무시간이나 LA 통합교육구 대리인으로 일하는 동안 시위, 자료배포, 집회, 농성, 워크아웃에 학생들의 참여를 지지하거나 홍보하거나 격려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생의 학교 행정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성적 변경 요청 절차

교육법 49066항에 따라 학부모/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의 성적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실수;
- 사기;
- 불신임 및/또는;
- 성적을 주기에 부적격.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의 성적을 받으면 학생별로 얻은 성적은 해당 수업의 교사가 정하는 성적으로 합니다. 위에 나온 근거가 없는 경우 성적이 최종적이 될 것입니다.

성적 변경 요청은 성적표가 발송된 날로부터 30일까지 담임 선생님과 시작합니다. 선생님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는 교장에게 요청서를 보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지방교육감과 최종적으로는 최고 학업책임자에게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학부모는 요청을 지지하는 정보를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장 선생님께 문의하거나 지역 구청에 문의하여 BUL-1926.3 "학생 성적 변경 요청"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총기 없는 안전한 학교

총기없는 안전한 학교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법은 학교 캠퍼스에서의 총기 소지를 금지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총기 소지자로 판명된 학생은 체포될 것이며, 정학과 퇴학 권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집행 위원회는 학생을 퇴학시켜야 합니다. 퇴학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소지는 사물함, 지갑, 배낭, 자동차에 보관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건강 정보

심각하거나 장기적인 질병, 부상, 수술 또는 기타 입원(정신과와 마약, 알코올 입원환자 치료 포함) 후 복학하는 학생은 캘리포니아주 의료인의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신체 활동에 관한 권고가 나와야 합니다. 의료인은 캘리포니아 자격증이 있는 의사[의사(MD)] 또는 정골전문의[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 (DO)], 캘리포니아 자격증이 있는 치과 의사, 임상 간호사 (NP), 캘리포니아 자격증이 있는 산과, 캘리포니아 자격증이 있는 보조 의사(PA)로 정의됩니다.

붕합(바늘로 꿰맨 곳, 스테이플스), 에이스 봉대(탄력 봉대, 팔걸이), 깁스, 부목, 목발, 지팡이, 워커, 무릎 워커/스쿠터, 휠체어를 가지고 학교에 오는 학생은 신체활동, 이동, 안전에 관련된 권고사항 및/또는 제약사항을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의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장비는 학부모/보호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정규수업이나 수정된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체육수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10주 이하) 학부모/보호자의 요청서를 최대 오(5)일까지 접수받고, 이후 학생은 캘리포니아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에게 요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동의서와 비밀보장법에 따라서, 학교에서 기밀하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목적으로 12세 이상인 학생은 학부모/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면제받습니다.

학생들은 휴식시간, 체육시간 등에서 야외활동을 할 때 보호구(모자, 차광관 및/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캘리포니아 교육법 35183.5항에 따라 자외선을 차단하는 의류/머리에 쓸 것을 규제합니다. 학교는 보호구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학교에 있는 동안 야외 활동을 위해 허용 가능한 햇빛/바람으로부터의 보호 대책으로 자외선 차단제와 입술에 바르는 크림을(처방전 없이 사는 약) 사용해도 됩니다.

전염성 질병 예방

전염성 질병 검사는 LA 카운티 보건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LACDPH) 전염병이 의심되는 학생은 재출입 방침에 부합할 때까지 학교에 출입이 금지됩니다. 출입금지와 재출입허가에 대한 지침은 교육구, 캘리포니아 보건부, 캘리포니아 교육부, LACDPH에서 정한 방침을 따릅니다. 전염성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와 국가기관에서도 비롯됩니다. 구체적인 질병 지침은 지역간호서비스 홈페이지 <https://achieve.lausd.net/nursing> 에서 학교 내 전염병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일시적으로 학생을 학교에 출입금지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염성 질병에 대해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결막염(핑크눈), 피부 감염(농가진), 인두염, 수두, 옴, 머릿니, 백일해, 독감, 코로나19 등이 포함됩니다. 질병, 전염성, 교육구, 카운티, 주 방침에 따라 즉시 또는 학교 끝날 때 출입금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시 오려면 건강상태와 적합한 치료에 근거합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예방접종서가 일부분이나 전체가 없는 학생은 출입금지 기간이 더 길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100도 이상) 열이 있는 학생은 최소한 24시간 해열제를 안 먹고 열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복학하기 전에 증상이 나아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위협할 수 있는 수두, 머릿니, 코로나19, 전염병에 노출되었으면 학교에서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리게 됩니다. 통보에 대한 결정은 보건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두에 특별한 위험이 있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학교 간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인 학생이란 면역에 영향이 생기는 질환이 있는 학생, 암이나 장기이식을 위해 특정한 약을 먹는 학생입니다. 머릿니와 기타 전염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정보는 자격증이 있는 학교 간호사나 학교 보건의를에게 받으십시오.

현재 진행 중인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보건 공무원들의 지침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보건 공무원들이 제시한 요건과 지침을 계속 준수할 것입니다.

당뇨병 멜리투스(Mellitus)

제1형 당뇨병은 유전적, 환경적,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1형 당뇨병은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인슐린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학교 직원, 의료 제공자, 관리자가 협력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면허증이 있는 의료인과 학부모/보호자의 허가서가 있으면 학교에서 혈당 확인, 저혈당 치료, 케톤(ketone) 검사, 탄수화물 수치, 인슐린 투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격증있는 간호사에게 연락하여 당뇨병 관리를 시작하십시오.

과체중 아동과 청소년은 2형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천식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지기 쉽습니다. 방지할 경우 당뇨병은 신부전, 실명, 심장마비, 절단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국가기관과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7학년 신입생들의 학부모/보호자를 위한 2형 당뇨병 자료표를 개발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나 수업시간에 "당뇨병이란 무엇인가?" 자료표를 재학생과 7학년 신입생에게 주게 됩니다.

예방접종 요건

신입생은 등록할 당시에 의료인이나 보건국에서 주는 최근 작성된 예방접종기록을 보여주지 않으면 등록/입학할 수 없습니다. 빠진 예방접종 주사를 맞을 날짜가 아직 안 되었으면, 학생들은 조건부로 입학하고 등록해도 됩니다. 위탁가정 학생, 노숙자 학생, 이주민학생, 군인가족 학생, 개별교육안(IEP) 학생은 예방접종기록의 유무나 예방접종 여부 등에 관계없이 조건부 입학을 허가받으면 즉시 입학합니다.

예방접종을 맞을 날짜가 지난 학생들은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LA 통합교육구에 신입생이나 지역의 전학생들이 등록하려면 현재 예방접종을 전부 맞았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7학년에 입학하거나 진학하는 모든 학생은 7살 생일까지 백일해 예방접종(예: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Tdap)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태드(파상풍, 디프테리아 Td)예방접종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합니다. 하지만, 7살 생일이 지나고 맞았으면 DTap/DTP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아무 학년에 다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진학하거나 7학년에 입학하거나 올라가는 학생들은 2차 수두 예방접종을 해야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6학년에 자녀의 의사가 최근 예방접종으로 업데이트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주정부 요건은 www.shotsforschool.org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주정부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학교에 출입금지 됩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전염병에 노출된 학생은 보건부의 재량에 따라 학교에서 출입 금지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인 의사(MD) 또는 정골의사(DO)는 학생의 의료적 질환으로 예방접종을 일부분이나 전체를 면제받습니다. 2021년 1월부터, 학교와 육아시설을 위한 새로운 의료면제는 케어미(CAIR-ME)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와 의사는 케어미(CAIR-ME)에 로그인해서 의료 면제를 신청하십시오. 부모님은 자녀의 의사에게 면제 요청번호를 가져가면 의사가 케어미(CAIR-ME)에 로그인하고 면제서를 발급해줍니다. 면제서를 발급받으면, 의사는 두(2)장인 서류를 프린트하고 학부모/보호자는 자녀의 학교나 육아시설에 제출하는 복사본을 받습니다.

케어미(CAIR-ME)에서 의사는 의료적 면제서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 면허증이 있는 의사가 예방접종을 권하지 않는 아동의 신체적 조건 또는 의료 상황의 특수성;
- 면제되는 필수 예방접종;
- 의료 면제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
- 면제가 일시적일 경우, 만기일은 서명일로부터 12개월까지.

2016년 1월 1일부터 주정부법에 의해 학교나 보육시설의 학부모/보호자가 현재 필요한 백신의 개인적 견해 면제서(Personal Belief Exemption, (PBE))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학교에 제출된 모든 PBE는 법에 의해 다음 학년까지 받습니다. 예방접종 요건은 학생들이 자신의 개별교육안(IEP)에 따른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이용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학교 보건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클리닉에서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A 통합교육구 학생건강과 인적서비스, 학생의료 서비스에 (213) 202-7590으로 전화하여 예약하십시오.

학교에서의 약물 치료

캘리포니아 교육법 49423항으로 일반적으로 학교오는 날에 약물(처방약 또는 일반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모든 학생은 매년 교육구가 다음의 서류를 받을 경우 자격증을 소유한 학교 간호사 또는 기타 지정된 학교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가 허가한 공인 의료인의 서면 진술로, 해당 의약품의 이름, 복용방법, 양 및 복용 시간표를 상세히 기술한 의약품 처방;
- 의료인이 진술서에 언급한 점을 교육구에서 학생을 도우려고 한다고 보여주는 학부모/보호자의 진술서;
- 허가 받은 의료인은 잠정적 학생이 수업 시간에 약을 복용하지 않고 최소화 할 수 있는 약 복용 시간표를 마련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 이러한 약정서를 작성할 것을 학부모/보호자가 요청해야 합니다;

- 허가서는 매년 갱신하거나 처방전이 바뀌거나, 의사가 바뀔 때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허가서는 면허증이 있는 의사가 서명한 날짜로부터 일(1)년 동안 유효합니다;
- 학부모/보호자에 의한 의약품 복용 지시문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못합니다. 예외는 허가된 의료인의 편지와 학부모 허가서를 받고 변경한 경우입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언제든지 학교에서의 약물 투여에 대한 동의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 간호사가 의료인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규정 6925항에 따라 보호받는 보건기록을 동의서로 위반하지 않는 한, 학생들은 동의서 없이 약물을 캠퍼스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교육구가 적절한 서류를 받은 경우 학생들은 특정 약물(예: 흡입 천식 약물 또는 자동 주입식 에피네프린(epinephrine) 약물)을 소지하고 자가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품의 이름, 사용방법, 복용량, 복용 시간표를 상세히 기술하고 학생이 스스로 약을 자가 복용할 수 있다고 허락한 캘리포니아 공인 면허증이 있는 의사의 진술서;
- 학생의 자가복용과 인증된 학교 간호사, 또는 의료진이 의약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학생의 의료인과 상담하고, 부작용이 발생 시 담당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동의한 학부모/보호자의 진술서;
- 학생과 유자격 학교 간호사가 서명한 수업시간 중 자가 약물 복용/휴대에 대한 학생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학생이 자가복용약을 오용하면 구제적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캘리포니아 교육법 48900항) 자가 복용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 천식조치안은 학교에서 학생이 천식약을 가지고 다니고 자가 복용하면 충분합니다.

상원법 1266항(SB 1266)에 의해 개정된 교육법 49414항에 의해,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은 학교 간호사와 자원봉사자였고 훈련된 직원에게 응급 에피네프린 자동 주입기를 주어야하며, 아나필락틱 반응(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통받거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응급 의료 지원을 허가합니다.

구강 건강정보

캘리포니아 교육법 49452.8항에 의해서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이나 공립학교에 이전에 등록하지 않은 1학년 학생들은 5월 31일까지 구강건강검사를 받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학생이 공립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12개월부터 받습니다. 이 법은 현재 유치원이나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구강 건강검사는 허가된 치과 의사 또는 기타 면허 또는 등록된 치과 건강 전문의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법적 보호자는 자녀의 보험에 가입된 치과 진료소를 찾을 수 없거나, 진료비를 지불할 여유가 없거나, 자녀의 구강 건강 상태를 검사받기 원하지 않는 내용의 포기서에 서명할 경우 구강 건강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강건강검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과 가정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 검사를 안하거나 포기해도 학생이 학교에서 출입금지를 당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

입학 전 18개월 이내 또는 입학 후 최대 삼(3)개월안으로 모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보건 및 장애예방(CHDP) 지침에 부합하는 종합 신체검사와 건강평가가 필요합니다. 아동보건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검사는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의료 부서 진료소 또는 교육구의 학생의료 서비스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유아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모든 어린이들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LA 통합교육구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들은 최근 신체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목적을 위한 양식은 "학교입학 건강검진 보고"(PM 171)라고 하며, 학교 간호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장이 제한되어 있거나 메디칼(Medi-Cal)에 가입한 경우, LA 통합교육구 학교 클리닉(SBCs)에서 무료 어린이 건강과 장애 예방 검사를 받습니다. 어린이 건강과 장애예방 검사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학교 간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학부모/보호자가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검사를 받지 않기를 원할 경우(시력과 청력검사 포함) 매년 진술서를 학교 행정관과 학교 간호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의 시력검사와 청력 검사는 주정부 규정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실시됩니다. 7학년 여학생과 8학년 남학생은 척추 측만증(척추의 자연스럽지 않은 굴곡)이 있는지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더 치료가 필요하면 의무적 검사 결과로 발견한 점을 통지받을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검사받고 싶지 않은 학부모/보호자는 (시력검사와 청력검사 포함) 매년 진술서를 학교 행정관과 학교 간호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대항 경기에 참여하려는 9학년-12학년 학생들은 보통 스포츠 신체 검사라고 부르는 연간 종합 신체 검사를 현재 LA 통합교육구 방침에 따르는 면허증을 가진 의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학생에게 주치의가 없을 경우, 학교 의사와 간호사가 예약제로 신체검사를 합니다. 학교 입학, 예약, 어린이 건강과 장애 예방 및/또는 스포츠 신체 검사를 예약하려면, 학생 보건 복지 서비스, 학생 의료 서비스 사무소로 (213) 202-7584 또는 (213) 202-7590로 전화하여 예약하십시오. 또한 <http://achieve.lausd.net/sms> 에서 학생 의료서비스 웹사이트를 찾아보십시오.

학교 정신건강

학생 보건 복지 서비스, 학교 정신 건강(SMH)은 어린이, 청소년, 가족이 더 잘 갖춰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 건강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합니다. 학교 정신 건강 서비스는 학교, 진료소, 웰니스 센터에서 제공됩니다. 서비스와 지원은 무료이며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학교 정신건강 클리닉과 웰니스센터 개요와 소개절차

SMH 진료소와 웰니스 센터에는 면허를 가진 아동 정신과 의사들과 정신의학과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합니다. 모든 임상의는 다수의 증거에 기반한 실무에 대해 교육을 받고 우울증, 불안증, 파괴적 행동, 트라우마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현재 학교정신건강 고객이며 메디칼 의료보험이 있는 유자격 학생들은 약물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직원과 학부모/보호자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물어보기 위해 클리닉에 전화해도 됩니다. 서비스를 정리하기 위해서, 학교 직원과 가족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 절차를 따르기 바랍니다:

- 학교 직원은 학교 행정부와 학부모/보호자와 상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 학생에게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 학교 직원(행정담당자, 교사 또는 보조 직원)은 학부모/보호자와 협력하여 [상담을 위한 진료소 소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소개서를 작성할 때에 가족 연락처가 (주소와 전화 번호) 최근 것인지 확인합니다;
- 작성된 소개서를 해당 교육구에 있는 지리적으로 알맞는 진료소로 보냅니다.(이러한 진료소들은 소개 양식의 상단에 있음);
- 학교 정신 건강 담당자는 가족들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하여 환자정보를 받기 위해 예약을 합니다;
- 학생과 가족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정신 건강 치료를 합니다.

학교 정신건강 진료소 직원은 적절한 경우 학생과 가정에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기관과 사회서비스 기관과 연결되게 합니다. 진료소와 웰니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밀보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정신 건강 웹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smh> 를 참조하십시오.

자살 예방, 개입, 자살 이후 중재

LA 통합교육구는 안전하고, 예의바르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 노력합니다. 자살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하거나 보여주는 학생에게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며, 자살로 인한 사망 이후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LA 통합교육구의 책임입니다. 학교 직원, 학부모/보호자, 학생은 위험에 처한 학생을 구별하고 이들을 필수 학교,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료와 연결시켜주고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학생이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 상황에 대해 물어보면서 접근하십시오. 물어보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단계이고 물어보고 학생들을 위해서 있으며 말을 들어준다고 알려주십시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인해 즉시 도움이 필요하면 911에 전화하십시오. 정신질환 비상사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24시간 액세스 센터에 (800) 854-7771 또는 전국 자살예방 생명의 전화 (800) 273-8255으로 매일 24시간 연락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학생 건강과 복지서비스, 학교 정신 건강국으로 (213) 241-3840 또는 <https://achieve.lausd.net/smh> 를 찾아보십시오. 학교 정신건강 직원은 학년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 웰니스 센터

웰니스 센터는 학생과 커뮤니티가 필수적인 건강/정신 건강 서비스, 건강 증진, 직업 상담을 합니다. 웰니스 센터는 LA 통합교육구와 파트너인 커뮤니티 의사들이 운영하며 종합적인 의료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은 예방접종, 신체검사(스포츠 신체검사 등), 웰 차일드(well child) 진료, 질병 진료, 민감한 서비스, 행동 보건 서비스, 전문의 소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성인은 검진과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성인면역, 결핵검진, 전문의 소개 등의 의료관리가 있는 서비스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웰니스 센터는 메디칼(Medi-Cal)과 마이헬스 LA (My Health LA) 보험에 가입합니다. 건강보험이 필요한 경우 (866) 742-2273으로 학생 건강과 복지서비스 CHAMP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웰니스 센터에 대한 최신 정보는 학생 건강 복지 서비스 웹사이트를 <https://achieve.lausd.net/shhs> 찾아보십시오. 진료소와 웰니스 센터 목록을 보려면 메인 페이지 위에서 "센터/클리닉"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고등학교 졸업요건

2005년 6월 14일 LA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는 고등학교 졸업 조건으로 A-G 과정으로 교육적 형평성을 조성하기 위한 A-G 결의안을 승인하였습니다. A-G 결의안은 모든 학생이 2008년 7월 1일(BUL-076308)부터 대학 준비 과정 15개를 이수해야 하는 졸업 조건입니다.

2016년 졸업생들부터, LA 통합교육구 학생들은 교육구의 졸업 조건으로 A-G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A-G 과정을 구성하는 과목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마친 12학년 학생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고 이수했음을 나타내는 졸업장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식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졸업식에 참가할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졸업식 모자와 가운을 대여해줍니다. 학부모/보호자는 기념품으로 졸업식 모자와 가운을 선택적으로 구입합니다.

과목	2016 – 2023년 졸업자격요건
A - 역사/사회 (3년)	학생들은 UC/CSU A-G 과정을 최소

B - 영어 (4년)	열다섯(15)개를 듣고 D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C - 수학 (3년)	
D - 과학 (2년 실험실 과학 - 1년 생물 그리고 1년 물리학)	
E - 영어 이외의 언어 (2년)	
F - 시각/공연 예술 (1년 같은 교육)	
G - 선택과목 (1년)	
건강	1학기
체육	학위는 2년*, 체육 4년 필수 *
서비스 학습	
직업진로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 점수: 210	

* 교육법 51225.3(a)(1)(F)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려면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음 수업을 전부 이수해야 합니다. 체육 2반이며[1년동안] 예외는 학생이 이 법의 조항으로 면제받는 경우입니다.

**교육법 51222 (a)항에 의해 사(4)년 체육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51241항에 따라 면제받는 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들은 체육 수업을 수업일 10일마다 최소한 400분을 받아야 한다.”

비 필수과정: 고등학교 필수학점 취득, 서비스 학습요건을 성공적으로 이수, 진로 파악

SB 405/EC 52378항은 학생의 직업 목표, 학생을 위한 학교와 직업과 관련된 기회와 4년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과 성적을 설명하기 위해 요건을 늘립니다. A-G 조건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알아내고/감독합니다.

개별화된 졸업 계획(IGP): 모든 중고등학교는 모든 학생과 매년 개별화된 졸업 계획(IGP)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IGP 회의는 학업, 개인/사회, 대학교, 직업계획과 관련하여 상담원, 학생, 학부모/보호자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를 늘립니다.

졸업 면제

교육법 51225.1항과 51225.2항에 따라, 위탁보호대상의 학생, 노숙자 학생, 전직 소년원 학생, 현역 군인가구에 거주하는 학생, 현재 이주중인 아동, 신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법에 의해 추가 기준에 부합하면, 지역 졸업 요건을 면제받습니다.

영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캘리포니아 영어능력 평가(ELPAC)

LA 통합교육구는 아동의 문화자산과 언어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동의 교육적 필요성에 가장 잘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직 유창한 영어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성을 잘 맞추기 위해, 교육구들은 학생들의 영어 능력 수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교 직원들은 가정 언어 조사를 통해 가정과 학생들이 집에서 말하는 언어를 결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가정 언어 조사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주정부 법에 의해 교육구는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신입생의 영어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로 하는 캘리포니아 기초 영어능력평가를(ELPAC) 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초 ELPAC 는 등록하고 30일까지 해야합니다. 영어 학습자를 위한 초등학교 수업프로그램의 등록과 배정 초기 통지서 또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의 등록과 배정의 첫 통지서 라는 학부모 편지를 학교에서 보내서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매년 봄마다 학생의 영어 학습도를 평가하기 위해 재분류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컴퓨터 기반 종합 ELPAC를 시행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ELPA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장 선생님에게 문의하십시오. 추가정보는 <http://www.elpac.org/> 또는 <https://achieve.lausd.net/Page/1413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영어 학습자의 부모/보호자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초등 교육 프로그램 (K-5/6)	중고등 교육 프로그램 (6 -12)
이중 언어 양방향 몰입 (TWI)	이중 언어 양방향 몰입 (TWI)
이중 언어 한방향 몰입 (OWI)	이중 언어 한방향 몰입 (OWI)
영어 가속 프로그램의 어학과 식자율 (L ² EAP)	영어 가속 프로그램의 어학과 식자율(L ² EAP)
주류 영어	주류 영어
	모국어로 가르치는 신입생 프로그램
	장기 영어 학습자를 위한 가속 프로그램(6-12)

위에 나온 모든 프로그램은 LA 통합교육구 학생들의 이중언어/이중언어 읽기 쓰기 능력 및/또는 영어 능력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장에게 문의하거나 다국어 다문화 교육부서 웹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Page/172> 를 참조하십시오.

교육테크 계획

교육테크 계획(ITI)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테크를 학교 지도자들이 가장 잘 지원하는 직업적인 학습기회를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ITI 프로그램과 지원은 학생을 위한 국제교육기술학회(ISTE) 표준을 따르며, 모든 학습자를 위한 개인맞춤형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TI가 지원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디지털 시민권과 컴퓨터과학 교육 등이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디지털 도구와 지원을 활용하는 21세기 학습을 설계하고 통합하는 교육 리더십 팀의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ITI는 두(2) 가지 연례행사를 후원합니다. 상식적 교육과 제휴하는 연례 디지털 시민권 일주일(DCW)과 컴퓨터 과학교육 주(Computer Science Education, CSEWeek)입니다. DCW는 학생들이 진정한 디지털 시민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책임감있고 윤리적이며 안전하게 참여할 것을 홍보합니다. 디지털 시민권은 온라인 안전의 중요성, 대학과 직업 목적을 위한 인터넷의 역할을 가르치기 위해 학생들과 지속적인 교육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CSEWeek는 학생들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으로 기술의 창조를 가르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컴퓨터 과학 교육은 오늘날 서로 연결된 세계에서 학생들이 발전기 위한 중요한 학제간의 분야이며 21세기 문해력입니다.

학부모/보호자는 교육 공학의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ITI는 교육테크목표, 컴퓨터 과학 교육 및 디지털 시민권에 관한 정보를 통해 학부모/보호자가 자료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LA 통합교육구 부서와 협력합니다.

해충 통합관리 프로그램

1999년 3월, 교육위원회는 기술이 있으면 살충제와 제초제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목표로 개정된 IPM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사람, 환경, 재산을 보호하면서 병충해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위험성이 적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LA 통합교육구의 목표입니다. 아래에 상세히 기술된 IPM 방침은 장기적인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적절한 해충 관리 기법을 선택할 때 비화학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하에 가능한 경우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기 전에 기계식(예: 글루 트랩)과 배제식(예: 도어 스위프와 스크린 설치, 틈새와 구멍 메우기) 해충 관리 기법의 사용에 중점을 둡니다.

LA 통합교육구 직원 외에 보건 공무원, 의료인, 학부모/보호자 2명과 다른 일반인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된 해충관리팀은 위험성이 낮은 살충제와 제초제 승인 등의 정책 시행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살충제/살충제 제품은 내용물, 주의사항 및 위험이 낮은 사용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IPM 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충제와 제초제는 LA 통합교육구의 허가된 해충 관리 기술자만이 쓸 수 있습니다. 학교직원, 계약자, 학생 또는 학부모의 살충제/제초제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IPM 프로그램 및 목표, IPM 정책, 통지 요청 양식 및 본 핸드북에 포함된 현재 IPM 팀이 승인한 제품 목록을 요약하여 모든 농약 적용을 학부모/보호자, 직원 및 학생에게 통보합니다.

학교 사무실에서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IPM 팀 승인 제품 목록;
- 학교에서의 IPM 활동 기록;
- 72시간 전 농약 사용통지를 원하는 경우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요청되는 통지서 양식 (IPM 담당자와 독립적 IPM 전문가가 결정한 비상사태는 제외).

통지문에는 제품명과 활성 성분, 대상 해충, 농약 사용일, 농약 독성 범주를 나타내는 신호, 자세한 정보를 위한 연락처와 번호, 더 자세한 내용을 학교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자녀의 건강과/또는 행동이 살충제 노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살충제 살포에 대해 통지받으려면 학교장에게 통보요청서로 알려야 합니다.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IPM팀 승인 목록에 없는 살충제를 사용하기 전 최소한 72시간동안 그리고 정해진 시간동안 지역에 표지판을 눈에 띄게 부착해야 합니다. 경고 표지가 게시되는 시간은 사용된 화학 물질의 종류와 지속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와 같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게시글이 올라갑니다. IPM 프로그램과 방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 통합교육구 관리와 운영부서 (213) 241-0352로 문의하십시오. 온라인에서 링크섹션인 <https://www.laschools.org> 에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학부모 대표자리가 공식이고 학부모/보호자가 IPM 팀에서 근무하기 바라면 (213) 241-0352로 연락하여 등록하십시오.

방침: 해충통합관리(IPM)를 이행하는 것은 LA 통합교육구의 방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서 연방, 주정부 법과 규정, 카운티 조례를 따릅니다. LA 통합교육구 방침은 IPM 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살충제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내포하고, 어린이에게는 특별한 위험을 내포합니다. 살충제는 인간에게 암, 신경교관, 선천적 결함, 유전적 변경, 생식기능의 손상, 면역체계 장애, 내분비 교란, 급성 중독 등 건강상의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인정됩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생산적인 학습환경을 유지하며, 학교 건물과 운동장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해충을 관리합니다. 미적 이유만으로 해충을 관리하는 살충제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 직원, 환경의 안전과 건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 환경, 재산을 보호하면서 병충해 문제를 관리하는 가장 안전하고 위험이 가장 적은 방법이 LA 통합교육구의 목표입니다. LA 통합교육구의 IPM 방침은 적절한 해충관리법으로 비화학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LA 통합교육구는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예방 원칙은 LA 통합교육구의 장기적 목표입니다. 이 원칙은 살충제는 인간의 건강에 무해하지 않고 아무 위협이 없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간의 건강에 해롭다고 정부나 대중이 증명하게 하기보다는 생산자들이 위에 나온 위협이 없는 살충제라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방침으로 예방수칙을 완벽히 따르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수십 년 동안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LA 통합교육구는 검증 가능한 과학적 자료가 확보되면 곧바로 전부 이행할 것입니다.

학교 안전 통합계획안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교육구는 학교 안전계획안의 준비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교육법 32281- 32289.5 a)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LA 통합교육구 학교 안전 통합계획안(ISSP) 이 요건에 부합하며 폭력예방, 비상사태 대비, 교통안전, 위기중재, 건강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년 계획안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학교안전기획위원회 위원이나 교장에게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의 학교안전 통합계획안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학교안전 통합계획서의 사본은 학교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직원들은 로그인하여 학교 계획안을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접속

LA 통합교육구는 교육구의 컴퓨터 네트워크(LAUSDnet)를 통해 인터넷과 전자 이메일(이메일)을 제공합니다. 교육구의 웹사이트는 <https://www.lausd.net> 입니다. LA 통합교육구 컴퓨터와 네트워크 사용은 LA통합교육구의 책임사용 방침(RUP)으로 규정하며, 이 방침은 LA 통합교육구 웹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ru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SDnet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LA 통합교육구 이메일 계정을 포함한 교육구 네트워크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권리가 아닌 특권입니다.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특권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LAUSDnet에 접속하는 것은 학생증 번호가 있는 현재 등록된 학생, LA 통합교육구 직원과 교육구의 계약자들에게 무료입니다. 인터넷과 LA 통합교육구 네트워크의 접속을 제공하여 정규 교육행사, 사업 활동, 교육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학생들은 등록된 학교에서 LAUSDnet의 이메일 계정을 받습니다. LA 통합교육구 시설의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또는 LA 통합교육구 시설과 연결된 원격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학생 사용자는 **학생 서명과 보호자 해지서**가 학교 기록에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보안을 위해 글자와 숫자가 혼합된 어려운 비밀번호를 만들도록 권합니다. 학생들은 비밀번호를 보호해야 하며 항상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서 그 누구와도 비밀번호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LA 통합교육구는 연방 아동 인터넷 보호법(CIPA)을 준수합니다. 특히, CIPA는 교육구이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A) 외설적이거나, (B)아동 포르노물이 있거나 (C)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사이트. 차단 기술은 100%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학교나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아동을 제대로 감시하는 기술적 대책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학교들은 21세기 아동 보호법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가정에서 책임있고, 허용되며,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권합니다. 인터넷이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부적절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위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공유하지 않을 것을 잊지 않도록 주의받습니다. 학부모/보호자들은 자녀가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부모/보호자, 학생은 사전에 예방하여 스스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achieve.lausd.net/cybersafety> 를 참조하십시오.

학생이 음악, 사진, 비디오, 소프트웨어, 문서를 다운로드하면 해당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에는 적합한지 면밀히 감시해야 합니다. 음악, 사진, 비디오, 소프트웨어나 문서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LA 통합교육구 관련 용도로만 다운로드되어야 합니다. 특히 LA 통합교육구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RUP을 위반한 자료인 경우, 개인 다운로드 금지되며, 학생들은 승인되지 않은 불법 다운로드 활동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됩니다. LAUSDnet 사용자는 개인보호가 없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계정을 감사하고 로그인하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인터넷은 공공 네트워크로, 인터넷의 이메일이나 소통은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LAUSDnet 시스템 운영자는 시스템 서버에 저장된 모든 사용자의 계정 디렉토리, 데이터, 이메일, 웹 페이지, 파일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의 목표, 목적, 방침, 교육미션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받으려고 시도하면 안되며 시, 주, 연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학생들은 직접 만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예의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게 되거나 접속이 위태로워지는 행동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용자 이름이나 이메일을 삭제, 복사, 수정, 위조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위장하거나 다른 사용자(들)로 가장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용자는 인종, 종교, 신념, 피부색깔, 국적, 혈통, 신체적 장애, 성별, 성적 지향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비하하거나 폄하하기 위해 LAUSDnet에 접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과 이메일을 포함한 LA 통합교육구의 네트워크 및 전자 통신 기술에 대한 접속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메일이나 게시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의 표현은 저자의 개별적인 의견으로 해석하며 LA 통합교육구의 입장이 아닙니다. LA 통합교육구의 RUP을 위반하면 인터넷/이메일을 사용하는 특권이 박탈되고, 추가적인 징계/법적 조치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대항 경기 운동부

LA 통합교육구 학교대항 운동경기부는 고등학교 운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중학교 내 운동 프로그램도 관리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학업과 체육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스포츠 참여의 가치를 증진하며,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스패(span)학교와 단일캠퍼스인 매그넷학교 등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대항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학교간 경기 연맹과 LA 학교간 선수부가 결정한 자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가 자격을 얻으려면 학생은 최소 2.0점 이상의 학점을 유지하고, 현재 LA 통합교육구 방침을 준수하는 캘리포니아주 공인 의료인에 의해 매년 종합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학생 비상서류과 더불어 캘리포니아 교육법이 규정한 표준에 부합하는 보험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선수는 스테로이드 금지 사용서, 행동 수칙서, 신고식, 괴롭힘 양식, 비수기 책임 면제서, 운동 보험증, 뇌진탕 정보서, 갑작스러운 심장정지 정보서, 미디어

양도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은 인정서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양식은 LA 통합교육구의 학교대항 운동경기 웹사이트에서 <https://achieve.lausd.net/athletics> 찾아보십시오. 평균학점이 3.0 이상이고 학교대항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고등학생들은 매 시즌 말 LA 통합교육구 모범 선수로 인정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학교대항 연맹 시합이나 치어리더에 참가하는 학생은 입단 테스트와 연습 등 시합에 참가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면허가 있는 유자격 의료인에게 매년 사전참가 신체 평가(PPE)를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면허가 있는 의사(MD 또는 DO), 임상간호사(NP), 보조의사(PA)로부터 PPE's를 받은 것을 교육구가 허용합니다. 선발된 보조선수단, 행진악단은 입단 테스트, 연습, 참여하기 전에 적어도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 선수가 뇌진탕이나 머리 부상을 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선수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의 감독 하에 칠(7)일 이상 누진 경기복귀 약정을 마쳐야 합니다. 뇌진탕 치료와 의술의 범위에서 치료하는 훈련을 받은 캘리포니아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뇌진탕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진료합니다. 운동선수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허가서와 학교 간호사가 검증하지 않으면 경기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보호받는 특징으로 인해 학생을 학교대항 운동경기, 교내 운동경기, 클럽 운동경기에서 차별하거나 공평한 기회를 거절하거나 혜택을 거절당하지 못합니다.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은 <https://achieve.lausd.net/Page/3586> 찾아보십시오.

학교 대항 운동선수 프로그램과 중학교 교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대항 운동선수부 (213) 241-5847번으로 문의하십시오.

모바일 앱

이제 학부모/보호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녀의 성적, 과제, 출석, 학교 행사, 교육구 달력, 버스 노선/지연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앱은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정될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에서 찾을 수 있으며, "LAUSD"로 지정되었습니다.

LAUSD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LA 통합교육구 학부모 포털에 연결 - 학부모가 중요한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주립시험결과, 학생 규율, 영어학습자의 성적, 교통, 버스 노선을 보게 됩니다;
- 가족 협회 - 가족에 연결된 모든 학생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자녀의 일상생활을 모바일 화면을 손으로 끌어 넘겨서 볼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학기/3개월의 성적 - 공식적인 성적이 게시되는 즉시 확인하십시오;
- 학생 과제 - 학습관리시스템에 게시된 숙제 제출일, 퀴즈 날짜, 수업 과제내용을 보세요;
- 학생 출석 - 학생이 수업에 빠지거나 지각하는 경우 바로 알게 됩니다;
- 학교 행사와 과제 제출일 달력 - 컴퓨터 시스템에서 학교 차원의 달력이 나오고, 가정에서 중요한 행사를 알아보게 됩니다;
- 통지 - 일정 변경, 픽업 장소, 버스경로, 긴급 상황 등 중요한 통지를 받아봅니다;
- 학교에 쉽게 연락하기 - 정보를 찾을 필요 없이 앱에서 직접 학교로 전화하십시오;
- 유용한 자료에 바로가는 링크 - 서비스 디렉토리를 찾아보고 검색하세요 (예: 등록 장소,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부서);
- 학부모 사용자 등록하고 자녀를 추가하세요 - 학부모/보호자는 웹 브라우저없이 앱으로 계정을 등록합니다. 현재 이 기능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개인식별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비밀번호 재설정 - 전화기에서 쉽게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LAUSD 모바일 앱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지원을 얻으려면 <https://achieve.lausd.net/mobile> 을 찾아보십시오.

언론사 이용과 홍보

때때로, 기자들과 다른 언론사의 직원들은 스포츠 행사, 학교 집회, 특별 프로그램, 뉴스거리인 행사 등으로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합니다. 학생의 사진을 찍으려면 학부모/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본 핸드북과 함께 집으로 보내진 허가 및 양도 양식에 서명하여 교육구에 대한 허가를 합니다. 홍보 허가서와 해지서는 학교나 교육구가 [lausd.net](https://achieve.lausd.net), 페이스북, 트위터,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에서 공유하고 싶은 좋은 소식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가 인터뷰, 비디오 촬영, 사진을 찍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보호자는 양식에 서명하지 말아야 하며 제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서명된 양식이 있더라도,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말하면 인터뷰나 사진을 찍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 허가서와 해지서는 학생이 학교에 있을 때만 됩니다. 이들이 학교 운동장을 떠나 보도 등 공공장소에 있으면 기자와 사진작가는 질문을 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대비해 자녀들이 부모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차별금지서

LA 통합교육구는 차별, 희롱, 협박, 폭언,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근무환경과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실제 또는 인지된 다음의 특성에 근거한 차별, 희롱, 협박,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인종이나 민족, 성별/성(성 정체성, 성별 표현, 임신, 출산, 모유수유/수유 상황, 관련 건강상태 포함), 성적 지향, 종교, 피부색깔, 국적(언어 사용 제한 및 차량 법규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 소지), 혈통, 이민 신분 상태, 심신 장애(임상 우울증, 조울증, HIV/AIDS, 간염, 간질, 발작 장애,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심장 질환 포함), 의료 상태(암 관련 및 유전적 질환), 군인,

참전용사 신분, 부모, 가족 또는 혼인 여부, 등록된 국내 파트너 신분, 나이(40세 이상), 일반적 정보, 정치적 신념 또는 소속(조합과 관련이 없는 경우), 하나 이상의 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특성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와 관계, 또는 연방, 주, 지방 법, 조례, 규정으로 보호되거나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보호되는 기타 근거.

차별은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특권에 개인이 참여하거나 이익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며 정당한 비차별적 사유 없이 교육 프로그램, 업무, 또는 활동에서 보호되는 특징으로 인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불리한 고용결정을 포함합니다.

적대적 환경의 괴롭힘은 보호받는 특징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행동의 대상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이는 대상자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고 보호받는 특징이 있는 합리적인 사람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괴롭힘을 말하며, 교육구가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기회로 이익을 얻거나 참여하거나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개인의 능력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상당히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경우입니다. 괴롭히는 행위는 언어적 발언과 욕설, 그래픽/서면 진술 또는 위협적이거나 굴욕적인 행동을 포함하지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호되는 범주로 인한 괴롭힘은 불법적인 차별의 한 형태로서 교육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적이거나 인지된 보호받는 특징으로 인한 차별, 희롱, 협박, 학대 행위, 괴롭히는 행동을 목격하는 경우, 학교 직원은 안전할 때 즉시 개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교/오피스가 직원, 학생, 제3자가 저지른 행동을 빨리 통보받거나 행동을 알게 된 이유가 있으면, 일어난 일을 조사하거나 알아내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행동을 끝내고, 만일 적대적인 환경이 생겼으면, 적대적인 환경을 없애는 합리적으로 추정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해서,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개인이 불만신고하거나 학교/사무실에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러한 조치는 취해져야 합니다. 불만신고인은 보복에서 보호받습니다. 교육구는 불만신고하거나 항소한 사람은 보복에서 보호받으며, 불이행, 차별, 희롱, 협박과/또는 괴롭히는 사례를 신고하거나, 또는 불만신고나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보복을 금지합니다.

이 차별금지 방침은 LA 통합교육구의 교육감이 관할하는 모든 학교/사무실에서 학교 활동이나 학교 출석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적용됩니다.

다른 형태의 불법적 차별이나 괴롭힘, 부적절한 행위와/또는 증오 사건/범죄를 금지하는 추가 정보는 다른 교육구 방침에서 찾을 수 있으며 모든 학교와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 모든 방침을 일관성있게 검토하여 교육서비스와 기회 조향으로 불법적 차별에서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교육구의 취지입니다. 교육구는 불만신고를 하거나 항소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며, 불이행, 차별, 희롱, 협박과/또는 괴롭히는 사례를 신고하거나, 또는 불만신고나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보복을 금지합니다.

위에 나온 실제적이거나 인지된 특성에 따라 학생의 차별, 희롱, 위협, 괴롭힘과 관련된 정보, 지원, 불만신고는(일관된 불만처리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학교 행정관, 학교 타이틀 IX/괴롭힘 불만신고 관리자, 또는 교육구의 504항과 교육 형평성 준법 관리부서에 있는 타이틀 IX 담당자에게 (213) 241-7682 또는 <https://achieve.lausd.net/eecoc> 를 통해 연락하십시오. 직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213) 241-7685으로 동등한 기회 섹션에 문의하십시오.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른 통지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 II장의 요건에 따라 LA 통합교육구는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유자격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LA 통합교육구는 일반적으로 요청이 있을 시에 유자격 장애인이 교육구의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적합한 보조기와 서비스를 요청하면 제공하고, 예를 들면 유자격 수화 통역가, 점자로 된 문서, 언어, 청각, 시각 장애인이 정보와 통신을 이용하는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방침의 수정과 절차: LA 통합교육구는 장애인들이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방침과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수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라도 서비스 동물이 있는 사람은 LA 통합교육구 사무실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적인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LA 통합교육구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정책이나 절차의 수정이 필요한 사람은, 가능한 빨리 예정된 일정 48시간 전에 지역 교육구 사무실이나 주최 교장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지역화 되지 않은 이벤트의 경우, 접근성 수정에 대한 문의는 ADA 준수 관리자에게 ADA-Info@LAUSD.net 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ADA는 LA 통합교육구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를 하거나 재정적으로 지나친 부담과 행정적 부담이 생기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LA 통합교육구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만신고는 ADA 준법 행정관에게 이메일 ADA-Info@LAUSD.net 또는 전화번호 (213) 241-4628로 문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achieve.lausd.net/ADA> 에서 찾아보십시오.

LA 통합교육구는 대중에게 개방되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항목들을 개선하는 등의 보조시설/서비스 또는 방침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정 장애인이나 장애인 그룹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교육적 권리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 권리(FERPA)의 통지

가족교육권리와 사생활보호법(FERPA)과 교육법 49060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학부모와 학생("유자격 학생")은 학생의 교육기록에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가 사용 요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오(5)영업일까지 학생의 교육기록을 점검하고 검토할 권리
2. 학부모/보호자나 유자격 학생은 검토할 기록을 알아보는 요청서를 학교장(또는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사용할 수 있게 일정을 정하고,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학부모/보호자, 유자격 학생에게 통지합니다. 학부모/보호자, 유자격 학생이 정확하지 않고, 허위이며, 학생의 사생활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의 교육기록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권리.
 - 학교에 기록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은 학교장(또는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바꾸려는 부분을 분명히 파악하고, 바꾸려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보호자나 유자격 학생의 요청한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학교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학교의 결정과 항소할 권리를 통보하게 됩니다.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은 항소절차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핸드북에서 "학생기록 내용에 이의제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3. 학교가 학생의 교육기록에서 개인식별정보(PII)를 공개하기 전에 동의서를 제출할 권리, 예외는 FERPA/주정부법에 의해 동의없이 공개하는 경우입니다.
 - 동의없이 공개하는 예외적 상황은 합법적인 교육적 이해관계를 가진 학교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학교공무원은 학교에서 행정관, 관리자, 교사, 보조교사로 고용된 사람(보건의료 또는 의료직인과 경찰서 경관) 또는 학교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학교직원을 했을만한 시설의 서비스와 기능적 업무를 하며 교육기록부 PII의 사용과 보관업무에 관해 학교의 직접적 감독을 받는 외부 자원봉사자와 계약자인 변호사, 회계감사인, 의료인, 치료사가 있고, 징계나 고충 위원회 등 공식 위원회에 자원봉사하는 학부모/보호자나 학생이 있으며, 학교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도와주는 학부모/교사, 학생,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학교직원은 직업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육기록을 검토해야하면 학교직원에게 정당한 교육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4. 학교나 교육구가 FERPA 조항을 불이행한 혐의를 연방 교육부에 기소할 수 있는 권리. FERPA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이름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

FERPA 규정의 §99.31에서 나온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개인 경우, 학부모/보호자, 유자격 학생의 동의없이 FERPA는 학생의 교육기록에서 개인식별정보(PII)를 공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FERPA §99.32 조항에 의해 학교 관계자에 대한 공개, 법원 명령이나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 공개, 디렉토리 정보의 공개, 학부모/보호자, 유자격 학생의 공개 등을 제외한 공개를 학교가 기록합니다. 학부모/보호자와 유자격 학생은 공개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정부법과 연방정부법에 따라 학교는 신청자가 정당한 교육목적이 있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학부모/보호자, 학생의 사진 동의없이 학생의 교육기록부에서 PII를 공개합니다:

- 학교가 정당한 교육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교육기관이나 기관의 학교 관계자, 교사를 포함합니다. §99.31조 (a)(1)(i)(B)(1) - (a)(1)(i)(B)(2)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학교의 시설 서비스나 기능을 외주한 계약자, 상담자, 자원봉사자, 관계자를 포함합니다. [§99.31(a)(1)]
- 학생이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학교, 학교 시스템 또는 중등 이후 교육 기관의 관계자, 또는 공개가 §99.34항에 의해 학생의 등록 또는 전학하는 경우 [§99.31 (a)(2)항] 교육법 49068항]
- 연방 회계감사관, 연방 법무부 장관, 연방 교육부 장관, 주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예: 캘리포니아 교육부와 같은 학부모/보호자 또는 해당 학생이 사는 주의 교육청)의 공인된 대표자. 이 조항에 따른 공개는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회계감사나 평가와 관련하여, §99.35항의 요건에 따르며, 또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방 법률 요건의 시행이나 준수를 위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회계감사, 평가, 집행, 준법 활동을 대신 수행하는 공인 대리인인 외부기업에 PII를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 [§99.31(a)(3)항과 제99.35항]
- 학생이 신청했거나 받은 재정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금액과 보조금의 조건을 결정하거나, 또는 보조금의 약관을 이행하는 경우[§99.31(a)(4)]
- §99.38항에 의거하여 기록이 공개된 학생이 판결받기 전까지 형사법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 형사법에 관한 주정부 법으로 정보를 보고하거나 공개받는 주와 지방 공무원이나 정부당국 [§99.31(a)(5)]
- (a) 예상시험을 개발, 검증, 관리하거나, (b) 학생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c)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를 대신하여 연구하는 단체 [§99.31(a)(6)]
- 인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증기관 [§99.31(a)(7)]
- 학생이 IRS 세금 목적의 부양가족인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보호자 [§99.31(a)(8)]
- 16세 이상의 학생 또는 10학년을 마친 학생.
- 14세 이상의 동행자가 없는 노숙자 청소년.
- 학생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위급상황과 관련된 적절한 자. 이 섹션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학교 또는 교육구는 연방규제법 제34장 99.32(a)(5)항에 규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인증을 위한 인증 협회.
- 학생이 재정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받는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단, 본인이나 부모의 신원확인을 허용하는 정보는 재정보조금을 받을 학생의 자격, 재정보조금 결정, 재정보조금에 대한 조건을 결정하거나, 또는 재정보조금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법원 명령이나 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 준수 [§99.31(a)(9)]
- §99.36에 의거하여, 건강 또는 안전 비상사태와 관련된 해당 공무원 [§99.31(a)(10)]
- 학부모/보호자/유자격 학생이 공개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 학교가 §99.37 [99.31(a)(11)]에 따라 "디렉토리 정보"로 지정한 정보.

일반적으로 공개될 경우 해롭지 않고 사생활 침해로 여기지 않는 디렉토리 정보는 부모의 사전 동의없이 외부 기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 정보의 주요 목적은 학교나 교육구가 자녀의 교육 기록 정보를 학교 출판물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극 제작에서 학생의 역할을 보여주는 연극 안내지;
- 연례 졸업앨범;
- 우등생 명단이나 다른 상장 명단;
- 졸업 프로그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나 LA 통합교육구가 출판물에 디렉토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학부모/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 문서로 통지하십시오.

외부 단체에는 졸업반지를 제조하거나 졸업앨범을 발행하는 회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두(2)가지 연방법에 의해 1965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법 수정안(ESEA)으로 지원받는 교육구는 요청하는 군대 모집자에게 중고등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명단을 주어야 하며, 예외는 학부모/보호자가 사전 동의 없이 교육구가 학생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알리는 경우입니다.

학생과 관련된 디렉토리 정보의 항목을 허가인에게 공개하며, 예외는 학교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 나온 정보를 주지 않는 요청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출석일 (예, 학년 또는 학기);
- 현재 다니고 가장 최근에 다닌 학교(들);
- 학위, 우등생, 수상한 상장.

교육구에서 디렉토리 정보를 수신하도록 지정한 제3자 수신인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사전 학부모/보호자 동의서가 없이 자녀의 교육 기록에서 아래에 디렉토리 정보의 일부분이나 전부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핸드북의 정보 공개 양식을 사용하여 학교에 통지하십시오. 또한,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49073항에 따라, 학부모/보호자 또는 자격이 되는 학생은 맥키니-벤토(Mckinney-Vento) 노숙인 교육지원법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의 디렉토리 정보를 공개하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서가 없으면 학생 디렉토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교육법 69432.9항에 따라, 학생이 자퇴하지 않는 한, 모든 12학년 학생들은 캘그랜트(Cal Grant) 지원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교육법 49076(a)(2)(B)항에 따라 재정지원 자격성을 위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옵트아웃을(참여하지 않음) 하지 않은 12학년 학생의 경우, 교육구는 칼 그랜트 자격을 결정하고 대학교 보조금에 대한 결정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학생 지원 위원회(CSACs)에 평균학점(GPAs), 이름, 졸업 날짜, 학교 코드, 학생증 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검증한 학점이 없으면 CSAC는 캘그랜트 자격을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18세 이상의 시니어 학생이나 18세 미만의 시니어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자동으로 캘그랜트 지원자가 되기를 거절해도 됩니다. 학부모/보호자, 성인 학생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마감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권리보호 수정법안 (PPRA)

학생의 권리보호 수정법안(PPRA)은 설문조사 실시, 수집,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 사용, 특정 신체검사에 대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지만 국한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 만일 미교육부(ED) 프로그램으로 설문조사의 전체나 일부분을 지원받으면 다음과 같은 보호받는 영역 중 한가지 이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제출하려면 학생 앞에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받는 정보 설문조사”)
 1. 학생이나 학부모의 정치적 소속이나 신념;
 2. 학생이나 학생 가족의 정신적 문제;
 3. 성행위나 성적 태도;
 4. 불법, 반사회적, 자신을 유죄로 만들거나 비하하는 행동;
 5. 응답인이 가족과 가까운 관계인 다른 사람의 중요한 평가;
 6. 변호사, 의사, 목사 등 법적으로 인정받은 특별한 관계;
 7. 학생이나 학부모의 종교, 소속이나 신념;
 8. 프로그램 자격을 판정하기 위해 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수입.
- 통지서를 받고 학생을 참가하지 않게 하는 것 –
 1. 자금지원에 관계없이 보호받는 정보 설문지;
 2. 비상상태가 아닌 경우, 학생의 직접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지만, 출석의 조건으로 필요해서 학교나 대리인이 실시한 외과적 신체검사, 예외는 주법으로 규정된 청력, 시력, 척추측만증 검사, 신체검사
 3. 마케팅, 판매,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공개, 사용과 관련된 활동. (이것은 학생이나 교육기관의 교육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평가,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학생들에게서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공개, 사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요청하고 이행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기 -
 1. 학생이 보호받는 정보 설문지와 제 3자가 만든 설문지;
 2. 위에 나온 마케팅, 판매, 또는 배포하는 목적으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사용한 도구;
 3. 교육 커리큘럼으로 사용한 교육용 자료.

이 권리는 학부모/보호자로부터 18세 학생이나 주정부법에 의한 해방된 미성년자에게 양도합니다.

교육구는 보호받는 정보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마케팅, 판매, 배포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공개, 사용과 관련된 권리를 학부모와 상의하여 방침을 채택했습니다. 매년 학년초에 통보하며 교육구에 큰 변화가 있으면 학부모/보호자와 이 방침을 직접 통보하게 됩니다. 교육구는 구체적인 활동이나 아래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미국우편이나 이메일로 직접 통보하게 되며 구체적인 활동이나 설문조사에 자녀가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일 교육구가 구체적인 활동이나 설문조사를 하는 구체적인이거나 비슷한 날짜가 있는 경우, 학년초에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학년도가 시작하고 실시한 설문조사와 활동은, 학부모/보호자가 아래 나온 계획된 활동과 설문조사를 합리적으로 통보받게 되며 활동과 설문조사에서 자녀가 참여하지 않는 기회가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관련된 설문조사를 검토할 기회를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직접 통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과 설문조사 목록입니다:

- 마케팅, 판매, 배포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공개, 사용;
- 설문조사의 전체나 일부분을 미교육부(ED)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보호받는 정보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외과적 신체검사, 또는 위에서 설명한 검사.

학부모님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여기면 불만신고를 이곳에 제기하십시오:

Student Privacy Policy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

보건 교육 및 캘리포니아 청소년 건강법 규정 준수에 관한 통지 (포괄적 성교육과 HIV 예방 교육)

성장, 개발, 성건강은 5,7,9학년에 가르칩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는 교과목 준법을 위해 채택된 캘리포니아 보건기준 K-12를 사용하고 내용을 준수합니다. 초등학교는 캘리포니아 건강한 청소년법(CHYA)의 캘리포니아 교육법(CEC) 51930-51931항의 시행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5학년 프로그램 옵션은 수업국, 보건교육 프로그램에서 승인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캘리포니아 건강한 청소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7-12학년에 포괄적인 성교육과 에이즈(HIV)예방교육을 해야 합니다.(CEC 51930-51939) 교육법 51930항에 따라 차터스쿨을 포함한 학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학생들에게 HIV와 성병 감염과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부터 성건강과 생식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
2.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신체 이미지, 성별, 성적 지향, 관계, 결혼, 가족에 관한 건전한 태도를 함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3. 인간발달의 정상적인 부분으로서 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합니다;
4. 학생이 통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하고 편견이 없는 성교육과 HIV 예방 교육을 받게하고 교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도구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5. 학생들에게 건전하고, 긍정적이며, 안전한 관계, 행동하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의가 해당됩니다. (교육법 51931항):

1. **적합한 연령:** 연령이나 연령대에 전형적인 인지능력, 정서능력, 행동능력 발달에 기초하여 특정 연령이나 아동/청소년 그룹에 적합한 주제, 메시지, 수업방법을 말한다;
2. **포괄적 성 건강교육:** 임신, 피임, 성감염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인간의 발달과 성감정에 관한 교육을 의미한다;
3. **영어학습자:** 306항(a)관에 규정된 학생을 의미한다;
4. **HIV 예방교육:**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에이즈(AIDS) 성격, 전염방법, HIV 감염 위험 감소 계획, HIV와 에이즈와 관련된 사회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교육을 의미한다;
5. **적절한 과정의 훈련된 강사:** 인간의 성, 건전한 관계, 임신, HIV 및 기타 성 전염 감염에 대한 가장 최근의 의학적으로 정확한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가진 강사를 의미한다;
6. **의학적 정확함:**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행되고, 동료 검토 저널에 게재되는 연구에 의해 검증되거나 지원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되는 경우 연방 질병관리예방센터, 미국 소아과 의사 협회, 산부인과 의사 협회, 부인과 의사 협회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조직에 의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7. **교육구:** 카운티 교육 위원회, 카운티 교육감, 캘리포니아 청각장애인 학교, 캘리포니아 시각장애인 학교 등이 포함된다.

해당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받은 강사에 의한 중학교(15~20시간)와 고등학교(25~30시간)에 1회 이상 성 건강 종합교육과 HIV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1. 교육구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임신, 가족계획, 성병에 관한 교육 등 인간의 발달과 성에 관한 교육인 포괄적인 성교육을 합니다.
2. 교육구에서는 인간의 성, 임신, 성병에 관한 가장 최근 정확한 의학연구에 전문지식을 가진 훈련된 LA 통합교육구 직원이나 외부 상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에 사용되는 수업과 자료는 배우는 학생들의 나이에 따른 지적, 정서적, 행동능력에 맞아야 합니다;
- 배우는 정보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된 연구로 검증되거나 지원받거나 과학자 동료의 심사를 받고, 보건 문제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연방 기관이나 전문 기관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교육과 자료는 220항에 의해 보호되는 범주에 기초하여 편견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 영어학습자(a)관, 306항에 설명됨) 학생을 위한 기존 학과정과 대안수업과 일치하여 동등한 기준으로 수업을 해야 합니다;
- 수업과 자료는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민족, 문화적 배경,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해야 합니다;
- 수정된 학업과정, 자료, 교육 형식, 보조교사, 기타 방법으로 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수업과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수업과 자료는 사람들이 다른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연인사이와 부부관계를 예를 들 때 동성애자에 대해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 수업과 자료는 성별, 성별 표현, 성별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고 부정적인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피해를 분석해야 합니다;
- 수업과 자료는 학생이 부모, 보호자, 믿는 어른과 인간의 성에 대해 대화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야 합니다;
- 수업과 자료는 학생들이 결혼 등 서로 헌신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가치를 가르쳐야 하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 수업과 자료는 학생들에게 상호 존중과 애정을 바탕으로 하며 폭력, 강요, 협박이 없는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야 합니다;
- 수업과 자료는 학생들에게 또래 집단의 압박감을 극복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효과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협상능력과 거부하는 방법 등 성에 관한 건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야 합니다;
- 수업과 자료를 가지고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거나 홍보하면 안 됩니다.

과목을 가르치는 훈련받은 강사가 중학교(15-20시간)와 고등학교(25-30시간)에 최소 1회 이상 필요한 포괄적 성교육과 HIV 예방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중고등학교에 최소 1회 이상 포괄적인 성 건강교육과 HIV 예방교육을 해야 하며, 이는 임신, 가족계획, 성병 등 인간의 발달과 성에 관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중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은 (자격증 소지의 복지과학 교사 1명) 7학년과 9학년 때 단일과목 자격증을 소유한 건강과학 교사가 가르치는 한 학기에 90시간인 건강수업을 이수합니다. 보건교육수업에서 포괄적인 성 건강과 HIV 예방이 포함됩니다.

1. 이 수업에는 다음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에이즈(HIV)의 특성과 기타 성병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가르쳐야 합니다;
- 성행위와 주사약 투여 등 특정 행동에 따른 감염의 상대적 위험 등 HIV와 성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 성행위 자제와 주사약이 HIV와 성병 감염을 예방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며 성교 자체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교육은 지연된 성행위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HIV와 성병, 임신을 예방하는 방법을 의료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HIV와 성병에 걸릴 위험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방법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가르쳐야 하며, 여기에는 PrEP 및 HIV 예방접종 등 연방 질병관리본부와 일관되는 항 레트로 바이러스 약물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 주사바늘을 사용하고 공유하는 것을 줄여서 HIV 전염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 HIV 환자의 생명을 극적으로 연장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HIV를 전염시킬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항 레트로 바이러스 요법과 HIV와 성병 감염의 치료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 HIV와 에이즈에 관한 근거 없는 고정관념과 근거 없는 믿음을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HIV와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견해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성공적으로 치료된 HIV 양성환자는 정상 수명이 있고, 누구나 HIV에 걸릴 위험이 있으며, HIV 양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사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 7학년부터, 수업과 자료에서 지역적 자료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HIV와 성병 검사/치료, 임신 예방과 관리 등 성병과 생식건강에 관한 지역정보와, 성폭행,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도와주는 지역적 자료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긴급피임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FDA가 승인한 임신을 예방하는 피임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신 수업은 육아, 입양, 낙태 등 합법적인 임신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의논을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습니다;
- 건강 및 안전법 제1255.7항과 형법 271.5항에 따라 72시간보다 어린 미성년자의 신체적 보호권을 포기하는 법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태아건강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인신매매, 건전한 경계를 두는 정보와 안전하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 초기에 경고신호 등 청소년의 연인관계 이용과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합니다.

2. 7학년 전에 포괄적인 성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구는 바로 위에 있는 1번부터 13번까지 나온 일반적 주제로 나이에 알맞고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가르쳐야 하며, 7학년 전에 시작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 교육과 자료에서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거나 홍보하면 안 됩니다;
- 교육과 자료는 성별, 인종그룹 식별, 인종, 국적, 종교, 피부색, 심신 장애, 혈통, 성,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기초하여 사람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의 실무 교육:

1. 교육구는 지역계획, 공동권한계약, 계약업무 등으로 HIV 예방교육을 하는 교육구 직원을 위한 실무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합니다.
2. 실무교육을 계획하고 제공하면서, 교육구는 HIV 예방교육을 교육청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교육구의 교사와 협력합니다.
3. 교육구에서는 정기적으로 HIV 예방 교육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HIV의 새로운 과학적 발전을 담당자가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무교육은 주 교육부나 연방 질병관리예방센터에서 실무교육을 받거나 전문지식을 증명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받습니다.

4. 교육구는 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전을 배우기 위해 포괄적인 성교육의 주제로 HIV 실무 교육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외부 상담자의 검토와 승인: 교육구는 다국어 학습과정의 개발자,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성교육과 HIV 예방교육을 하는 교육과정의 개발자, 교육구 직원을 교육하는 교육과정의 개발자 등 외부 상담자와 계약합니다. 외부 상담자와 초청 연사는 포괄적 성교육과 HIV 예방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해당 방침에 관한 주제나 주제에 대한 의학적으로 정확한 최신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담자와 초청 연사는 교육구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수업부서의 HIV/AIDS 예방 사업부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지 및 학부모의 양해: 학교는 학부모/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인간의 성별과 HIV에 대해 대화하고 이러한 주제에 대한 자녀들의 교육을 감독하는 학부모/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학교는 포괄적인 성 건강교육과 HIV 예방교육에 관련된 자료와 평가방법을 학부모와 보호자가 쉽게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학부모/보호자가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포괄적인 성 교육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학부모와 보호자는 자녀가 인간의 성에 가치관을 심는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 검토를 요청하려면 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자녀가 포괄적 건강교육이나 HIV 예방교육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법 51938항에 따라,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다음과 같이 포괄적인 성 건강 교육, HIV 예방 교육, 해당 교육과 관련된 평가에 전체적이나 일부분을 자녀가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성 건강 교육과 HIV 예방 교육과 수업에서 사용하는 학생 건강 행동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적 성 건강 교육 및 HIV 예방 교육에 사용되는 서면 및 시청각 교육 자료는 점검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구 직원이나 외부 상담자가 포괄적인 성 건강교육 및 HIV 예방교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외부 상담자에 의해 교육을 받는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학교가 교실이나 조레에서 교육을 한다고 알려드립니다. 둘 중 한 가지 경우에, 학교는 (1) 수업일, (2) 초청 연사나 연사의 조직이나 소속회사 이름, (3)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법률문서 복사본을 요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교육법 51933항과 51934항) 외부 상담자나 초청 연사의 수업을 개학하고 하게 되면, 수업하기 14일 전까지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해야하며 우편이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외부자문위원 또는 초청연사를 채용하는 것은 교육구의 재량입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법률문서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자녀가 포괄적인 성 건강 교육이나 HIV 예방 교육을 받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학교는 또한 교육법 제51513항에 따라 학부모/보호자가 시험, 질문지, 설문조사, 검사의 시행을 통지받고, 학생의 참여를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성, 가정생활, 도덕, 종교에 관한 학생의 개인적 신념이나 실천에 관한 질문이나 학생 부모/보호자의 성, 가정생활, 도덕, 종교에 관한 어떠한 질문도 K-12학년제에 있는 학생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학교는 성에 관한 학생의 태도나 행동에 관한 연령에 적합한 질문을 포함하는 시험, 설문지, 조사로 학생들의 건강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K-12학년 학생들에게 익명, 자발적, 비밀 연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 51513항에 따라 학부모/보호자에게 학교체협조사의 실시를 통보하고 학부모/보호자는 자료를 검토하고 자녀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편지를 보내도 됩니다. 학교 체협 조사는 LA 통합교육구가 사용하는 익명, 자발적, 비밀 연구, 평가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핸드북에서 학교 체협 조사 섹션을 보거나 <https://achieve.lausd.net/Page/8397> 을 참조하십시오.

학부모/보호자가 학생 참여 면제서를 요청한 경우, 학생은 포괄적 성 교육, 또는 HIV 예방교육에 참여하거나 익명의, 자발적,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시험, 설문지 또는 학생 건강 행동과 위험에 대한 조사에도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포괄적인 성 건강 교육 또는 HIV 예방 교육 또는 익명의, 자발적 기밀 시험, 설문지 또는 학생 건강 행동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학부모/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 학생이 징계, 학업 처벌, 기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성교육, HIV 예방교육 또는 학생의 건강 행동과 위험에 대한 익명의 질문지, 자발적 질문지, 비밀보장하는 검사, 질문지나 설문 조사를 하면서, 학부모/보호자가 교육, 검사, 질문지,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면 학생들에게 대체 교육 활동을 마련해야 합니다.

간호사-가족 파트너십

간호사-가족 파트너십은 임신/육아를 처음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자발적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신 기간 내내 자격증을 소유한 학교 간호사(정규 간호사)가 일대일로 가정방문하며, 아이가 두(2)살이 될 때까지 어린 부모를 계속 도와줍니다. 그 간호사는 임신/육아중인 십대들이 건강하게 임신하고 건강한 아기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십대의 건강한 육아와 교육 목표를 지도합니다. 첫 아이를 임신한 십대들은 임신 기간에 최대한 빨리 등록하도록 권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13) 202-7534으로 문의하십시오.

부모 및 지역사회 서비스 사무소 – 부모와 가족의 참여

주교육정책위원회 #89-01

효과적인 학교생활의 필수 교육영역은 학부모의 참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보호자가 자녀의 교육에 관여해야 결정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가 오르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할 때, 자녀들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학교가 더 성공적입니다.

중요한 사실:

- 학부모/가정은 기초 교육 환경입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참여하면 학생의 성취도가 향상됩니다;
- 학부모/보호자의 참여가 포괄적이고, 도와주고, 오래 지속되고, 잘 계획되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 학부모/보호자 참여의 이점은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속되는 모든 학교 교육에서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 학부모/보호자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돕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인 학교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에 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교육 참여도는 가족 소득이나 교육보다 학생의 성공에 더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 학교와 가정은 조력자이며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가정과 학교는 협력해야 합니다.

기회적 전학

기회적 전학 (OT)는 LA 통합교육구에서 학생의 행동을 개선하고 교정하기 위해 학교나 교육구가 신중하게 계획하고 시작합니다. 과거에 개입했지만 행동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거나 학생이 현재 학교에 계속 있으면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이 위협하기 때문에 학생의 행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시정수단입니다. 기회적 전학의 목적은 학업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따라서 모두가 안전하게 공부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학부모와 가족 참여 방침

LA 통합교육구는 학교와 학부모/보호자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을 때, 교육적 성공을 위한 아이들의 잠재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과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학부모* 결의안은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교육 참여에 관한 모든 학교 및 지역 관행을 안내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교육법은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학교가 학교 자체 위원회(SSC)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SC 구성원으로서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범주형 기금을 사용하고 자녀 교육에 학부모/보호자를 참여시키는 학교 계획에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이 성공한다 연방법(ESSA)은 모든 학교에 학부모/보호자와 가정이 함께 학부모/가족 참여 정책을 개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ESSA에 따라 교육구는 타이틀 1 학부모/가족 참여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부모 참여 방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https://achieve.lausd.net/Page/9651> 에서 타이틀 1 학교를 위한 LA 통합교육구의 학부모/가족 참여 정책을 찾아보십시오. 또한 재분류된 영어 능숙자(RFEP) 학생을 제외하고, 영어 학습자(EL) 학생이 최소한 21명이 있는 학교는 영어습득 자문위원회(ELAC)를 구성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교육구 전역에서 ELAC 위원장으로 구성된 교육구 영어학습자 자문위원회(DEELAC)를 설립해야 합니다. 직원과 가정을 위한 지침서, 게시물, 각서는 이곳을 보십시오. <https://achieve.lausd.net/pccs>.

매년 학교체험 설문조사를 통해 LA 통합교육구에 학부모/보호자는 학교가 파트너로서 환영해주는 것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학부모의 관점을 알려줍니다. 학교체험 조사는 가을에 시행될 것입니다. 내용이 이곳에 있습니다. <https://achieve.lausd.net/Page/8397>.

SSC와 의사결정에 관련된 학교 문서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서, LA 카운티 교육청(LACOE)은 학교가 계획을 공유하고 학교 자금 지원 정보를 학교 커뮤니티의 학부모/보호자와 가족과 공유하고 더 큰 지역사회 참여를 권장합니다. 바라는 것은 학부모와 보호자, 지역사회가 학교의 목표와 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학교 목표, 계획, 자금 지원, 서비스, 추가 정보를 알아보려면 <https://schooldirectory.lausd.net/schooldirectory/> 에서 찾아보십시오. 학교를 검색하고 예산 개발 보고서를 클릭하십시오.

모든 LA 통합 학교는 학부모와 가족 센터를 운영하거나 학부모 지원 서비스와 교육이 이루어질 장소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학부모 참여를 위한 학교의 목표는 효과적인 부모 참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광범위한 역할과 활동에서 모든 학년 수준의 학부모/보호자를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학교 노력을 안내합니다. 이 목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학부모/보호자가 동등한 파트너로 환영받도록 보장;
- 학부모/보호자의 학습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제공;
- 효과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운영;
- 학부모/보호자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 모든 학부모 참여 의무를 준수할 것.

학교의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은 학부모/보호자의 의견을 받아 학교 차원에서 개발됩니다. 학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의 가정학습을 지원하는 워크숍, 교육구 및 주 우선 순위 또는 이니셔티브에 관한 워크숍(예: 학부모 포털과 스칼라지, CA 대시보드, 학생 출석표)과 학부모/보호자 리더십과 자율권에 관한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와 학부모센터 직원은 학부모/지역사회서비스국(PCS)과 각 지역(LD)의 학부모와 커뮤니티 참여팀(PACE) 통해 지도와 지원을 받습니다. 영어습득자, 이주학생, 장애학생의 학부모/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학부모/보호자는 학교기반 활동 및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요청 시 학교는 장애인 또는 다른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부모/보호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지역 교육구 학부모와 커뮤니티 참여팀에 연락하려면 <https://achieve.lausd.net/ld> 를 찾아보세요. 교육구(LD) 학부모 커뮤니티 참여팀을 연락해서 스터디 그룹과 회의를 알아보십시오. 스터디 그룹과 회의에서 학부모/보호자는 지역 통제와 책임 계획(LCAP), 타이틀 1 학부모 커뮤니티 참여 방침, 영어학습자와 ELAC 를 지원하는 표준 영어학습자에 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모든 학부모/보호자는 자녀의 학교 기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LA교육구 학부모 포털에 등록해야 합니다. 학부모 포털에 접속하려면 학부모/보호자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학생을 연결시키기 위해 학부모/보호자는 4자리 안전핀 코드(PIN 코드는 학부모/법률 보호자와 학생에 한정됨), 학생의 LAUSD ID 그리고 학생의 생년월일이 필요합니다. 학부모 ID 확인은 대면으로 직접 하거나 PIN을 받기 전에 가상비디오앱으로 합니다. 학부모 포털은 다음 사이트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s://parentportalapp.lausd.net/parentaccess/> LA교육구 패밀리 핫라인에서 (213) 443-1300 에서 도와드립니다.

또한 특수교육부서는 장애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자녀의 교육과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무료 자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13) 241-6701 학교와 가정 지원서비스로 문의하십시오.

콘텐츠의 이용가능 프로그램에 관한 학부모/보호자 연례 통지서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로 인한 만성적,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HIV/AIDS)와 성병은 커뮤니티의 유행병입니다. 공중 보건 통계와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십대 젊은이들이 감염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구는 자체를 100% 효과적인 유일한 감염예방 방법으로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구는 모든 학생이 금욕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히 사용되는 콘돔이 HIV/AIDS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의료기관과 공중 보건국과 협력하여, 교육위원회는 1992년에 학생들을 위해 콘돔을 마련하는 방침을 제정했고, 예외는 학부모/보호자가 학교 간호사에게 사용을 거부하는 편지를 보낸 경우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부를 통한 교육구의 콘돔 이용가능 프로그램(CAP)은 콘돔을 요청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녀가 콘돔을 구하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보호자는 언제든지 자격증을 보유한 학교 간호사나 지정된 학교 사이트 CAP 직원에게 서면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콘돔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 교육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학부모 포털

학부모 포털은 자녀의 학업성공을 돕는 도구와 자료에 학부모/보호자가 안전하게 연결하는 웹스톱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 학부모 포털은 <https://parentportalapp.lausd.net/parentaccess/> 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passport.lausd.net> 을 참조하십시오.

등록하려면 다음 내용이 필요합니다:

- 개인 이메일 주소;
-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사용자가 선택);
- 학생의 네 자리 비밀번호(미국 우편으로 보내거나 학교에서 받는 PIN 코드);
- 학생의 생년월일;
- 학생의 교육구 ID 번호.

학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현재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출석/일정;
- 비상사태 연락처와 전화번호 업데이트하기;
- 성적과 과제;
- 영어학습자 성적 (EL 학생);
- 예방접종 기록;
- 학생 징계기록;
- 평준화된 시험기록;
- 개별 교육 프로그램 또는 “IEPs” (특수교육 학생);
- 연장된 학년도 (ESY) 지원서 (특수교육 학생);
- 학교 급식 신청서;
- 학교 자원봉사 신청서;
- 학교 초이스 신청서;
- 고등학교 졸업 조건과 진행 상황;
- 버스 노선과 지연(교통편이 있는 학생의 경우);
- 학교 달력;
- 학부모 자료;
- 성적표.

학부모/보호자가 학생의 학교캠퍼스에 있는 동안 학부모 포털 로그인으로 교육구의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권리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51101항에 의해 공립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의 부모/보호자가 자녀의 성공을 돕기 위해 학교와 상호 지지하고 존중하는 파트너십으로 협력할 권리, 학교의 규칙에 대해 사전에 미리 통보받을 권리, 학교를 방문하고 교실을 관찰하는 절차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BUL-6492.2에 규정된, 학교 수업시간에 학교 캠퍼스 방문자와 문이 잠긴 캠퍼스에서, 학부모/보호자는 기존 법원 명령과 상충되지 않는 한, 합리적인 기간동안, 자녀가 재학 중인 교실에서 참관을 요청하고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한을 정하고 관찰 기간 전에 가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것이 권고됩니다. 목적은 가족들이 환영받고 조력자로서 참관하는 것입니다.

LA 통합교육구 학부모 권리 및 책임 법안은 학생의 성공을 위해 가족과 학교의 조력자 역할하는 동등한 파트너 결의안의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학부모/보호자들이 자녀의 학업 성공을 옹호하는 권리와 책임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와 책임

자녀교육의 동등한 파트너인 학부모/보호자, 2010년 12월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가족의 장점과 자산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며 자녀에게 학부모/보호자는 일순위인 가장 중요한 평생교사로 인정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는 학생의 성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이 조력자가 됩니다:

- 학생 성취도에 대한 높은 기대치 유지;
- 모든 학생이 대학, 직업진로, 생활에 대한 준비를 갖추도록 보장;
- 생산적인 대화와 협력 촉진;
- 서로 존중하고 돕는 점을 보여줍니다.

학부모/보호자는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 자녀가 공부하게 하고 대학과 진로를 준비하는 무상 교육;
- 가족이 자산으로 공부에 도움을 주는 점을 소중히 여기는 환경;
- 학교의 기대, 교육 프로그램, 방침, 절차에 대한 정보;
- 자녀 학교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CA 학교 대시보드(Dashboard);
- 교사와 직원과 협력관계를 맺기 위한 자녀 교실을 방문하기;
-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최대로 지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자녀 과외와 학습 지원;
- 자녀를 위해 최상의 학교/프로그램 선택;
-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정식 고소;
- 학교 직원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번역/통역 서비스.

학부모/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읽고 쓰기, 높은 성취도, 학구욕을 일으킵니다;
- 자녀가 매일 학교에 제 시간에 출석하고 공부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도록 감독하고 지도합니다;
- 교사와 학교 직원과 자녀의 교육에 대해 상의합니다;
- 자녀의 교육에 대해 알고 지원하는 회의와 학습 활동에 참석합니다;
- 매년 실시하는 학교체험 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표시합니다;
- 학교가 필요한 자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녀 교육을 옹호합니다.

학교/사무실 자원봉사 프로그램

LA 통합교육구는 자원 봉사자들을 학생들의 성취도를 돕는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캘리포니아 교육법 51101(a)(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구 직원들이 감독하는 학교 프로그램과 시설을 개선하고 본인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어서 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LA 통합 학교/사무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부모/보호자와 학교 커뮤니티 일원들의 풍부한 재능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학교 및 사무실에 대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학교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사와 다른 직원들을 지원함으로써 학교를 도와줍니다. 학부모 및 커뮤니티서비스국에서 학교와 사무실 자원봉사자를 도와주고, 학교와 사무실 자원봉사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며,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실행에 대한 전문적인 개발을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와 사무실에 문의해서 가상 봉사와 캠퍼스 자원봉사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학부모/보호자는 <https://volunteerapp.lausd.net> 을 찾아보고 1단계와 2단계 온라인 자원봉사자 관리 신청서를 이용하십시오. 온라인 신청서에 도움이 필요한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학부모/보호자는 학부모 포털에서 온라인 자원봉사자 관리를 사용하십시오.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지역학교에 연락하거나 PCS 웹사이트를 찾아보십시오. <https://achieve.lausd.net/pcss>

2019년 1월부터 교육위원회는 3단계 자원봉사 시스템을 포함하는 BUL-6746.2를 승인했습니다. 각 계층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특정한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1단계 자원 봉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합니다: 일일행사와 필요할 때마다 안전 자원봉사자. 1단계 요건에는 작성된 서류 신청서, 서명된 자원봉사 약속 양식, 온라인 캘리포니아 메건의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허가, 관리자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2단계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합니다: 교실 자원봉사자, 방 학부모(Room Parent), 캠퍼스 자원봉사자, 사무실 자원봉사자, 학부모 및 가족센터 자원봉사자, 현장 견학/행사 자원봉사자. 2단계 요건에는 작성된 온라인 신청서, 서명된 자원봉사 약속 양식, 온라인 캘리포니아 메건의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승인, 결핵 승인, 관리자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3단계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범주가 포함됩니다: 가상과 대면으로 일대일 과외, 카페테리아 봉사자, 야간 현장학습 봉사자, 학생 활동 봉사자. 3단계 요건에는 작성된 온라인 신청서, 서명된 자원봉사 약속 양식, 온라인 캘리포니아 메건의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승인, 결핵 승인, DOJ/FBI 지문 승인, 관리자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자원 봉사자들은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직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교장은 활동과 관계없이 자원 봉사자 전원이거나 일부에게 지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변동사항은 이곳에서 찾아보십시오. <https://achieve.lausd.net/Page/10443>

허가 및 학생 전학

LA 통합교육구는 학생들과 가족들이 최고의 학교를 찾아보도록 허가증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인종차별 정책폐지 목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비용 요인을 참작하여 허가 방침의 모든 면에서 적용합니다. 지역 교육구에 있는 각 학교장과 지정관리자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허가를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신청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의 신청 절차에 관한 정보를 거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가 요청을 거부, 취소 또는 취소하는 학교 또는 교육구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줍니다. 허위 정보 또는 허가증을 받고 유지하는 조건이 바뀌게 되면 허가증이 즉시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증 절차 정보는 <http://studentpermits.lausd.net> 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학생 보건 복지 서비스, 학생부, (213) 241-3844으로 연락하십시오.

교육구에서 교육구로 전학하는 허가

허가와 학생 전학 사무소는 교육구에서 교육구로 전학가는 허가 신청과 항소에 대한 행정 책임을 집니다. 교육구간 허가는 LA 통합교육구로 전학 오거나 외부로 전학가는 학생에게 발급합니다. 교육구간 허가는 허가와 학생 전학 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교육구간 허가를 내주거나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LAUSD 허가 신청은 <http://studentpermits.lausd.net> 에서 온라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학년에 전학가기 위해 교육구의 허가서를 신청하는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날짜가 지나면 학부모의 직장만이 유일한 허가 신청사유입니다. 다음 학년에 전학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교육구의 허가서를 신청하는 기간은 시작됩니다. 신청서는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교육구에서 교육구로 보내는 허가 신청서는 전자식으로 하며, 정해진 신청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교육구에서 교육구로 전학가는(OUTGOING) 허가 신청을 심사합니다:

- 학부모 직장;
- 특수 프로그램;
- 지속적인 등록;
- 형제자매 허가;
- 육아;
-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 부모가 현역군인인 자녀;
- 예외 요청.

교육구에서 교육구로 전학오는(INCOMING) 허가 신청을 심사합니다:

- 학부모 직장;
- 특수 프로그램;
- 지속적인 등록;
- 형제자매 허가;
- 육아;
-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 부모가 현역군인인 자녀;
- 예외 요청.

교육구 내 전학하는 허가

교육구 내 허가서(LA 통합교육구 내 학교)는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거주 학교와 요청 학교에서 직접 처리됩니다. 교육구 내 허가는 지방 자치구 운영자에게 항소합니다. 지역 내 허가증은 학생이 LA 통합교육구 거주 학교에서 다른 LA 통합교육구 학교로 전학을 허가합니다. 교육구 허가를 받는 서류 신청과 절차는 LA 통합교육구 학교에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 전학을 요청하면 시작합니다. 전학 허가는 다음 중 한가지 이유로 받습니다:

- 학부모 직장;
- 특수 프로그램;
- 지속적인 등록;
- 형제자매 허가;
- 육아;
- 안전과 보호;
- 예외.

교육구내 허가는 신청자가 자격이 되고 거주학교와 요청학교의 행정관이 요청을 허락하면 허용됩니다. 이 허가증에 교통편을 받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력 시험

5학년, 7학년, 9학년 학생들은 모두 체력 시험에 참가해야 합니다. 전체 피트니스그램® 테스트 배터리(FITNESSGRAM® test battery)는 다음 영역에서 학생의 성적을 측정합니다:

- 유산소용량;
- 신체구성;
- 복부 강도와 내구성;
- 상체 강도와 내구성;

- 몸통 신근 강도와 유연성;
- 유연성.

교사와 행정관은 시험에 나오는 기술과 능력을 지도하고 충분히 연습시켜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게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는 1년내내 학생들에게 정규 체육(P.E.)수업으로 충분히 연습시켜야합니다. 학생들은 2월부터 5월까지 시험을 치룹니다. 자녀가 체육 활동과 영양에 대한 정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학부모/보호자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2021년 3월 14일 이전에 시험을 보았으면 2021년 봄의 피트니스그램(FITNESSGRAM®) 학생 점수 성적표는 학부모 포털에서 학부모/보호자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2년 동안 체육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체육수업을 이(2)년 동안(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면제받기 위해 피트니스그램에 "합격"해야 합니다. "합격" 점수는 여섯(6)가지 요소 중 다섯(5)가지에 해당하는 건강한 피트니스 존(the healthy fitness zone)에 맞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9학년이나 10학년 때 건강한 피트니스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피트니스그램에 '합격'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체육수업을 계속 받게 됩니다.

피트니스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녀의 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배상

교육의 일부로 수업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 전자기기 등 자료와 기구를 학생들은 받게 됩니다. 교육구가 자료를 유지하고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자료, 도서관 책, 기기, 학교 재산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학생들이 이 책임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 수업자료, 도서관 책, 기기, 학교 재산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 책을 대출하는 기간에 책을 안전한 장소에 두게 하십시오;
- 학생들에게 외관적 훼손은 범죄가 아니지만, 부모님이나 보호자는 망가진 물건에 경제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보호자는 망가진 학교 물건을 가능한 빨리 학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생의 전자기기가 망가졌으면, 학생은 망가진 물건을 반납하면 다른 것을 사용하게 받습니다. 학생이 기기를 일부러 돌려주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교과서를 자르거나 외관적 훼손,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학교 재산을 훼손하면, 민사법과 교육법과 교육구 방침에 따라서 학부모님이 교과서와/혹은 기기 등 망가진 학교 물건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1714.1조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나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는 모든 민사적 손해에 대해 미성년자의 양육권과 통제를 갖는 학부모/보호자의 책임이며, 양육권과 통제를 가진 부모/권한자는 법에 의해 부과된 책임 외에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25,000을 초과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미성년자와 공동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48904(a)(1)항은 미성년자의 부모/보호자가 미성년자에 의해 대출되어 반환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된 모든 소유물에 대해 교육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날짜로 법적책임은 \$20,900를 초과하지 않고 교육법 48904(a)(2)항에 따라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조정됩니다. 통보받으면, 학부모/보호자는 물건을 반납하거나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학부모/보호자가 물건을 반납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부모/보호자를 상대로 배상부서에서 소액채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가 판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채무자 공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자금을 물건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요점을 보십시오.

고의적 파손이나 손실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를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고, 학생이나 과거 학생이 학교에 빚을 진 이유로 학교에서 부정적 조치를 하지 못합니다:

1. 수업 과제에 점수를 다 주지 않는 것;
2. 수업 활동에 온전하고 평등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3. 도서관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고 캠퍼스의 교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4. 성적이나 성적표를 거절하거나 유보하는 것;
5. 학위를 거절하거나 유보하는 것;
6. 과외활동, 클럽,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7. 교육활동, 현장학습, 학교 의식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학교물건이 고의적으로 망가졌다고 학교에서 판단하면, 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1. 학부모와 학생에게 금전적 보상의 대안책을 제안합니다. 금전적 보상의 대안책은 부모가 찬성해야 합니다. 대안책은 보상을 대신해서 서비스나 일하는 방법으로 노동법 조항을 따라야 하며, 청소년 취업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됩니다;
2. 학부모가 빚진 금액이 세부적으로 나온 청구서를 준다;
3. 할부약정을 정해도 되며, 할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영수증을 준다.

금전적 보상의 대안책의 예는 도서관 서비스, 서비스 학습 프로젝트, 과제, 연구 보고서 등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SRTS)

안전한 통학로(SRTS)는 학교의 이웃 동네의 안전을 개선하고 학교 커뮤니티에 안전 교육을 위한 커뮤니티 접근방법입니다. LA 교통부(LADOT)는 LA 통합교육구와 제휴하여 SRTS를 관리하며, 안전 교육 캠페인, 학교구역/근교 거리 프로젝트,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학교에 걸어가는

날 등이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건안전국(OEHS)과 LA 학교경찰국(LASPD)은 아침 등교시간에 학교 주변의 차량 교통을 정리하는 안전 주차서비스 프로그램(Safe Valet Program)을 지원합니다. 교통안전과 SRT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EHS 웹사이트의 안전 학교 교통 프로그램 섹션 <https://achieve.lausd.net/Page/4238> 또는 LADOT 웹 사이트 <https://ladotlivablestreets.org> 를 참조하십시오.

학교 책임 성적표

교육법 제35256항에 의해 교육구는 매년 학교에서 학교 책임 성적표(SARC)를 발급해야 합니다. SARC는 매 학년 2월 1일까지 발행됩니다. 복사본은 학교 사이트와 LA 통합 웹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Page/8027> 에서 요청 시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 메디칼(Medi-Cal) 서비스

다음과 같은 메디칼 정보는 메디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 아동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제공됩니다. LA 통합교육구는 장애교육법(IDEA) 규정에 따라 학부모/보호자에게 아동의 개별교육안(IEP)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LA 통합교육구는 모든 LA 통합교육구 학생에게 제공하는 건강 관련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함)에서 그러한 서비스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이 보상하는 서비스에는 현재 교육구내 모든 학생을 위한 특정 보건 서비스뿐 아니라 장애학생을 위한 특정 서비스도 포함돼 있습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건강 관련 서비스에는 학생의 개별교육안(IEP)에 명시된 치료와 평가와 다음이 포함됩니다. 청각학, 상담, 간호학, 직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교통서비스. 메디칼 규정에 의해 학교 제공인은 병원, 재활 센터, 그외 환경에서 근무하는 제공인과 동일한 높은 전문직 수준을 따릅니다.

메디칼 자격이 있는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특수교육 평가계획서나 IEP에 서명하면 LA 통합교육구는 메디칼에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예외는 학부모/보호자가 메디칼의 청구를 허가하지 않는 서류에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LA 통합교육구는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로 학생 기록, 의료 정보와/또는 학생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학교의 메디칼 보험보상으로 자녀가 다른 의료시설에서 메디칼 보험을 이용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장애 학생들을 위한 메디칼에 대한 상한선은 없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자녀의 IEP에 명시된 의료 서비스에 대해 가족의 개인 보험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교육법 규정(IDEA)에 따라서 교육구는 장애인 학생에게 무상으로 알맞는 공교육(FAPE)을 제공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213) 241-0558으로 전화하여 LA 통합교육구 메디칼 사무소에서 학부모 메디칼 비인가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대한 메디칼 비인가 양식에 대한 추가 정보는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안내서(절차상 권리 및 안전조치 포함)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가족 수, 가족 소득, 장애 등 다양한 요인으로 메디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메디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는 학부모/보호자는 LA 통합교육구 아동건강접속 및 메디칼 프로그램(CHAMP) 무료 전화상담서비스 (866) 742-2273번으로 전화하거나 <https://achieve.lausd.net/CHAMP> 를 찾아보십시오. 전화상담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LA통합교육구의 메디칼 환급과 준법관리 프로그램은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법(HIPAA)을 따릅니다. 학부모/보호자 핸드북의 양식섹션(forms section)에서 개인보호 통지서(the Notice of Privacy Practices letter)를 찾아보십시오.

학교체험 설문조사

매년 가을에 시행되는 학교 체험 설문조사로 LA 통합교육구 학교의 관계자들이 귀중한 정보를 받습니다. 올해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학부모/보호자, 교사, 조합, 커뮤니티 단체의 의견을 받아 개발된 학교 체험 조사는 학부모/보호자, 직원, 4학년-12학년 학생의 학교 체험 설문조사입니다. 전통적인 초,중,고등학교와 유아원, 초급센터, 특수교육센터, 옵션스쿨, 부속 차터스쿨의 응답자는 학교체험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학생과 학교 교직원들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작성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설문조사를 온라인이나 서류로 작성합니다. 학교체험 설문조사의 학교 결과는 매년 봄에 보고하고 학교에서 다음 학년도를 계획합니다. 학교 결과는 <https://achieve.lausd.net/Page/14935>에서 온라인 대화형 대시보드로 나옵니다. 학교 체험 설문조사의 자세한 내용과 자료를 볼 기회는 <https://achieve.lausd.net/Page/8397> 에 있습니다.

거주지 학교

6세에서 18세 사람이 면제받지 않은 경우, 의무적 정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을 관리하고 책임있는 어른이 거주지역에 사는 학생을 학교 수업일로 정한 기간에 풀타임으로 공립학교나 지속학교나 수업에 보내야 합니다.(교육법 제48200항) 이혼하거나, 법적 별거 중인 학부모나 미혼 부모가 있는 경우, 학생은 부모 중 한 명의 거주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중 입학은 엄격히 금지되며, 기록상 거주지는 한 곳만 정합니다.[국가법령 244(b)항] 학교는 거주자격을 검증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나이나 거주를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를 받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자녀의 학교 입학에 대해 시민권/이민신분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자녀의 학교 입학에 대해 사회보장번호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입학할 때 학부모/보호자가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거주지를 증명하는 진술서를 사용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입학일로부터 30일까지 거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은 다음의 경우 교육구의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 정식 설립된 인가받은 아동 기관이나 인가받은 위탁가정, 또는 복지제도에 의한 가정집에 입주한 학생. 책임있는 성인이나 보호자는 배정된 학교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호자가 없는 노숙자 청소년;

- 교육구와 교육구 간 출석이 허가된 학생;
- 거주지가 교육구 경계에 있는 해방된 미성년자;
- 교육구 경계에 위치한 주립 병원에 거주하는 학생;
- 보살펴 주는 성인과 함께 사는 학생(학교직원이나 교육구직원이 증명해야함).

현역군인의 가정에 사는 학생은 군인가족의 자녀인 경우 학년도에 거주지 변경에 관계없이 출신학교에서 계속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피더 패턴(feeder pattern)으로 입학이 허용됩니다. 군대 지위가 바뀌면 유치원부터 8학년의 학생은 학년 말까지 계속 다니게 됩니다. 고등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 다닙니다. 신설학교는 수업료, 별금이 있고, 또는 학생이 보통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옷이나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즉시 학생이 입학합니다.

집 주소의 학교를 찾으려면 <http://achieve.lausd.net> 에서 학교찾기(Find a School) 선택하고 거주지 학교 알아보기(Resident School Identifier) 클릭하거나 (213) 241-1000으로 전화하십시오.

학교 일정

교육법 제48980(c)항에 따라 단축수업(minimum days)과 수업없는 직원교육(pupil-free staff development days) 일정을 [2021-2022 수업 캘린더](#)에서 확인하거나 학교에 연락하여 확인하십시오. 그리고나서 단축수업일이나 수업없는 직원교육 일정이 있는 경우, 학교는 단축수업일이나 학생 공휴일로부터 일(1)개월 전에 해당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최대한 빨리 통보해야 합니다.

성희롱 방침

LA 통합교육구는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운 근무환경과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실제 성별 또는 인지된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성별 표현, 임신, 출산, 모유수유/수유기간 상태 및 이와 관련된 의료적 조건에 근거하여 직원, 학생, 교육구의 거래처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합니다. 이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주법과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성희롱은 성에 근거한 원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의되며, 성접대, 성접대 요청,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또는 업무적/교육적 환경에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에 근거한 행위를 포함하며, 다음 조건에 해당합니다:

-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행위에 복종이 고용, 학업 지위, 실적의 조건부입니다;
- 개인의 행위에 복종이나 거부로 고용, 학업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되거나, 또는 교육기관에서 혹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용하는 혜택과 서비스, 명예, 프로그램, 활동에 영향주는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 행위가 개인의 업무나 학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불쾌한 업무환경이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나 결과가 생깁니다.

1972년 교육수정안 IX장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성적 행위는 성차별이나 성희롱으로 성립합니다:

- 원하지 않는 성행위에 가담한 사람에게 교육구의 지원, 혜택, 서비스 조항을 조절한 직원;
- 합리적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성행위가 심하고, 만연하고, 객관적으로 공격적이고, 교육구의 교육프로그램과 활동을 공평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클리리법 또는 여성폭력법으로 규정된 성폭행, 데이트 폭행, 가정폭력, 스토킹.

보호 범주의 실제적 또는 인지된 특성에 근거한 차별, 희롱, 협박, 학대 행위, 괴롭힘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위 열거와 같이), 학교 직원은 안전할 때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리자 또는 타이틀 IX/괴롭힘 불만제기 관리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보고하는 것은 적절한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 학생 또는 제3자가 행동한 여부에 따라 학교나 사무소는 차별적, 괴롭히는, 위협적, 학대적 또는 따돌림 행위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조사하거나 또는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 직원들은 행동을 종식시키고,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된 경우 이를 없애고,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계산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이 불만신고를 제기하거나 학교나 사무실에 조치해도 이런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LA 통합교육구 교육감이 관할하는 모든 학교 또는 사무실에서 학교 활동 또는 학교 출석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적용됩니다.

성희롱의 피해자라고 믿거나 직접 목격한 교육구의 학생이나 직원은 행정관이나 타이틀 IX/따돌림 불만신고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성희롱 불만신고를 하거나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만신고는 당사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보호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면 학교 행정관, 학교의 타이틀 IX/괴롭힘 불만신고 관리자, 또는 교육 형평성 준법 관리부서의 교육구 타이틀 IX 관리자 (213) 241-7682에게 문의하거나 <http://achieve.lausd.net/eeco> 를 방문하십시오. 직원 불만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공정 기회부서에 (213) 241-7685 문의하십시오.

특수 교육: 학교 및 가족 지원 서비스(SFSS)

학교, 가정지원 서비스부서는 장애학생의 가족이 자녀 교육에 의미있는 참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지원,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FSS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문의에 응답하고 교육구의 직원과 학부모/보호자가 협력하여 특수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SFSS는 특별 교육 위반을 주장하는 학부모의 불만사항을 조사하여 교육구이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고 학부모/보호자가 외부에서 불만신고 방법을 찾는 것을 줄여주는 기회가 됩니다. "불만"이란 다음과 같은 위반혐의를 의미합니다: (1) 장애인교육법(IDEA)과 규정 이행 (2) 특수교육과 규정 이행에 관한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3) 전자방침과 절차 설명서(e-PPM)에 요약된 교육구의 특수교육 방침과 절차. SFSS는 적시에 법적인 해결을 보기 위해 교육구 직원과 학부모/보호자와 협력하게 돕습니다. "해결"은 특수교육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나 교육구부서에서 알맞는 구체적이나 다음 순서를 제안하고 학부모/보호자가 선택하는 특정 조치입니다.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면, 특수 교육, 학교, 가족 지원 서비스 부서에 (213) 241-6701 문의하십시오.

학생 사고보험

학교 대항 경기 시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교육법 32220-32224항에 따라 의료비와 병원비를 부담하는 건강보험이나 사고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학생건강보험에서 규정한 건강보험제도는 학부모/보호자가 주정부법을 준수하게 하는 의도입니다. 스포츠, 사고, 질병에 대한 공공보험과 사보험 정보는 위험관리와 보험서비스 부서 (213) 241-2176로 문의하십시오. 사보험에 대한 정보는 위험관리 부서 웹사이트 <http://achieve.lausd.net/Page/4141> 에서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저가보험이나 무료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무료나 저가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는 무료 전화서비스 (866) 742-2273으로 LA 통합교육구 아동헬스 액세스와 메디칼 프로그램(CHAMP)에 문의하거나 <https://achieve.lausd.net/Page/12426> 에 있습니다. CHAMP는 메디칼 확장과 오바마케어에 따라(ACA 또는 오바마케어) 학부모/보호자, 성인, 커뮤니티 주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헬프라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합니다.

학생 출석방법

캘리포니아 주법[교육법 제48980항 (h)]은 모든 학교 위원회가 학년 초에 각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교육구에서 배정된 학교 외에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지리적 위치, 학업 제공, 과외 활동 등을 기준으로 학교를 검색하려면 교육구 웹사이트 <https://goto.lausd.net> 을 보십시오. 이 웹사이트에서 학부모/보호자들이 교육구의 매그넷, 이중언어, 고등교육학교, 교통편 허가서 등 교육구의 초이스 프로그램을 알아보게 됩니다. 초이스 프로그램은 웹사이트에서 반아서 작성하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는 지역 학교, 도서관, 지역 교육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에게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부모지원전화에 (877) 462-4798으로 문의하십시오.

학생 건강보험

LA 통합교육구의 아동 헬스 액세스와 메디칼 프로그램(CHAMP)은 부모가 자녀를 메디칼과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보험에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부모는 가입도움을 받으려면 (866) 742-2273번 무료 CHAMP 전화서비스나 CHAMP 웹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wellnessprograms> 를 찾아보십시오. 학교는 CHAMP 사무소에 연락하여 직원이나 학부모 설명회 날짜를 정하십시오. 헬프라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합니다.

학생기록

연방법과 주법으로 학생기록 정보를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법에 의해 학교가 학생의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학부모/법적 보호자/교육권 소유자(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야하며 예외는 법원 명령에 대응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법으로 공개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자녀의 학생기록을 사용하는 절대적 권리를 가집니다. 대부분의 학생기록은 학교에서 보관합니다. 초등학교에서 관리하는 기록은 일반적으로 교장을 기록 관리자이며 사무실에 보관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기록을 보관합니다:

- 학생 건강과 관련된 학생 기록은 보건소에서 보관하며, 학교 간호사가 직속 관리인입니다;
- 학생성적, 상담, 안내지원에 관한 학생기록부는 상담실에 유지되며, 교감/학생상담부가 직속 관리인입니다;
- 출석과 관련된 학생 기록은 출석사무실에 보관하며 교감, 학생 지원부가 직속 관리자입니다;
- 체육활동과 관련된 학생부 기록은 체육교육사무소에 보관하며 체육담당주임을 직속 관리자입니다;
- 교실 활동과 관련된 교육 기록은 교실에 보관하며 교사가 직속 관리인입니다;
- 특수교육 IEPs는 학생의 누적기록 폴더에 보관합니다.

규율, 특수교육, 심리기록 등 일부 학생기록은 교육구, 지원부서, 중앙 교육구 사무소에서 보관합니다.

학생 기록 정보 점검/검토/항의

A. 모든 학생기록의 검사/검토는 일반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며, 학부모/보호자(또는 해당되는 경우 학생)와 학교 관계자가 서로 편리한 시간을 정합니다. 교육구 공인 직원이 도와주고 기록의 관리자 역할을 하기 위해 참석해야 합니다. 한 학생의 학생기록에 다른 학생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기록을 검사/검토하고자 하는 학부모/보호자(또는 해당되는 경우 학생)는 해당 학부모/보호자의 자녀와 관련된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또는 학생, 해당되는 경우)가 학생 기록을 전부나 일부분의 복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사본을 드립니다. 학교나 지방 교육구는 첫 페이지에 0.25센트(\$0.25), 추가 페이지마다 0.10 센트(\$0.10)의 복사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적 외 모든 학생 기록은, 캘리포니아 교육법 49070항에 의해 학부모/보호자(또는 이전 학생)가 기록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요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학생 기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부정확함;
- 입증되지 않은 개인적 결론이나 추론;
- 참관인의 권한 범위를 넘는 결론이나 추론;
- 참관할 시간과 장소가 있고 이름이 나온 참관인의 개인적 관찰에 근거하지 않음;
- 오해의 소지가 있음;
- 학생의 사생활이나 권리를 침해함.

학부모/보호자는 먼저 학교장과 만나 해당 기록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장이 부모/보호자의 이의제기를 지지할 경우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합니다. 학교장이 학부모/보호자의 이의제기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보호자가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불리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먼저 지역교육감에게, 그 다음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지역교육감과 교육위원회는 공정한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제기 소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이 학부모/보호자의 이의제기를 지지할 경우, 이의제기 된 소재의 수정, 제거 또는 파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부모/보호자의 이의제기가 궁극적으로 거부된다면, 학부모/보호자는 이의제기정보에 대한 서면 진술을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진술은 이의제기 되는 정보가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는 한, 그리고 삭제될 때까지 학생의 학교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 B. 성적에 항의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49066항은 사무적인 실수, 기계적인 실수, 사기, 불신, 무능력이 없는 경우에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준 성적이 최종적입니다. 성적에 항의하려면 캘리포니아 법과 LA 통합교육구 방침을 따라 진행됩니다. 성적 변경을 요청하는 부모의 권리 항을 참조하십시오.
- C. 개인적 참고 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학교 행정관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고 대리인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기록이나 정보는 학부모나 성인 학생이 검사, 검토, 항의하기 위해 이용하는 학생 기록이 아닙니다.
- D. 학생이 입학하려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학생의 학생생활기록부를 학교에 전달합니다.

불만 신고

학부모/보호자는 학생 기록에 대한 교육구의 절차에 불만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캘리포니아 교육부/또는 미국 교육부의 가족정책 준법부서로 하십시오.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 Washington, DC 20201

학생/학교 행동규율

LA 통합교육구 규율 기초방침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경받으며, 환영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육자는 학습을 방해하는 혼란과 방해물이 없는 환경에서 가르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전반의 일관된 긍정적인 행동개입과 지원/회복(PBIS/RP) 규율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학교 규칙/ 교실 규칙과 사회적 감정적 능력을 가르침, 커뮤니티 만드는 활동에 참여, 예의바른 학생의 행동을 격려하기, 효과적인 교실 관리. 결과를 알려주기 전에, 학생들은 연습에 필요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 먼저 도움을 받고, 긍정적인 학교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전교생을 위한 지도 원칙:

- 우리는 안전합니다;
- 우리는 존중합니다;
- 우리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 우리는 다름을 인정합니다;
- 우리는 정직합니다;
- 우리는 평생 배웁니다.

지원과 지도를 받고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해야합니다:

- 전교에서 그리고 교실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배우고 따릅니다;
- 물리적 또는 언어적 폭력 없이 갈등을 회복적으로 해결합니다;
- 낙서, 무기, 마약이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캠퍼스를 유지합니다;
- 긍정적인 모범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긍정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합니다;
- 따돌림, 희롱, 편견으로 발생한 사건을 보고합니다;
- 경기장이나 운동장에서 훌륭한 스포츠맨 정신을 보여준다;
- 시간에 맞게 자료와 준비물을 가지고 학교에 출석하고, 공부할 준비를 한다;
- 사회 활동을 안전하게 한다.

학생수색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불법적인 수색에서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학교 관계자들이 특정한 제한된 상황에서 학생들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1. 타당한 혐의를 바탕으로 한 수색: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령이나 학교 규칙을 위반한 증거가 수색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학교 행정관이 타당한 의심을 생기는 행위를 학생이 저지른 경우, 행정관은 학생을 수색합니다. 행정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의심의 이유와 특정 사건에 대한 사실과/또는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학생을 특정 사건, 범죄, 규칙 또는 법령 위반과 합당하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함;
- 개인 지식 및/또는 기타 목격자의 최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해야 함;
- 타당한 의심을 바탕으로 한 수색이 학생의 나이, 성별, 그리고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함.

2. 타당한 의심을 바탕으로 학생수색을 실시할 때에 학교관계자는 다음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 명확하고 구체적인 혐의사유가 있고 학생을 특정 위법행위사건과 연관시키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한다;
-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자켓, 지갑, 주머니, 배낭, 가방 및 용기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색할 수 있다;
- 어떤 조건에서도 신체 또는 알몸 수색을 할 수 없다;
- 가능할 때마다, 수색 대상 학생과 같은 성별의 학교 관계자만 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 타당한 의심을 바탕으로 한 수색은 다른 학생이나 직원이 볼 수 없는 사적인 곳(가능할 때마다 학교 관리자, 동일 성별의 지명된 증인은 제외)에서 해야 한다.

노숙을 겪는 학생

노숙자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맥키니-벤토(McKinney-Vento) 노숙자 지원법에 의해 취학 연령의 노숙자 아동은 영구적 주거지가 있는 학생들이 받는 똑같은 적절한 무상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숙자 학생은 고정되고 규칙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부족한 사람으로 정의되며, 다음에 해당됩니다:

- 비상시 또는 과도기적 대피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 사람을 위한 일반 숙박시설로 설계되지 않은 표준 이하의 주택, 자동차, 차고, 다른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 주택의 손실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가족의 집이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둘이 함께 사는 것);
- 호텔 또는 모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 트레일러/R.V./모터 홈, 캠핑장에서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 부모/보호자가 아닌 성인과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입학신청서의 필수 양식이며 학생 비상연락처 등 서류와 함께 매년 학교에서 나누어 주는 학생 주거 설문(SHQ)으로 노숙하는 학생들을 알아냅니다. 학부모/보호자,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은 학생 주거지 설문지에서 자신의 현재 생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정해진 노숙자 담당자가 있고, 이들은 학생/가족에게 연락하고 서비스를 신청하고 SHQ를 작성하고 노숙자 교육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SHQ로 본인확인을 하고 학년도에 학교나 학생보건복지국, 노숙자 교육국으로 (213) 202-7581 또는 <https://homelesseducation.lausd.net> 에서 직접 연락하십시오.

영구적 거처가 있는 학생과 노숙하는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녀야합니다. 그러나 노숙하는 학생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연방 권리와 입학 보호를 받습니다. 노숙하거나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은 다음의 학교에 출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 청소년이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출신 학교);
- 거주지 학교;
- 학생이 지난 15개월 동안 출석했고 연관있는 학교(출신 학교);
- 출신학교의 정해진 공급자 패턴(feeder pattern). 예를 들어,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공급(feeder) 중학교로, 그리고 또래 학생들과 함께 중학교에서 공급(feeder) 고등학교로 (학교의 출석지역에 살지 않는 경우에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 요청하면, LA 통합교육구는 출신 학교에 가고 오는 적합하고 가능한 교통수단을 제공합니다.

맥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과 LA 통합교육구 방침에 의해 즉시 입학합니다. 예방접종, 개별교육안(IEP), 504계획서, 성적표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이유로 노숙하는 학생의 입학을 미루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입학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입학하는 학교는 이전 학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요청하고, 학부모와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을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소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추천서는 지역사회 단체, 특수교육, 과외, 유치원 프로그램, 방과 후 심화학습 프로그램, 필요한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학교 선정이나 입학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입학하려는 학교에 학생을 즉시 입학시켜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은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쟁 해결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13) 202-7581으로 노숙자 교육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교육법 51225.1항은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전학하는 노숙학생에게 졸업요건을 면제합니다. 대상 학생에게는 주 차원의 교육과정 외에 교육구 관리위원회가 채택한 교육과정의 면제와 자격요건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노숙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다니면서 교과과정을 이수할 것을 규정한 기존조항을 전체나 부분적 학점을 주는 것으로 확대합니다. 이 법에 의해 LA 통합교육구 노숙자 담당자에게 퇴학 권고와 퇴학 결정이 내려지는 IEP 회의에 초대하고 통보합니다.

위탁보호 학생

아동가족서비스부서나 보호관찰국(특정 상황에서)의 감독을 받고 자격증이 있는 위탁가정, 단기주거치료 프로그램(STRP)(이전 그룹홈으로 불렀음)에 배치되거나 친척이나 친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은 특별입학 조항이 적용됩니다. 교육법 제48853.5항에 의해 위탁가정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예방접종기록, 교복의 사용 여부, 또는 이전학교의 벌금과 관계없이 즉시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교육자, 학교 직원, 사회복지사, 보호관찰관, 간병인, 관계자는 위탁가정에 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다함께 협력합니다.

교육법 제48853.5항에 의해 위탁가정 학생들이 출신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해당되는 경우 다른 출석지역에 사는 가족의 자녀일 경우에도 동일한 출석지역에 있는 중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탁보호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구는 법원 관할권 기간 동안 청년이 출신학교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정의 관할권이 학년말 이전에 종료된 경우에는 위탁보호대상 학생이 학년기간 동안 출신학교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법 51225.1항에 따라 위탁가정 학생들에게 졸업요건을 면제합니다. 위탁가정 학생이거나 청소년 형사법에 저촉된 학생이 졸업 면제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구 위원회에서 정한 모든 학과정과 졸업요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면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은 위탁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전학을 한 경우;
- 학생은 LA 통합교육구 졸업 요건을 사(4)년에 합리적으로 이수하지 못합니다;
- 교육권 보유자는(ERH) 졸업 면제가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 학생은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일단 이 면제 대상 자격이 되면, 학생의 위탁시설 또는 보호관찰 케이스가 종결되거나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더라도 그 자격은 계속됩니다. 학교, 학생, 교육권 소유자,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이 학생을 지역적 요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학을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학부모, 보호자, 위탁보호자, 사회복지사 및/또는 보호관찰관은 학생이 학교 배정을 변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교육구에 통보하여 부분 학점이 산정(해당되는 경우)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적시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주지의 변화를 겪는 학생의 경우, 출신 학교를 결정하고 출신 학교로 교통수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육권자와 함께 최선의 이익 결정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학교와 관련된 위탁보호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생 건강 및 휴면 서비스, 학생 지원 프로그램 (213) 241-3844번에 문의하거나 <https://achieve.lausd.net/Page/15337> 을 방문하십시오.

청소년 사법에 저촉된 학생

교육법 제48645.5항에 의해 학생들이 청소년 형사법에 저촉된 사실로 공립학교의 입학이나 재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육구와 카운티 교육청은 학생이 공립학교, 소년법원학교, 비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수업 전체나 일부분을 충분히 이수해서 받은 학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의무적인 학교 출석을 면제받지 않는 한, 청소년 형사법 시설에서 돌아온 학생이나 또는 법원 명령으로 배정받은 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제공하는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과 똑같은 권리가 있고, 즉시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법 제48645.5항, 49069.5항, 48647항, 48648항에 의해 카운티 교육청과 보호관찰국은 지방 교육기관과 협력하는 공동 과도기 계획방침이 소년법원에서 식방되는 학생들을 위해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청(LACOE),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교육구에 복귀하는 학생들을 파악하고 알맞게 배정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서비스에 연결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정했습니다.

교육법 51225.1항은 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 형사법에 저촉된 학생들에게 졸업요건을 면제합니다. 유자격 학생은 교육구 위원회에서 채택한 모든 과정과 기타 요건에서 면제받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면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은 청소년 형사법에 저촉된 경우입니다;
-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전학한 경우입니다;
- 학생은 4년 안에 교육구의 졸업요건을 추가로 이수하지 못합니다;
- 교육 권리자는 졸업 면제가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결정해야 합니다;
- 학생은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이 면제받을 자격이 되면, 학생의 위탁시설이나 보호관찰이 종결되거나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더라도 계속 자격이 있습니다. 학교, 학생, 교육권 소유자, 사회복지사, 보호관찰관은 학생이 요건에 면제받게 하는 목적으로 전학을 요청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학생 개인 물건

분실, 도난, 손상될 위험이 있는 개인 귀중품(휴대폰, 휴대용 기기, 태블릿, 카메라, 전자 게임, 라디오, CD 플레이어, 휴대용 컴퓨터 등) 학교에 가져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물품들은 교육에 방해가 될 수 있고 학교 직원들이 압수하기도 합니다. 분실물이나 도난당한 물건은 교육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개인 보관함에 있는 물건도 포함합니다).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배웁니다. 장애학생은 특별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평가를 기반으로 하며,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동등한 참여자인 개별교육안(IEP) 팀이 자격을 결정합니다. 특수교육서비스는 장애학생들의 독특한 교육적 애로사항을 맞추기 위해 있고 학부모/보호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적합한 최대한 범위에서, 장애학생은 장애가 없을 경우 등교하게 될 학교의 일반교육환경에서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알맞은 보조교사와 서비스가 있는

일반 교실에서 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합치는 최고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 IEP 팀이 생각할 우선적인 교육 환경입니다. IEP 팀은 학생이 가진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성으로 필요한 보조교사와 서비스를 일반 교실에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일반교육 교실과 환경에서 학생을 나오게 합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을 수 있고 특별한 교육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취학 연령의 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인근 공립학교의 관리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고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미취학 프리스쿨 연령인 어린이의 부모/보호자는 (213) 241-4713번 유아특수교육부에 연락하십시오.

특별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립학교 및 특수교육부서 홈페이지 <https://achieve.lausd.net/sped> 에서 제공되는 특별교육서비스 학부모 안내서(절차상 권리 및 안전조치 포함)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수 교육 문제와 관련된 지원은 학교 관리자 또는 특수 교육부 (213) 241-6701으로 전화하십시오.

1973년 재활법 504항의 장애학생

1973년 재활법 504항(504항)은 미국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입니다. 실질적이거나 인지된 장애를 이유로 차별, 회롱, 협박과/또는 괴롭힘이 용납될 수 없으며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구는 장애로 인한 차별, 회롱, 협박, 그리고/또는 괴롭힘으로 불만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조사하고, 향후 사건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504항에 따른 취학 연령의 장애학생을 위한 알맞은 무상공립교육(FAPE) 조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구는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만큼 충분히 장애학생이 교육프로그램과 활동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504항에 의해 연방정부의 장애인 정의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편의시설, 보조교사와/또는 학생이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도와주는 504항 계획서를 마련합니다. 교육구는 제504항에 따라 장애인이 동등한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비학습적 과의 서비스와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504항에 따라 학생의 평가, 신원 확인과/또는 학교 배정 등 교육구의 결정을 따르거나 항소하는 권리를 문서로 통지받아야 합니다.

504항과/또는 항소를 제기해 도움되는 추가 정보나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참조) 504항 관련 비공식 조정 또는 공정한 공청회를 실시하려면 (213) 241-7682번으로 교육 형평성 준법 관리부서의 교육구 504항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https://achieve.lausd.net/eeco> 를 방문하십시오.

일시적 장애를 가진 학생

주정부법에 따라 가정이나 병원에서의 교육은 비전염성, 일시적인 의료장애로 정규수업이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출석하지 못하는 K-12학년인 유자격 일반교육 학생과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목적은 일시적인 장애 기간 동안 학생이 수업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가정/병원 교사는 학생의 학교 프로그램과 관련된 과목/수업을 직접 대면이나 온라인으로 가르칩니다. 가정/병원 수업은 일시적인 임시 서비스입니다. 장기간으로 정기 수업을 대신하면 안됩니다. 가정/병원에서 수업은 (1)주치의가 학생의 참여도를 근거로 서비스의 시작을 허가하는 경우, 그리고 (2) 교육적 의무를 임시로 인수하는 학부모의 허가서를 접수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별교육안(IEP)이 현재 있는 학생이거나 504항 계획안이 있는 학생이 상황에 따라서 임시로 가정/병원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아동학대와 방치 의혹 보고

보고 요건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다른 사람이 어린이에게 우발적이 아닌 방법으로 가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는 미성년자에 대한 상업적 성적 착취 등의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고의적 잔인성,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아동 방치는 아동의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해치려고 위협하며 태만하거나 학대하고, 식품, 의복, 의료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은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나 방치된 경우 또는 발생하였다는 타당한 의심을 하는 교육구 직원은 지역경찰, 보안관 부서 또는 아동 및 가정 서비스 부서 등 적합한 아동보호서비스기관(CPSA)에 즉시 연락하거나 최대한 빨리 36시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LA 통합 학교 경찰국(LASPD)은 법적으로 아동 보호 서비스 기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LASPD 경찰관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비밀보장하며 신고하는 직원의 신원도 비밀보장합니다.

정학과 퇴학

캘리포니아 교육법 48925 (d)항에 의해 정학은 학생이 행동교정을 하기위해 수업을 받지않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학생은 수업일로 연속 오(5)일까지 정학을 받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48925 (b)항는 퇴학을 (1) 즉각적인 감독과 통제, 또는 (2) 학교 직원의 일반적 감독에서 학생을 배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LA 통합교육구에서, 학생 정학과 퇴학 지원부(SDES)는 퇴학 권고를 받은 학생들이 공정한 심리와 정당절차권이 있게 합니다. 학생은 집행정지(곧장 퇴학) 없이 퇴학당할 수 있고, 따라서 교육법 48917항에 의해 퇴학기간 중에는 LA 통합학교나 프로그램에 다닐 수 없으며 또는 퇴학이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학당한 학생은 퇴학기간 동안 LA 통합교육구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됩니다. 퇴학기간은 위원회가 퇴학한 학기를 균형잡고, 이번 학기와 다음 학기를 더한 기간을 균형잡거나, 또는 일년이 되기도 하며, 위반과/또는 학생의 사회적 적응력에 따르게 됩니다.

A.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관할구역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든지 발생하는 학교 활동 또는 출석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확장됩니다:

- 학교운동장에 있는 동안;
- 등교 또는 하교 중;
- 점심 시간, 캠퍼스 내부나 외부;
-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 동안, 행사에 가거나, 행사에서 돌아올 때;
- 학교 버스를 타는 동안.

교사는 교육법 제48900항에 규정된 행위로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으며, 예외는 위원회 결의안으로 규정된 교육법 제48900 (k)(1) 항에 기술된 고의적인 반항 행동입니다. 학교규율방침과 학교분위기 청구권입니다(아래 C항의 정학/퇴학의 근거 참조하십시오) 학생이 교실에서 정학을 당하면 교사는 즉시 정학을 교장에게 보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장은 그 후 학교에서 정학을 시킬 것인지 또는 교실정학기간 중 교내에 남아있게 허락할지 결정합니다. 교장이나 행정 대리인만이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교실 정학 기간은 남은 수업일(또는 수업 기간)과 다음 날(또는 같은 수업의 다음 수업시간)을 더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실의 정학 처분을 받는 학생은 적절한 감독 하에 교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교사의 수업 정지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학부모/보호자에게 교사와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학교 관리자, 상담자, 심리치료사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욕설이나 저속한 행위를 한 경우, 교사는 학부모/보호자가 교실에서 수업을 부분적으로 참여할 것을 부탁해도 됩니다.

B. 기타 교정 방법(교육법 제48900.5항)

감시받는 정학 등 정학(교내정학, 교실정학 등)은 다른 시정방법으로 행동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시행됩니다. 사용된 다른 수정 방법은 교육법 제49069항에 따라 사용하는 학생의 징계기록에 기록되고 보관합니다.

정학/퇴학의 합당한 근거(교육법 제48900항)

- (a) (1)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거나, 시도 또는 위협함;
- (a) (2) 정당방위를 제외하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력 또는 폭력을 사용함;
- (b) 교장이나 교장의 지명인과 의견이 일치한 인증된 학교 직원으로부터 물품을 소지할 수 있는 허가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 칼, 폭발물,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 판매, 제공함;
- (c) 보건안전법 10조 제2장(11053항로 시작)에 명시된 규제성분, 알코올 음료, 취하게 만드는 것의 불법적 소지, 사용, 판매함;
- (d) 보건안전법 10조 제2장(11053항로 시작)에 명시된 규제성분, 알코올 음료, 취하게 만드는 물질을 판매하기 위해 불법적 제공, 알선, 협상한 후 타인에게 다른 액체, 성분, 재료를 규제성분, 알코올 음료, 취하게 하는 물질인 것처럼 판매, 전달, 공급함;
- (e) 절도 또는 착취를 범하거나 시도함;
- (f) 학교 또는 개인 물건을 파손하거나 시도함;
- (g) 학교 또는 개인 물건을 절도하거나 시도함;
- (h) 담배, 시가, 미니어처 시가, 정향 담배, 무연 담배, 코담배, 씹는 담배, 베텔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토바코나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을 소지 또는 사용함. 단, 이 조항은 학생의 의사가 처방한 제품의 소지나 사용을 금하지는 않음;
- (i)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인 욕설 또는 저속한 행위에 연루됨;
- (j) 보건안전법 제11014.5항에 정의된 마약의 불법적 소지, 제공, 판매알선, 협상함;
- (k) (1) 학교(전체)활동 방해 (행정담당자에 의한 정학만 적용됨; 퇴학금지) (4-12학년);
- (l) 도난당한 학교물건이나 개인물건을 고의적으로 받음;
- (m) 모조총기의 소지;
- (n) 성폭행이나 성적 구타를 범했거나 시도함;
- (o) 불만신고한 증인이나 학교 징계절차의 증인인 학생이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거나 또는 증인을 선 학생에게 보복하는 목적으로 괴롭히거나, 협박하고, 위협함;
- (p) 처방약 소마(Soma)를 불법으로 제공, 판매 알선, 판매 협상, 또는 판매함;
- (q) 신고식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고 시도함;
- (r) 특정한 학생이나 학생 집단에게 전자식으로 저지른 괴롭힘을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는 괴롭히는 행동을 함;
- (t)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방조함(정학만 적용됨).

48900.2 성희롱을 저지름 (4-12학년).

48900.3 증오 폭력을 저지르거나, 시도하거나, 시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가담한 경우 (4-12학년).

48900.4 의도적으로 교육구 직원이나 학생을 괴롭힘, 협박, 위협한 경우(4 - 12학년).

48900.7 학교 관계자나 학교 소유물에 테러를 하겠다는 위협하거나 둘 다인 경우.

교장/대리인은 학생을 정학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정학하기 전에 했던 다른 시정수단과 증거자료가 있는 소견서와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있고 징계사유를 통보하는 비공식 회의를 갖습니다(교육법 제48911조). 만약에 학생이나 학교 직원의 생명, 안전, 건강에 위험을 주는 분명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식 회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학이 권고되는 상황 (교육법 48915항)

교장이나 교육감이학 교내 또는 학교 외부 활동에서 발생한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퇴학을 권고할 것이며 예외는 퇴학하지

않거나 행동교정 대안책으로 행위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a) 정당방위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
- (b) 학생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칼이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 (c) 다음 중 하나를 제외한, 규제성분의 불법적인 소유:
 - i. 농축된 대마초를 제외한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첫 번째 위법행위;
 - ii. 의사가 학생을 위해 처방한 의약품 또는 의학적 목적으로 학생이 사용하기 위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의 소유;
- (d) 절도 또는 강탈;
- (e) 학교 직원 폭행 또는 구타.

교장이나 교육감은 학생이 다음 중 한가지를 학교내 또는 학교 외부 활동에서 저지른 행동이라고 판단하면 즉시 퇴학을 권고해야 합니다:

- (a) 총기의 소지, 판매 또는 제공;
- (b) 타인에게 칼을 휘두르는 행위;
- (c) 규제성분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 (d) 성폭행 또는 성적 구타를 저지르거나 시도함;
- (e) 폭발물 소지.

학교장 또는 교육감은 나머지 사항을 근거로 퇴학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교육법 제48900조에서 언급된 것).

장애학생을 위한 행동중재

행동문제로 공부를 방해하는 장애학생들은 개별교육안(IEP)으로 개발한 행동개입계획(BIP)이 있고 개별교육안의 기간동안 시행합니다.

장애아의 학습과 행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행동개입과 지원을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장애아를 교육합니다. 행동문제가 있는 장애학생은 연방장애인교육법(IDEA) (20 U.S.C. Sec. 1400.)에 따라 적시에 긍정적인 지원, 개입, 알맞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동개입, 지원, 그외 방법을 사용할 때, 학생의 신체적 자유와 사회적 접촉을 염두에 두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며, 학생이 거의 제약받지 않는 교육 환경에 배정될 권리가 있습니다. 개별교육안 팀은 평가에 기초하여 학생의 필요사항을 결정하고 의미 있는 목표와 적절한 교육, 행동 지원 및 서비스를 만들어 낼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정학과 퇴학

장애학생의 경우 법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와 심의가 있습니다.

정학:

특수교육: 특수교육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정학받았을 때, 학교 직원은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좀더 집중된 행동지도안과 개입을 체계적으로 하는 행동개입계획안을 만들거나, 또는 기존의 행동개입계획안을 검토하고 수정하기 위한 개별교육안(IEP) 미팅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정학받는 부정행위가 지속되면 개별교육안 팀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교육과/또는 행동개입지원이 필요한지 정하고 현재 배정과 서비스가 알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학생은 한 학년에 10일 이상 정학 될 수 없습니다. 학생이 두(2) 번 정학받거나 정학일수가 오(5)일, 팔(8)일, 10일인 경우, 개별교육안 회의를 소집하여 알맞는 서비스/배정을 결정합니다.

504항: 504항 계획안이 있는 학생은 일반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간주되어 일반교육학생이 정학받는 일수로 동일하게 정학받지만, 정학하고 10일부터 현재 504항 계획안을 검토하고, 알맞는 편의시설로 바꾸거나 마련하면서 수정하는 504항 징후판정심사가 있습니다.

퇴학:

특수교육: 특수교육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퇴학을 당하기 전에 개별교육팀은 퇴학 전에 개별교육안 회의를 하고 징후판정심사를 해야합니다. 장애학생이 퇴학당하면, 퇴학기간동안 개별교육안으로 정해진 서비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퇴학기간 동안 퇴학 이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학 이후 복귀와 복학 조항을 아래에서 참조하십시오) 퇴학당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개별교육안으로 결정한 바에 의해 가장 알맞는 환경에 배정됩니다.

504항: 504항에 따라 퇴학받은 학생은 징계적 배정 변동으로 간주되며, 504항 학교팀이 504 항 징후 판정 심사를 하고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학생의 장애에 의한 직접적인 징후이고/또는 학생의 504항 계획안을 교육구가 따르지 않은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퇴학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부모 특별교육서비스 안내서(절차상 권리 및 안전조치 포함)를 참조하십시오.

징계처분의 항소

정학과 전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면 지역교육구에 직접 제기해도 됩니다. 퇴학을 받은 학생은 위원회가 퇴학하는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퇴학 심리를 받고 교육위원회에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청에 퇴학 항소를 제기합니다.

퇴학 이후 복귀와 복학

교육법 제48916항과 48916.1항(하원법안 922호)에 따라 LA 통합교육구는 법안(AB) 922호에 의한 의무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퇴학학생의 복귀를

위해 부분적인 학생 징계와 퇴학 지원(SDES)을 제정했습니다. 주정부 의무 프로그램은 모든 퇴학생들의 교육과 지원 서비스 조항을 위해 제정했습니다. 핵심 프로그램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퇴학생은 적합하고 적시에 학교를 배정받습니다;
- AB 922 학생/학부모 입학평가를 철저히 하고 개별적으로 복귀 계획을 마련합니다;
- 학생의 사회, 행동, 학업 진척 상황을 감독합니다;
- 직접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육구 직원과 커뮤니티 기관의 직원과 서비스를 상담, 협력, 조정합니다;
- 학업성취도, 출석, 사회적인 분야에서 자격기준에 부합한 학생들을 위해 복학심사위원회를 이용합니다;
- 권한 위임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대신하여 복학을 권고하고, 복학 후 학생을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합니다;
- 복학을 권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이틀 IX 와 학생

연방법, 타이틀 IX, 주정부법, 교육구 방침에 의해 어떤 학생도 실질적이거나 인지하는 성, 성적 지향성, 성별(성 정체성, 성별 표현, 혼인 여부, 양육, 임신, 출산, 모유수유, 상상임신, 임신중절, 관련 질병 등) 또는 실질적이거나 인지하는 이런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그룹과 연관이 있는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학교에서 동등한 학습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교육구의 교육적 활동과 프로그램에서 동등한 학습기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운동경기;
- 체육교육;
- 수강할 수 있는 수업 및 받는 교육;
-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에서 대우받는 방식;
- 받는 상담의 종류;
- 참여해도 되는 과외 활동, 프로그램 및 클럽;
- 참여해도 되는 아너스, 특별 상장, 장학금, 졸업 행사;
- 자금모금 활동.

임신 및 육아중인 학생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교육구 학교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차별이나 괴롭힘이 없는 환경에서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구는 학생의 모유수유/수유상황에 맞게 편의시설, 학업적 필요사항, 임신/육아와 관련한 출석 등 임신/육아중인 학생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학생이 참여활동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또는 학생의 성/성별에 근거해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임신/육아중인 학생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성/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지 않을 권리, 신체적, 정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경우 교육 및 과외활동에 참여할 권리, 임신한 미성년자 프로그램이나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임신과 관련된 질환을 다른 일시적 장애와 동일한 방법과 방침으로 치료받을 권리, 학생의 주치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발적으로 팔(8)주 이상의 육아휴학을 받을 권리, 육아휴학 중 학업이나 학교 의무를 끝마치지 않을 권리, 학교로 돌아가 육아휴학 전에 등록한 수업에 돌아가거나 대체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선택할 권리, 빠진 과제를 다시 하는 것, 졸업요건에 필요하면 고등학교 5학년을 다니는 것, 이 편의를 이용하면서 학업적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권리를 알아보십시오. 임신한 학생과 부모인 학생](#) 유인물과 연방법과 교육법 <https://achieve.lausd.net/eeco> 에서 찾아보십시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 행정관, 타이틀 IX/괴롭힘 불만신고 관리자, 심리치료사, 상담자 또는 학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말하거나 불만신고를 하고 상황을 해결합니다.(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참조). 학생들은 언제든지 학교에서 직접 불만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타이틀 IX 를 위반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믿는 학생은 불만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213) 241-7682, EquityCompliance@lausd.net 으로 연락하거나 333 S. Beaudry Avenue, 18th Floor, Los Angeles, CA 90017에 편지를 보내서 학교의 행정관, 타이틀 IX/괴롭힘 불만신고 관리자, 교육구의 교육형평성 준법부서의 타이틀 IX 담당자에게 알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성격의 불만신고는 민권사무소에 제기해도 됩니다. 타이틀 IX와 학생 권리, 보호, 불만신고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achieve.lausd.net/eeco> 에서 타이틀 IX 탭에서 보십시오.

교통 편- 통학버스

교통편은 승인된 프로그램에 있는 유자격 학생에게만 제공됩니다. 자녀의 교통 일정에 대한 공식 통지서(교통편 우편물과 /또는 학부모 포털)는 개학하기 전에 발송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스쿨버스 시간표, 버스 규칙, 연락처, 기타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개학하고 난 이후에 등록한 학생들의 경우 우편물은 매월 셋째 주에 배달됩니다.

아동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중요한 항목:

- 학부모/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버스 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 및 자녀는 개학 첫날 전에 버스 정류장에 가서 자녀가 정류장에 가고 오는 가장 안전한 길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학생은 예정된 픽업 시간 오(5)분 전에 버스에 탑승할 준비를 해야 하며, 버스가 도착할 때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정해진 장소에 학생이 서 있어야 합니다;
-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보호자, 허가인이 매일 학생이 버스에 타고 내릴 때 버스 정류장에 있어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와 학생은 노선 번호, 학교 이름, 정류장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버스가 15분 이상 늦는 경우, (800) LA-BUSES / (800) 522-8737번으로 교통 학교버스 배차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 승차와 하차 시간은 노선 조정이나 학교 시작시간/끝나는 시간이 바뀌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통상황과/또는 날씨로 이동시간이

영향받습니다;

- 주스나 전화번호 등 학생의 개인정보가 바뀌는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가 스쿨버스 교통부에 질문이나 우려가 있으면, (800) LA-BUSES / (800) 522-8737 또는 <https://achieve.lausd.net/transportation> 으로 연락하십시오;
- 개별적 교육프로그램(예: IEP)에 관련된 서비스로 교통편이 포함된 학생은 학부모, 성인, 허가인이 받아야 합니다;
- 프리스쿨에서 2 학년(예: 유아원부터 2 학년까지) 어린이는 정해진 버스 정류장에서 학부모, 성인, 허가인이 받아야 합니다;
- 버스에서 내리는 학생을 받는 사람은 학생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 신분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학버스에서 품행

5조, 캘리포니아 법령 제14103항에서 스쿨버스나 학생활동버스로 통학하는 학생은 버스 운전자의 권한을 따르고 직접적 책임을 지며, 버스 운전자는 버스에 탑승하거나 길, 고속도로, 도로를 건너는 학생들이 질서있게 행동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통학버스를 타는 학생들은 통학버스에서 학교와 같은 품행과 행동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범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통학버스 운행을 방해하거나, 통학버스 운전자를 경시하거나, 통학버스 승차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학생은 정학받거나 버스 통학프로그램에서 퇴출 등 징계를 받게 됩니다. 스쿨버스에서 학생의 행동에 대해 학부모/보호자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800) 522-8737으로 문의하거나 <https://achieve.lausd.net/transportation> 으로 연락하십시오.

균일한 불만제기 절차 (UCP)

LA 통합교육구는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해당 주법, 연방법, 규정을 준수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구는 보호 그룹에 대한 차별, 희롱, 협박과/또는 괴롭히는 혐의나 아래 언급된 UCP를 따르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조사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캘리포니아 법령 5조 4600-4695항과 교육구 방침과 절차에 의해 UCP 참여에 대한 보복 혐의와/또는 교육구의 불만신고에 대한 판결에 항소하여 보복한 혐의 등 불만신고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령 5조 4600-4695항에 규정한 바에 의해 UCP 불만신고를 제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UCP 불만신고를 합니다:

- 성인 교육 (§§8500-8538, 52334.7, 52500-52617)
- 에프터스쿨과 안전 (§§8482-8484.65)
- 농업취업교육 (§§52460-52462)
- 보상적 교육 (§§54400)
- 통합 범주 보조 프로그램 [34 CFR §§299.10-12, §64000(a)]
- 이주민 교육 (§§54440-54445)
- 직업 테크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52300-52462)
- 보육과 개발 프로그램 (§§ 8200-8498)
- 모든 학생은 성공합니다 법안 (20 미국법 §6301; 교육법 §52059)
- 정부법 §§200조, 220조, §11135조에 따라 식별된 보호집단에 대한 차별, 희롱, 협박 또는 괴롭힘/따돌림: 형법 제§422.55조에 명시된 실제적 또는 인식된 특성, 이들 실제 또는 인식된 특성의 한 두개를 가진 개인이나 그룹과의 관련에 근거하여, 제§210.3절에 정의한 교육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주 재정 지원 (직원 대 학생, 학생 대 학생, 제3자 대 학생, 직원 대 제3자와 관련)
- 임신한 학생과 부모인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수유하는 학생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시설 (§§46015, 222)
- 위탁 청소년, 노숙 청소년, 기타 청소년(예: 전직 소년법원 학교 학생, 군인가족 자녀, 신입생 및 이주교육생) 교육권과 졸업권 (§§48645.7, 48853, 48853.5, 49069.5, 51225.1, 51225.2)
- 수업료 (§§49010-49013)
- 교육적 내용이 없는 수업시간 (§§51228.1-51228.3)
- 체육 수업 회의록 (§51223)
- 지역 통제와 책임 계획 (LCAP) (§52075)
- 지역적 직업센터와 프로그램 (§§52300-52334.7)
-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 (§64001)
- 학교 의회 (§65000)
- 학교 안전 계획 (§§32280-32289)
- 주립 프리스쿨 (§§8235-8239.1)
- 캘리포니아 주립 프리스쿨 프로그램 면허증 면제에 대한 프리스쿨 건강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된 결함 (5 CCR §1596.7925, EC §8235.5); 해당 교실에 게시된 공공 통지서
- 주정부 공립교육감 또는 대리인이 알맞다고 여기는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교육프로그램

1. 학생 수업료의 무허가 부과: 학생은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용품, 재료, 장비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는 법으로 그러한 수업료를 특별히 부과해 되고 교육법 4901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학생 수업료에 관한 법률 불이행의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또는 증거로 이어지는 정보를 불만사항이 제공할 경우 익명으로 수업료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신고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에 의한 학생 수업료 불만사항은 학교장 또는 단체의 관리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먼저 제기되어야 합니다. 학생 수업료 불만신고에서 이점이 발견될 경우, 모든 피해 학생, 학부모/보호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해야 하며, 주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공립학교가 합리적으로 모든 피해 학생, 학부모/보호자에게 완전히 보상하는 노력을 합니다. 교육구는 불만신고를 하고 일(1)년까지 수업료를 납부한 학생, 학부모, 보호자 전원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전액 변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LCAP와 관련된 법적요건의 불이행: 교육구가 LCAP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불만신고는 UCP 불만신고 절차(교육법

52075항)에 따라 제기합니다. 불만신고를 뒷받침할 증거/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익명으로 불만사항을 제기합니다. LCAP 요건은 교육법 52060- 52076항을 참고하십시오.

3. 체육을 위해 채택한 체육원리에 불응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서 채택한 체육원리에서 전체기간 동안 체육 등 구체적인 수업내용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교육법 §§48853항, 48853.5항, 49069.5항, 51225.1항, 51225.2항에 따라 수양부모가 있는 학생, 노숙자인 학생, 과거 청소년 법원 학생, 군인 가정의 자녀인 학생, 이주민 학생, 신입생 프로그램 학생의 교육권리는 즉시 등록, 출신 학교에 남기, 학생의 지역에 있는 종합적 학교에 등록하기, 부분적 학점 취득, 주정부의 최소 졸업요건으로 졸업하기, 학업 자료, 서비스, 과외 활동의 이용이 있으며, 교육구의 UCP에 따라 법조항의 요건에 불응한 경우 불만신고를 허용합니다.
5. 중등교육 후 교육을 받고 졸업장을 받기 위한 필수과목이나 선수과목의 요건을 채우기 충분한 교육적 내용이 없는 교과목이나 이전에 이수하거나 성적이 나온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2016-17학년도부터 9-12학년 재학생을 교육 내용이 없는 수업에 배정하지 못합니다. 학생은 학기 중에 일(1)주일 이상 교육적 내용이 없는 수업을 들으면 안되고 학생이 이전에 이수하고 교육구에서 중등교육 이후 캘리포니아 주립학교의 입학에 대한 필수과목이나 선수과목의 요건을 채우기 충분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한 최소 요건을 충분히 채운 학점을 받은 수업에 등록할 수 없으며, 특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학생 수업료과 LCAP 불만신고 등 불응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나 증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익명으로 불만신고해도 됩니다. 교육구는 불만신고하기 1년 전에 수업료를 납부한 학생, 학부모/보호자를 알아내서 전액 환불하는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합니다. 만일 불만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교육적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수업시간에 학생 피해자에게 구제책이 있게 되고, 모유를 수유하는 학생에게 적당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수양부모가 있는 학생의 교육, 노숙자인 학생, 과거 청소년 법원 학생이 우리 교육구에 이제 등록한 경우와/혹은 군인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마련합니다. 수업료, 체육, 수업시간, 그리고/또는 LACPs에 관련된 학부모/보호자와 학생 피해자에게 구제책을 마련해줍니다.

준법감시인: 교육 형평성 준법 감시인은 UCP에 따라서 불만신고를 받고 조사를 지휘하고, 불만신고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기록하며, 교육구가 법을 준수하게 하는 교육구의 준법 감시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교육구의 UCP 절차나 불만신고에 도움을 받는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 형평성 준법 관리부서로 (213) 241-7682 또는 EquityCompliance@lausd.net 로 문의하십시오.

통보: 매년 교육구는 학생, 학부모/보호자, 직원, 교육구 자문위원회, 적절한 사립학교 행정관이나 관계자,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 관계자에게 UCP 절차와 불만신고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알려줘야 합니다.

UCP 불만신고 제기하기: 연방법이나 주법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규정에 불응한 혐의의 불만신고서는 불만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해진 사무소인 교육구의 교육형평성 준수 사무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위에 나온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위반 혐의가 발생한 날부터 일(1)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인이 불응한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증거에 이르는 정보를 주면, 익명으로 불만신고를 해도 됩니다. 신고인이 보복에서 보호받습니다. 이 방침에 신고인의 불만사항의 주체가 포함되지 않을 때,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교육 형평성 준법 관리부서에서 불만신고를 접수받으면 교육구가 조사하고 대처하는 60일 기간은 시작됩니다.

UCP 양식을 요청하면 학교나 교육구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 형평성 준법 관리부서에 (213) 241-7682 또는 EquityCompliance@lausd.net 으로 문의하거나, 균일한 불만사항 처리 절차를 위한 교육구 웹사이트에 <http://achieve.lausd.net/eeco> 에서 찾아보십시오. 교육구의 UCP 방침과 불만신고 절차의 사본은 무료입니다. 불만신고를 요청하고 불만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포함하고 국한되지 않는 사람은 교육구 직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교육구는 최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는 보복에서 보호받습니다. 교육구는 불만신고하거나 불만신고를 조사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법 262.3항에 따라, 불만신고자는 금지명령, 접근금지명령, 기타 구제책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 민사법 구제책을 받으며, 또는 차별, 회롱, 협박, 괴롭힘에 대한 주법이나 연방법에 의한 법적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구 판결문 항소:

불만 신고인이 교육구의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신고인은 접수 후 15일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문서로 하며, 불만신고서 원본의 복사본, 교육구의 판결문, 항소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야 합니다.

교육구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이 주소로 보내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UCP에 대한 캘리포니아 교육부에서 다루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와 항소 사무소에 대한 추가 연락처는 <https://www.cde.ca.gov/re/cp/uc/>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 8235.5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립 프리스쿨 프로그램 건강과 안전 문제와 관련된 결함은 UCP를 통하여 해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동 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가된 시설에 대한 보건 안전 불만신고는 사회복지국에 합니다.

교육자료, 비상사태,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한 급한 시설 상황, 교사 결원이나 잘못 배정된 교사에 대한 불만신고를 하는 내용은 **윌리엄스 일관된 불만제기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학교 방문자

학교 방문자는 교장/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요청한 때 방문 허가서를 주거나 요청하고 합리적인 기간에 받아야 합니다. 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학생은 학교 내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방문자는 교실이나 학교 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하거나 난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구 방침에 따라서 학교, 교육구, 학교 후원 행사에 참석하는 직원, 학생, 방문자는 교육구 소유건물 또는 교육구의 임대건물 등 교육구 건물과 교육구 차량 내에서 담배, 전자담배, 베이핑(vaping) 기기,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 시가, 파이프, 후카(hookahs), 전자 후카(e-hookahs), 후카 펜(hookah pens), 마약 도구 등을 포함하나 제한되지 않는 모든 담배 제품의 흡연과 사용을 금지합니다. 교육구 소유 건물이나 교육구 행사 중에 학생이 베이핑(vaping) 도구를 소지한 것이 발견될 경우, 베이핑 도구는 압수되며 폐기됩니다. 방문자는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교실의 방문을 요청하면 학교 방침을 준수할 것;
- 학교에 도착하고 방문자 허가서를 작성할 것;
- 학부모가 수업을 참관하는 경우 최대한 조용히 교실에 들어오고 나갈 것;
- 수업 참관시 학생, 교사와/또는 보조교사와 대화를 삼갈 것;
- 학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수업 참관 시간과 빈도를 적당히 할 것;
- 필요한 경우 수업 참관 후, 교사와/또는 교장과의 면담을 위해 학교의 정해진 절차를 따를 것;
- 전교 행동수칙을 배우고 따를 것;
- 학교를 떠나기 전에 방문자 허가증을 처음에 받은 장소에 반납할 것.

학교에서 방해하거나 교칙과/또는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학교에서 쫓겨날 수 있고, 앞으로 학교에 오는 것을 제약받을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스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WILLIAMS UNIFORM COMPLAINT PROCESS)

윌리엄스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교육법 35186항은 학부모/보호자, 학생, 교사, 관계자들에게 다음 부분에 대해 불만신고하는 권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규정합니다:

- 모든 학교에서 영어 학습자 등 학생들이 교실에서 사용하고 집에 가져가고/또는 수업이 끝나고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와/또는 교육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 학교 시설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수리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학생 화장실 수가 충분하고 청결해야 하고, 물건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수업시간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 적합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교실에 배정되어야 하며, 대체 교사나 다른 임시 교사가 계속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영어 학습자가 있는 경우, 영어 학습자를 가르치는 훈련을 받고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적합한 교사 자격증과 학과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윌리엄스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로 불만신고를 하거나 익명으로 합니다.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만신고서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불만신고를 하려면 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양식을 받으십시오:

- 학교 사무실;
- 교육 형평성 준법 관리부서로 (213) 241-7682 또는 EquityCompliance@lausd.net 으로 연락하거나 교육구 웹사이트 <http://achieve.lausd.net/eeco> 에 연락하십시오.

적시에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작성된 불만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불만사항에 대한 대응 요청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 학교 (사무실, 교장선생님);
- 해당 지역 교육구;
- 교육 형평성 준법 관리부서에 팩스번호 (213) 241-3312 이메일 EquityCompliance@lausd.net 로 연락하거나 미국우편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십시오.

LA Unified- 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
Williams Complaints
333 South Beaudry Ave., 18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판결에 불복하는 신고자는 정기적인 이사회 회의에서 교육구의 이사회에 불만신고를 설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상사태거나 긴급한 위험이 있는 시설의 상황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항소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윌리엄스 UCP 절차에 대한 질문은 교육 형평성 준법 관리부서로 (213) 241-7682 로 연락하거나 <http://achieve.lausd.net/eeco> 에서 윌리엄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십시오.